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

인도네시아

김 범 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교법제 연구 12-20-⑭-5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
- 인도네시아 -**

김 범 준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

- 인도네시아 -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V)

- Indonesia -

연구자 : 김범준(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Beom-Jun

2012.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는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경제구도가 신흥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최근 주요 경제전문기관은 BRICs 이후 주목받게 될 신흥시장국가에 대해 예측하면서 MIKT, MAVINS, CIVETS, VISTA, PICKT 등 다양한 신조어를 양산하고 있음
 - 이상의 용어에 모두 포함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로서 주요 경제전문기관이 모두 ‘Post-BRICs’ 시대의 선두 주자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의 주요 소비 및 투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풍부한 인구 및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 및 G20 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증가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교역 규모도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이어 세계 2위의 석탄 수출국이며, 주석·구리·니켈·금·보크사이트 등의 천연(광물)자원에 관해서도 세계 최정상급의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이며, 세계 2대 LNG 수출국으로서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교역의 내용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출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정적인 원자재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가스·광물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해외 원자재 가격의 충격완화 및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협력에 관한 법제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우리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및 자원 관련 투자·협력 시 주요 대상이 되는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법제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 즉, 인도네시아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나, 원자재 개발 협력의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농림업(Plantation) 자원 및 목재·산림자원 등의 개발 법제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음

II.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개황 및 원자재 개발을 위한 협력 동향 분석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국가 및 정치·경제 개황과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의 내용을 조사·분석
 -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자원별 현황과 석유·가스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 및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
 - 우리 정부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개발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에 대하여 광물자원과 석유·가스자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분석
 - 新광업법상의 규제체계 및 舊광업법과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
 - 광업법상 작업계약(Contracts or Work; CoW)의 구조와 전환조항의 역할 분석
 - 투자법, 산림법, 에너지법, 환경 관련 법령 및 기타 광산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분석
 -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분석
 - 석유·가스법과 에너지법, 투자법, 회사법, 환경법 및 산림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

- 작업지역(Work Areas), 공동협력계약(JCC), 생산공유계약(PSC) 상 석유·가스지분 등에 관한 상류부문(Upstream Sector)활동에 대한 규제체계 분석
- 사업허가, 처리, 운송, 저장, 거래 전략비축유 등 하류부문(Downstream Sector)활동에 대한 규제체계 분석

□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와 조세제도를 분석하였음

- 인도네시아 투자법의 발전과정과 2007년 新투자법 및 2012년 新신투자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
- 인도네시아 세법의 개관과 조세총칙법,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분석

Ⅲ. 시사점

□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원자재 수급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 인도네시아의 광물 및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현황과 개발 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의 투자 진출 시 고려사항과 제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對인도네시아 투자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인도네시아, 원자재, 광물자원, 석유·가스, 광업법, 작업계약, 광업허가, 석유·가스법, 공동협력계약, 생산공유계약, 투자법, 투자보호보증, 투자제한업종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Due to the recent global recession around developed countries, the necessity of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emerging countries is reinforced.
-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global economic structure has been reorganized around emerging countries and recent major professional economic institutes predict which emerging country will get the spotlight following BRICs while producing new coinages such as MIKT, MAVINS, CIVETS, VISTA, PICKT.
- The only country including all the above terms is Indonesia. All of the major professional economic institutes indicate Indonesia as a leader in the Post-BRICs era.
-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donesia has recovered its economy fast and emerged as the world's major consumer and investment markets.
- Especially, potential growth based on plentiful population and abundant resources, extensive regulatory improvement for the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and high statur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fter joining G20 attract world's attention.

- Our government has reinforced the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Indonesia more intensively and the trade scale between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reach \$100 billion in 2020 if the current situation keeps going.
- Following Australia, Indonesi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exporter of coal and world's top-level producers of tin, copper, nickel, gold, bauxite and other natural (mineral) resources. Moreover as Southeast Asia's largest oil-producing country and world's second LNG exporter, it has potential economic growth with abundant natural resources.
- In terms of the trade contents, Indonesia's exports to Korea have focused on the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gas, coal, etc. Thus in order to secure raw materials and resources stably in the future, close cooperation with Indonesia is need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evelopments of oil, gas and minerals.
- This study pursue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cushioning price rise of overseas raw materials and supporting stable growth in domestic industries through the survey and analysis on laws related to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f Indonesia's raw materials.
- Primary subject of the analysis is the development laws related to oils, gas and mineral resources which is main targets for investments and negotiation of our government and corporations on Indonesia's raw materials and resources and our government manages in national level.

- That is, development laws related to plantation resources, timber and forest resources, etc which are relatively less important in terms of raw materi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 excluded in this study even though they are abundant in Indonesia naturally.

II. Main Contents

- Analysis on development status in Indonesia and cooperation trend for raw material development
 - Survey & Analysis on countr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status and economic development master plans (2011-2025) of Indonesia
 - Survey & Analysis on major mineral resources status and oil/gas status in Indonesia
 - Analysis on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Indonesia
 - Analysis on policy of our government related to Indonesia's raw mate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 Analysis on Indonesia's raw material development law and policy is processed in two parts, mineral resources and oil & gas resources
 - Analysis on law and policy of Indonesia's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 Analysis on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new mining law and differences from the previous mining law

- Analysis on the role of the structure and transition provisions of COW (Contracts of Work) under the mining law
- Analysis o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ment law, forest law, energy law, environment law and other law relating to the mining operation
- Analysis on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Indonesia's oil and gas development
 - Analysis on laws related to oil/gas law, energy law, investment law, corporate law, environmental law, forest law, etc.
 - Analysis on regulatory systems to Upstream Sector activities related to oil/gas shares and others under Work Areas, JCC and PSC.
 - Analysis on Downstream Sector activities such as business permits, process, transportation, storage, trading, strategy petroleum reserves, etc.
- Analysis on investment law and tax law related to Indonesia's raw material development
 - Analysis Indonesia's investment law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points of 2007 new investment law and 2012 new investment plan drafts
 - Overview of the Indonesian tax law and analysis on main contents related to general tax law, corporate tax, personal income tax, VAT, etc.

III. Expected Effect

- To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establishing raw material supply policy in order to respond properly to volatility of international raw material prices and support stable growth of domestic industries

- To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future investments to Indonesia in relative industries by thorough survey & analysis on status and development laws related to Indonesia's mineral and oil/gas resources and by deriving considerations and proposals in investments into Indonesia by our government and corporations

► Key Words : Indonesia, Raw Materials, Mineral Resources, Oil and Gas, The Mineral and Coal Mining Law, Contracts of Work, IUP, The Oil and Gas Law, Joint Cooperation Contract, Production Sharing Contract, The Investment Law, Investment Protection Guarantee, Negative Lis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	22
제 2 장 인도네시아 개황 및 원자재개발 협력 동향	25
제 1 절 국가 및 정치·경제 개황	25
I. 국가 개황	25
II. 정치·경제 현황	26
III.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현황	33
제 2 절 원자재 현황	35
I.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현황	35
II.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자원 현황	42
제 3 절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 및 투자 환경	48
I. 교역현황	48
II. 투자 현황	51
제 4 절 우리 정부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개발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	54

제 5 절 평가(검토)	58
제 3 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61
제 1 절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61
I. 규제체계 개관	61
II. 광산 및 탄광 규제체계	63
III. 작업계약(Contracts of Work)	81
IV. 광업투자 시 고려사항	91
제 2 절 석유·가스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95
I. 규제체계 개관	95
II. 상류부문(Upstream Sector)	104
III. 하류부문(Downstream Sector): 하류규정	130
제 3 절 검토 및 시사점	139
제 4 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 및 정책 분석	141
제 1 절 개관: 투자법의 발전과정	141
I. 독립 이전(1511~1945)	141
II. 舊질서 시대(1945~1966)	141
III. 新질서 시대(1966~1998)	142
IV. 개혁시대(1998~현재)	143
제 2 절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법제 및 정책	146
I. 투자법 제25/2007호(“新투자법”)	146
II. 2012년 新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	164

제 3 절 조세 관련 법제	166
I. 세법의 구성	166
II. 조세총칙법	169
III. 법인세	174
IV. 개인소득세	178
V. 소득세 원천징수	181
VI. 부가가치세	183
제 4 절 검토 및 시사점	185
제 5 장 결 론	187
제 1 절 법제상의 시사점	187
제 2 절 인도네시아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189
참 고 문 헌	19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세계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2/4분기에 둔화되기 시작하여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가 악화된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더욱 약화되었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컸는데 선진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뚜렷이 둔화된 반면 중국 등 신흥경제국은 수출신장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고용사정 면에서도 신흥경제국은 개선추세를 지속한 반면 미국의 실업률이 9% 내외에 머물고 유로지역은 10%를 상회하는 등 선진국은 부진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 및 국제원자재가격변동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국제원자재가격은 2011년 1월 배럴당 90달러대(Brent유 기준)에서 출발하여 4월초 126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5월 5일 하루에만 8%가 폭락한 이후, 11월까지 100~11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4월까지 유가가 급등한 것은 1월말 이집트를 시작으로 리비아, 바레인 등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월 이후에는 선진국 경기둔화 우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 미 달러화 강세, 투자자금의 원유시장 유입 감소 등이 유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이들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제한적이어서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유지되었는데, 이는 꾸준한 신흥경제국의 원유수요, 생산 장비 노후화로 인한 일부 비OPEC 국가의 원유생산 차질 발생, 석유재고의 빠른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기타 국제원자재가격(IMF 비연료원자재지수¹⁾)은 2011년 4월까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부터는 내림세로 돌아서 1월~11월 중 10.6% 하락하였다. 이는 5월 이후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투자자금 유입이 줄어든 가운데 비철금속은 중국 등 주요국의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곡물은 기상여건 개선에 따른 공급증가 등으로 수급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8월 이후에는 선진국의 수요둔화 우려도 가세하여 하락속도가 빨라졌다.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그 영향이 선진국에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경제국으로 파급되면서 2011년 보다 회복세가 약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 모두 교역신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중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선진국 원유수요가 둔화되더라도 원유생산 부진, 석유재고 감소,²⁾ 이란 핵문제³⁾ 등 공급측면에서 유가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유시장으로의 투자자금 유입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가 예상 외로 더욱 악화되거나 신흥경제국의 원유수요 둔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2012년 국제유가를 100달러대로, 투자은행들은 110달러대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1) IMF가 42개 국제원자재 품목을 세계 수출금액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식품이 51%,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49%를 차지하고 있다.

2) 2011년 8월 이후 2006년~2010년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OECD 석유재고가 2012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EIA).

3) 2011년 10월 들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투자자금의 원유선물 시장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2012년 국제유가 전망(Brent유 기준)>

(기간평균, 달러/배럴)

	전망시점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CERA	2011.12.	79.5	111.2	105.0	117.4	113.5	109.0	107.8
CGES	2011.11.	79.9	113.2	106.0	118.1	114.4	114.4	104.6
IB 평균 ⁴⁾	2011.12.	80.5	112.2	105.8	117.0	112.2	114.7	115.0

자료: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세계에너지연구소(CGES; Center for Global Studies), 美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등

기타 국제원자재 가격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원유시장과 달리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비철금속은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수요둔화가 가격하락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생산 및 건설 활동 둔화 등으로 구리, 알루미늄 등 기초금속에 대한 수요증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가격은 높은 가격수준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기상여건 개선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2010년 가뭄·산불 등으로 곡물수출을 제한했던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생산량 확대가 2012년 세계 곡물생산량 증가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JP Morgan, Duetsche Bank, Barclays Capital

5) 美 USDA는 2011년 11월 보고서에서 2012년 중 전세계 곡물생산 전망을 8월 보고서 대비 1천5백만톤 상향 조정하였다.

<기타 국제원자재 가격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2012
		1월~6월	연간	
IMF	26.34	30.7	21.2	-4.7
OEF	26.37	30.6	19.7	-5.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9.), OEF, Commodity Price Monitor (2011.11.)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유가가 배럴 당 10달러 상승하면 GDP 1% 규모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자원수입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제조업 생산비 또한 1.7% 증가하는 경향으로 볼 때⁶⁾ 에너지 및 자원 정세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세계 정치·경제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성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국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석유·가스·광물(특히, 6대 전략광물⁷⁾) 및 희유금속⁸⁾의 자주개발률 제고를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⁹⁾ 즉, 자원공급 혼란에 대비할 수

6) 지식경제부,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보도자료, 1면(2012.2.16.).

7)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8) 리튬, 희토류 등

9) 특히, 정상외교로 중동지역 이라크와 UAE에 최초로 진출하였고,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통한 국내외 자원개발 역량의 확충과 아프리카, 비전통 유·가스전(기존 생산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추출되는 자원으로서 오일샌드, 초중질유, 셰일오일, 셰일가스, CBM(탄층가스; Coal Bed Methane) 등을 지칭), 북극권 등 프런티어 지역에서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탐사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지원액을 2007년 139억 원에서 2012년 304억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자원개발을 위한 펀드도 2007년 이후 7배 이상 확대 조성하였다.

있는 최소 자주개발률 수준(석유·가스 35%)에 안착하기 위한 외적역량 강화방안으로 자원개발 공기업 규모 확대·역량강화, 대형사업 성과 가시화를 통한 물량확보 및 미개척지역의 선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자본·인력·기술 확충, 공시제도 개선 등 내적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향상되었으며, 전략광물은 2007년 18.5%에서 2011년 29%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하였고, 2012년에는 이에 대하여 각각 20% 및 32%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향후 2020년까지 35% 및 43%, 2030년까지는 45% 및 50%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¹⁰⁾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는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경제구도가 신흥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최근 여러 경제전문기관은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이후 주목받게 될 신흥시장국가에 대해 예측하면서 다양한 신조어를 양산하고 있다. 예컨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를 지목하면서 MIKT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그 밖에 다른 기관도 MAVINS(멕시코·오스트레일리아·베트남·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공),¹¹⁾ CIVETS(콜롬비아·인도네시아·베트남·이집트·터키·남아공),¹²⁾ VISTA(베트남·인도네시아·남아공·터키·아르헨티나),

10) 지식경제부, 전개 보도자료(각주6), 15면, 26면.

11) MAVINS에 한국·터키·필리핀·파키스탄·방글라데시를 더하여 “Next Eleven”이라 부르기도 한다.

12) 2009년 후반,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경제전망 담당이사인 로버트 워드(Robert Ward)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커피 원두를 먹은 사향고양이(civet) 배설물에서 채취한 원두로 만든 루왁(luwak)커피가 최고급 커피이듯이 이들 국가의 주가 역시 올라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PICKT(한국·인도네시아·체코·폴란드·터기)¹³⁾ 등의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상의 용어에 모두 포함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로서 주요 경제전문기관이 모두 ‘PostBRICs’시대의 선두 주자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의 주요 소비 및 투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① 풍부한 인구 및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② 新외국인투자 환경 조성¹⁴⁾ 및 ③ G20 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증가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¹⁵⁾ 최근 우리 정부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교역 규모도 2001년 이후 매년 14% 이상 증가해 왔고,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1,0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의 내용 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출은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원자재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가스·광물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바로 이 점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와 투자 법제의 연구가 큰 시사점을 갖는 이유라 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자재 및 자원 관련 투자·협력 시

13)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이머징마켓(신흥국 담당) 책임자인 러치 샤머(Ruchir Sharma)가 BRICs 이후의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 꼽은 나라들이다.

14)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3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사업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는 ①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기간 연장(25년 → 70년), ② 대규모 고용창출·인프라 건설·기술이전 등의 업종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③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 축소 및 국유화 금지 명시, ④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투자조정위원회(BKPM)의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15) 기획재정부,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요성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11.4.11.

주요 대상이 되는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 법제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외에 인도네시아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나, 원자재 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농림업(Plantation) 자원 및 목재·산림자원 등의 개발 법제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을 구성한다.

(1) 인도네시아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인도네시아의 국가 및 정치·경제 개황: 국가개황, 정치·경제 현황,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현황
-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현황: 광물자원 및 석유·가스자원 현황
-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 및 투자 현황: 교역 현황, 투자 현황
- 우리 정부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개발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
- 평가(검토)

(2)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新광업법 등
- 석유·가스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석유·가스법 등

(3)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 및 정책 분석

- 인도네시아의 투자 법제: 新투자법 등
- 인도네시아의 조세 관련 법제: 조세총칙법,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제 2 장 인도네시아 개황 및 원자재개발 협력 동향

제 1 절 국가 및 정치·경제 개황

I. 국가 개황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은 적도를 따라 동서 5,000km에 걸쳐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크고 작은 17,5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서, 2억 4천 6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천연가스·석탄·주석·구리·니켈·고무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말레이제도(諸島)에서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서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각 방면에서 문화적·민족적인 교류와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명은 19세기 중엽, 영국의 언어학자인 J. R. Rogan이 명명한 것으로 ‘인도 도서(Indo Nesos)’라는 뜻이다. 현지인들은 중세 때 자바의 주민들이 사용했던 ‘누산타라(Nusantara)’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역시 ‘많은 섬들의 나라’라는 뜻이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으나 1975년 해외식민지를 모두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하자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다가 1999년 8월 분리 독립하였다. 행정구역은 30개주(propinsi), 2개 특별주(daerah istimewa), 1개 특별수도권(daerah khusus ibukota)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인도네시아 일반개황>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동남아시아, 말레이군도

16)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8.12. 10면 참조.

면 적	1,905천 km ² (세계15위, 한반도의 8.6배)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수 도	자카르타(Jakarta; 인구 약 910만 명, 면적 661km ²)
인 구	246백만 명(2011; 세계 4위)
주요도시	자와섬(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 수마트라섬(메단, 팔렘방, 빠당) · 깔리만탄(폰피아낙) · 술라웨시섬(마카사르) · 발리섬(덴빠사르)
민 족	자바족(41%), 순다족(15%), 아체족, 바딕족, 발리족 등 300여 민족
언 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205여개 지방어
종 교	이슬람교(86.1%), 기독교(5.7%), 카톨릭(3%), 불교(2%), 힌두교(2%)
독립일	1945. 8. 17.(네덜란드)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 집권 1기: 2004. 10. ~ 2009. 10. - 집권 2기: 2009. 10. ~ 2014. 10.
화폐단위	Indonesian Rupiah (IDR)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정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 종합

II. 정치 · 경제 현황

1. 인도네시아의 정치 현황

인도네시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성공적인 국정운영으로 2009년 4월 총선에서 현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Democrat Party; PD)이 20.9%의 득표율로 최다 의석을 확보한 데 이어 동년 7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도 유도요노 대통령이 60.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기존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환경에서 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6개 정당들의 지지로 총 75%의 국회의석을 확보하였으므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연정내 여타 정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유도요노 집권 1기 중 연정내에서 부정부패 척결 등 정부의 개혁노력에 대해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골카르당이 2기 정부에서도 주요 연정 파트너가 되어 여전히 정부의 개혁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립정부 내 정당들 간의 기득권 싸움이 센츄리은행의 구제금융과 관련한 스캔들¹⁷⁾과 국세청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¹⁸⁾ 및 민주당 재무담당자의 비리사건¹⁹⁾ 등 정치스캔들로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개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유도요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찰이 2002년 및 2005년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로 알려진 과격회교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ah; JI)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일정 수준의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는 있으나, 2009년 7월 제마 이슬라미야의 한 분파가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2건의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와 2011년 초부터 온건 이슬람주의자와 기독교인을 상대로 폭탄이 배달되고, 서자바 치르본 경찰서 내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이슬람세력 등에 대한 테러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7) 2010년 8월, 센츄리은행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7억 3천만 달러) 투입과정에서 여당의 정치자금 수수의혹

18) 2011년 1월, 국세청과 정·재계간 유착관계 폭로

19) 2011년 8월, 집권 민주당 재무위원장의 뇌물수수사건

2.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인도네시아는 2000년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안정적 경제흐름을 반영하듯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과 국제기구 등이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UNCTAD에서도 2009년 인도네시아를 다른 ASEAN 국가들보다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 ²⁰⁾	2012
경제성장률	%	6.3	6.0	4.6	6.1	6.5	6.3
1인당 GDP	달러	1,842	2,148	2,245	2,908	3,430	·
재정수지/GDP	%	-0.7	-0.1	-1.6	-0.7	-1.2	-1.0
환율(\$1/평균)	Rp	9,141	9,699	10,390	9,090	8,749	8,879
소비자물가상승률	%	6.3	9.9	4.8	5.1	6.0	·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56,924	51,641	66,119	96,211	136,224	·

자료: IMF, EIU Country Risk Service (Dec. 2011) 및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 종합

<주요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추이>

평가기관	2008	2009	2010	2011
OECD	5	5	4	4
S & P	BB-(stable)	BB-(positive)	BB(positive)	BB+(positive)

20) 2011과 2012년은 추정치.

평가기관	2008	2009	2010	2011
Moody's	Ba3(stable)	Ba2(stable)	Ba2(stable)	Ba1(stable)
Fitch	BB(stable)	BB(stable)	BB+(stable)	BB+(positive)
한국수출입은행	C2	C2	C1	C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 종합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광물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서 경제성장을 위한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1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원유 확인매장량이 42억 배럴(세계매장량의 0.3%),²¹⁾²²⁾ 세계 2대 LNG 수출국으로서 천연가스 생산량은 820억 m³(세계9위)였으며, 주석·구리·니켈·금·보크사이트 등은 생산량의 경우 각각 세계 2위, 7위, 4위, 7위, 4위를 차지하였고, 석탄도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수출할 정도로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광물 관련 제품 수출이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원유·가스를 비롯한 주요 전략광물에 대한 인도네시아와의 개발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팜오일(Palm Oil), 커피, 카사바, 카카오, 사탕수수, 천연고무 등 농림업(Plantation) 자원의 세계적인 생산국이기도 하다.

21) 그러나, 석유의 경우, 생산광구에 대한 재투자 부족으로 원유생산량이 OPEC 쿼터 이하로 감소하자 2004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2008년 9월 OPEC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

22) 석유매장량 비교(2010년 말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2,645억 배럴, 인도 90억 배럴, 말레이시아 58억 배럴, 베트남 44억 배럴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자원 개황>

석 유	세계 29위(매장량), 세계 21위(생산량) ²³⁾	보크사이트	세계 4위(생산)
천연가스	세계 11위(매장량) ²⁴⁾	금	세계 7위(생산)
석 탄	세계 2위(수출)	동	세계 4위(생산)
지 열	세계 1위(매장량; 40%)	팜오일	세계 1위(생산)
주 석	세계 2위(생산)	코코아	세계 2위(생산)
니 켈	세계 4위(생산)	고 무	세계 2위(생산)

자료: KOTRA 2012 세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인도-인도네시아 포럼(2012.1.) & KOTRA 2011 아세안 시장진출 설명회(2011.11.) 통계 종합

또한,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4천 6백만 명으로 추정되어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서 특히, 16세~64세에 이르는 노동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66.5%를 차지하고 있는 바,²⁵⁾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점에서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상승률 또한 최근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대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 인상에 따라 상승한 물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23) 인도네시아 원유생산량: 1일/약 100만 배럴.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러시아, 3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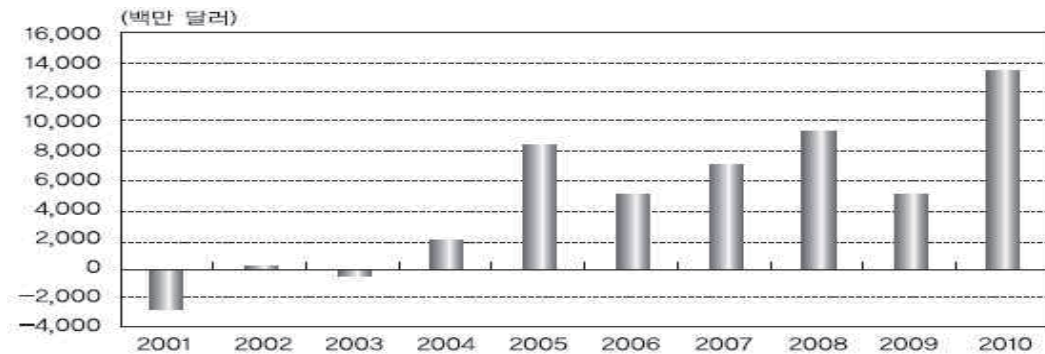
24)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165 TCF. 2010년 우리나라 천연가스 소비량은 3300 만톤으로 이를 TCF로 환산하면 1.45 TCF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매장규모는 우리나라가 1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25) CIA Factbook 2011.

최근 그 상승추세가 꺾여 2010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대로 낮아졌다.

인도네시아의 성장잠재력 및 물가안정화 추세와 더불어 인도네시아가 취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체적으로 축적된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서 정치적·사회적 불안사태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경우, 경제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통하여²⁶⁾ 외국인 투자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순유입액이 2004년 19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33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²⁷⁾

<인도네시아의 순유입 외국인 직접투자(FDI)²⁸⁾>



자료: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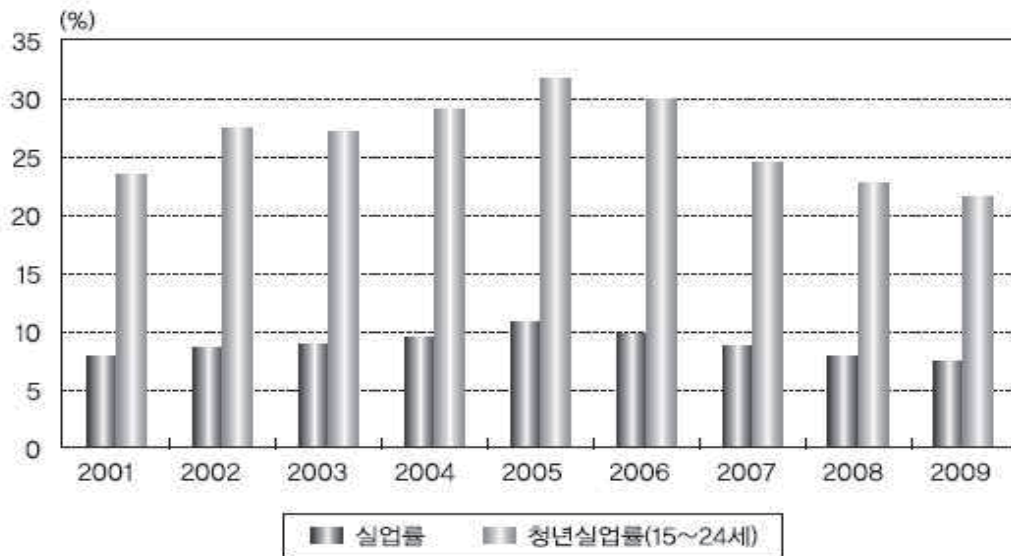
26)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투자법은 ① 내·외국인 동등 취급, ② 토지이용기간 연장, ③ 투자절차 진행기간 단축, ④ 투자인센티브 마련, ⑤ 외국인투자자 체류허가 간소화 등을 골자로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통합한 법률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와 투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7) 2010년 중 인도네시아에 유입된 외국인 단기자금의 133억 달러에 달 할 뿐만 아니라, 2010년 말 기준, 정부 채권의 3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단기채권의 30%,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주가 총액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8) 2011년 3/4분기 순유입 외국인 직접투자(FDI): 143억 달러(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www.bkpm.go.id

이렇듯,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경제현황이 양호하지만,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해결해야 할 사회·경제적 문제 역시 존재한다. 예컨대,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연정내 여타 정당들의 반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의 일관성 부재, 천연자원 이외의 수출기반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²⁹⁾ 관리들의 부정부패,³⁰⁾ 높은 청년실업률 등은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World Bank

29)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력·도로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였으며, 열악한 인프라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매년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네시아의 중심인 자바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력 생산 효율성 및 송배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또한,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도로 운송시간이 지연되는 등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30) 유도요노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추진 등으로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2010년도 정부 예산집행도 복잡한 행정업무 및 만연된 부정부패 등으로 지연되는 등 여전히 관료주의 행정과 자의적인 법해석 및 편법의 성행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Ⅲ.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현황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개발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발표하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2025년까지의 인도네시아 중장기 발전비전으로 2010년 현재 7,000억 달러 수준인 GDP를 2025년까지 4조 달러(1인당 GDP: \$14,000~\$16,000)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적 능력과 과학기술의 강화, 국가적인 연결성 강화 및 전 국토를 6개의 경제구역(회랑; corridor)으로 나누어 발전시키는 세 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비전>

	2009년	2014년	2025년	2050년
GDP(\$)	5,400억	1조	4~6조 이상	23조 5,000억
1인당 소득(\$)	2,349	4,000~4,500	14,000~16,000	55,000~65,000
경제적 위상	G20 중 16위	G20 중 14위	G20 중 12위	세계 7위

인적 능력과 과학기술의 강화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교육을 학문적·직업적·전문적 교육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적합한 교육기관의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특히, R&D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적인 연결성 강화는 약 17,5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지형적 특성과 세계적인 물류의 중심인 말라카해협과 접하고 있

는 지정학적 특징을 고려한 인도네시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시스템, 국가교통체계, 지역발전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6개 경제회랑 개발(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 IEDCs)은 마스터플랜의 핵심사항으로 4,500억 달러의 총 투자금액으로 산업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과 함께 각 회랑별 장점에 기반한 집중 육성산업을 설정하고, 각 산업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지지역과 진출영역(업종)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제회랑 계획>



① 수마트라 EC, ② 자바 EC, ③ 칼리만탄 EC, ④ 술라웨시 EC, ⑤ 발리-누사 텐가라 EC, ⑥ 파푸아-케푸라우안 말루쿠 EC 자료: Masterplan(2011)

<회랑별 집중 육성 산업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회랑(Corridor)	육성 산업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수마트라	팜오일, 고무, 석탄, 조선, 철강	- 순다대교 건설계획(자바~수마트라 간 31km) - 수마트라 횡단철도(1,580km) - 남수마트라 석탄철도

회랑(Corridor)	육성 산업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자바	음식료업, 섬유, 조선, 운송장비, 정보통신, 방위산업	- 자카르타 전철 개발 - Lamongan 항구 확장(동부자바) - Kertajati 공항 건설(반둥 남쪽)
칼리만탄	석유·가스, 석탄, 팜 오일, 철강, 보크사이트, 목재	- Samarinda~Balikpapan 남북 고속도로 (동부 칼리만탄) - Kalimantan 횡단도로(385km)
술라웨시	식품, 농업, 어업, 코코아, 니켈, 석유·가스	- Siwa~Makassar 유료 도로(남부 술라웨시/293km) - Parigi~Tidantana 도로 정비(298km)
발리-NT	관광, 어업, 축산업	- Ngurah Rai 공항(남부 발리) - Guyangan 수자원 관리(남부 발리)
파푸아	식품, 어업, 구리, 니켈, 동, 석유·가스	- Tangguh 가스클러스터 조성(서부 파푸아) - Merauke 식품클러스터 조성(남부 파푸아)

자료: Masterplan(2011)

제 2 절 원자재 현황

I.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현황

1. 개 황

인도네시아는 주석(2010년 기준 세계 2위)·동(4위)·금(7위)·니켈(4위)·석탄(15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주 생산 광종은 석탄, 동, 니켈, 주석, 금, 보크사이트 등이며, 광물 및 관련 제품이 인도네시아 총 수출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하게 부존해 있는 곳은 수마트라 지역으로 주로 석탄, 주석, 보크사이트 등이 매장되어 있으며, 칼리만탄 지역에는 석탄, 니켈, 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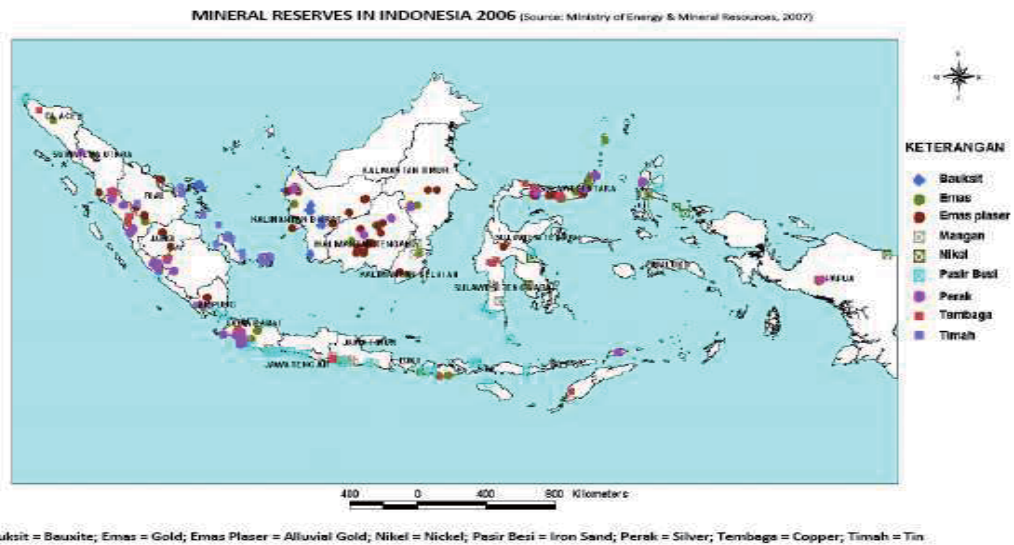
아몬드 등이 부존되어 있고, 자바지역에는 망간, 금 등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술라웨시 지역은 니켈, 이리안 자야(Irian Jaya)지역은 동 생산지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늄은 빈탄 섬을 중심으로 리아우 일대와 방카 섬, 그리고 서칼리만탄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2010년 기준)>

광종	단위	인도네시아(A)	세계(B)	A/B(%)	세계순위
주석	천톤	800	5,200	15.4%	2
동	천톤	30,000	630,000	4.8%	5
금	톤	3,000	51,000	5.9%	5
니켈	천톤	3,900	76,000	5.1%	6
석탄	백만톤	4,328	826,001	0.5%	15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인도네시아의 주요자원 매장지역>



(보크사이트, 금, 사금, 망간, 니켈, 사철, 은, 구리, 주석)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광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상대적은 적은 편이어서 (주)삼탄이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투자한 Kideco Jaya Agung³¹⁾만이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밖에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분야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아직 대규모 투자 건은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석 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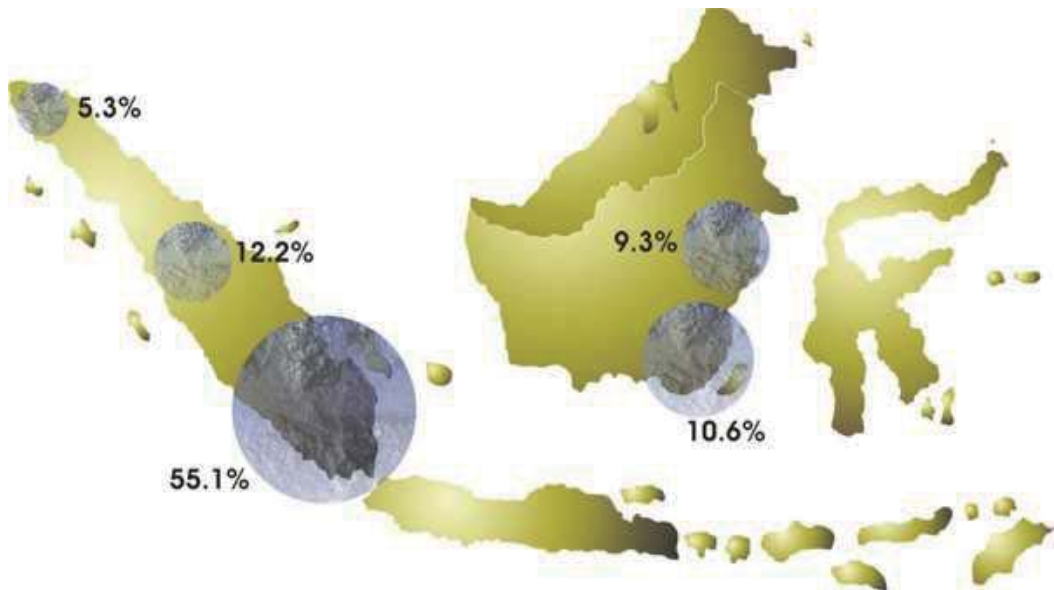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수출국의 자리를 지켜왔으며, 2003년~2007년에는 수출량이 8,800만 톤에서 1억 7,700만 톤으로 약 2배의 증가량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요는 아시아 산업 및 발전수요와 유럽 및 아메리카의 틈새시장에 이끌려 향후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의 수요압력이 심화되고 전력위기의 우려로 인하여 수출량은 2013년에 2억 2,700만 톤 규모로 더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총 증가율도 4.2%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에는 모두 38개소의 가행탄광이 있으며, 추가로 40여 개의 석탄 자산들이 탐사과정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의 석탄생산업체인 PT Bumi Resources tbk는 2007년 7억 8,900만 달러의 순수익을 내면서 2006년 대비 255%의 수익증가를 이루었고, 생산량도 5,540만 톤으로 11%가 증가하였다. PT Bumi는 향후 4년 간 총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2위의 석탄생산업체 PT Adaro tbk는 3,600만 톤을 생산하여 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5~10년 내에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연간 20%의 증산율을 목표로 총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PT Kidoco Jaya Agung과 PT Berau Coal은 각각 8%와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31) Kideco Jaya Agung은 현재 인도네시아 3위 석탄생산기업으로 1982년에 1세대 Coal Contract of Work(CCOW)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인도네시아 광업회사들은 몇몇 개발광산의 향후 몇 년 동안에 결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수출용량이 7,600만 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PT Bumi사가 Kaltim Prima(2,400만 톤/년 증가) 및 Arutmin(1,000만 톤/년 증가)광산에서 확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Bayan Group은 약 650만 톤/년을 증가시키고, Straits는 Jembayan 및 Sebuku 광산에서 각각 550만 톤/년과 400만 톤/년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21개 소규모 광산업체들 또한 2013년까지 총 3,400만 톤/년의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석탄매장량 지역별 분포>



자료: Coal Trade International 2010.1.

3. 동·금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2위의 금 생산국이며, 세계 7위의 생산국 대열에 속한다. 금은 수마트라의 Lebong Tandai에서 생산되며, Irian Jaya 고지대의 Freeport 동 관산에서는 부산물로 생산된다. 인도네시아 대부분

의 금광은 수명이 짧으며, 금 생산량의 대부분은 P.T. Freeport의 Irian Jaya에 있는 채광시설에서 나온다.

PT Freeport Indonesia(PTFI)와 PT Newmont Nusa Tenggara(PFNNT)는 인도네시아 동 생산량의 94%와 금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PTFI의 동 생산량은 13억 톤에서 12억 톤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주로 2007년 하반기 Grasberg 노천광의 저품질 생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 생산량 감소는 금 생산량 증가 및 동과 금 가격이 각각 \$3.32와 \$681로 상승함에 따라 상당부분 상쇄되었다. PFNNT는 2007년 동과 금 모두 생산량의 증가를 보였는데, Batu Hijau광산에서 동 4억 8,400만 파운드와 금 54만 8,000온스를 생산했다.

4. 니켈

세계 4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의 니켈매장량은 향후 20년 이상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인 것으로 평가되며, 중앙 술라웨시(Sulawesi) 및 리안 자야(Rian Jaya)에 있는 대규모 신규 광산에서 주로 생산되어 대부분은 수출용 페로니켈과 니켈매트로 전환된다. 세계적 수준의 니켈 생산업체로서 PT Antam과 PT Inco Indonesia가 있는데, 2007년 Antam의 순이익은 생산량 증가 및 금속가격의 강세에 따라 230% 증가 했다. 니켈이 Antam 판매수익의 약 90%를 차지하며, 금은 10% 정도이다. Antam사는 술라웨시 동남부의 Pomalaa에 니켈광산과 제련소 및 정련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Maluku섬의 니켈광에서도 Pomalaa 제련소와 정련소에 니켈을 공급하고 있다. PT Inco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세계적 수준의 니켈 생산업체로서 캐나다의 Inco(현 CVRD)가 61%, Sumitomo Metals가 20%, 인도네시아 국민이 19%를 소유하고 있다. PT Inco의 광산과 공장은 술라웨시 동남부의 Soroako에 위치해 있으며, 최소 20년 동안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파리에 본부

가 있는 니켈 생산업체 Eramet SA는 2006년 5월 Halmahera섬에 대량의 니켈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PT Weda Bay Nickel의 운영권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PT Weda Bay Nickel은 세계 최대의 미개발 니켈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5. 주 석

인도네시아는 세계 정련주석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석 생산은 주로 국영 P.T. Tambang Timah와 합작업체 P.T. Koba Tin³²⁾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P.T. Tambang Timah는 세계 최대의 주석 생산업체로 Banka Island, Karimun, Kundur 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Surabaya, 런던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65%, 민간이 나머지 35%를 소유하고 있다. 2007년 PT Timah는 총 5만 8,325톤을 생산하여 세계 정련주석 공급량의 18%를 담당했다.

6. 구 리 · 은 · 보크사이트

인도네시아는 세계 7위의 구리 생산국으로서 PT Freepot Indonesia와 PT Newmont Nusa Tenggara가 대표적인 구리 생산업체이다. 최근에는 은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북 수마트라의 Dairi와 Belitung의 Kelapa Kampit, 그리고 파푸아에 위치한 Kucing Liar와 Gasberg Deep에 많은 양의 은이 매장되어 있다. 보크사이트는 주로 북부 수마트라의 아산(Asahan)에서 세계 4위 규모의 연간 약 100만 톤이 생산되어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서부 칼리만탄의 많은 매장지역이 아직 미개발 상태이다.

32) P.T. Koba Tin은 P.T. Tambang Timah가 25%를, Iluka Mining Corporation이 75%를 소유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광업 관련 기관

1. 중앙부처: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① 석유·가스청(Directorate General of Oil and Gas)
 - ② 광물·석탄청(Directorate General of Mineral and Coal)
 - ③ 전력청(Directorate General of Electricity)
 - ④ 신에너지재생·보전청(Directorate General of New Energy, Renewable and Energy Conservation)
 - ⑤ 지질청(Geology Agency)
 - ⑥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관한 연구개발국(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 ⑦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관한 교육훈련청(Education and Training Agency)
2. 정부산하기관
 - ① 일반광공사: PT Aneka Tambang
 - ② 석탄공사: PT Tambang Batubara Bukit Asam
 - ③ 주석공사: PT Timah Tbk
3. 주요 광산업체
 - ① Adaro Indonesia, PT, ② Antam Tbk, PT(PT Aneka Tambang Tbk), ③ Arutimin Indonesia, PT, ④ Barisan Tropical Mining, ⑤ Berau Coal, PT, ⑥ Bumi Resources, PT, ⑦ Earthstone Group, ⑧ Freeport Indonesia, PT(PTFI), ⑨ Galuh Cempaka, PT, ⑩ Harita Jayaraya, PT, ⑪ Indominco Mandiri, PT, ⑫ Indo Muro Kencana, PT, ⑬ Indonesia Asahan Aluminium Co., PT, ⑭ Ingold Management, PT, ⑮ International Nickel Indonesia(Inco), PT, ⑯ Irja Eastern Iminerals Corp., ⑰ Kaltim Prima Coal, PT, ⑱ Kelian Equatorial Mining, PT, ⑲ Koba Tin, PT, ⑳ Malaysia Smelting Corp Berhad, ㉑ Natarang Mining, ㉒ Newmont Nusa Tenggara, PT(PTNNT)³³⁾, ㉓ Prima Lirang Mining, PT, ㉔ Pukuafu Indah, PT, ㉕ Pertambangan Bumi Indonesia, ㉖ PT Berkat Bhinneka Perkasa, ㉗ PT International Nickel Indonesia, ㉘ PT Koba Tin, ㉙ PT Lusang Mining, ㉚ PT Petrosea Tbk, ㉛ Timah TBK, PT(舊 Tambang Timah, PT)

33) 합작투자기업

II.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자원 현황

1. 석 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석유생산국으로서 동 지역에서 가장 오랜 석유생산 역사를 지닌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원유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유의 순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석유산업은 인도네시아의 중요 수익원으로 가스 산업과 함께 2008년 기준 전체 국내수익의 약 22%, 2009년 기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원유 매장량은 2009년 말 기준 약 44억 배럴로 평가되지만,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현재의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매장량은 2015년에 약 40.8억 배럴로 감소할 전망이다. 원유 일일 생산량도 2007년에 96.9만 배럴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100만 배럴 규모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감소세가 이어져 2011년에는 95만 배럴, 2015년에는 92만 배럴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 순수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석유생산량 감소로 200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원유 생산량이 OPEC의 생산량 쿼터³⁴⁾를 밑돌면서 2008년 말에는 OPEC 지위를 포기하였다. 현재의 생산량 추세로는 OPEC 복귀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산량이 늘어나 원유 순수출국이 되면 다시 OPEC에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산유량의 감소는 매장량의 고갈뿐만 아니라, 기술적 문제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투자부족에서 기인하는데, 세제와 허

34) OPEC의 생산량 쿼터는 2010년 말 기준, “2,484만 배럴/일”이다.

가권 배분과정에서의 비효율성으로 외국인과 민간부문의 유전탐사 및 석유채굴 관련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정유시설을 증설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 관련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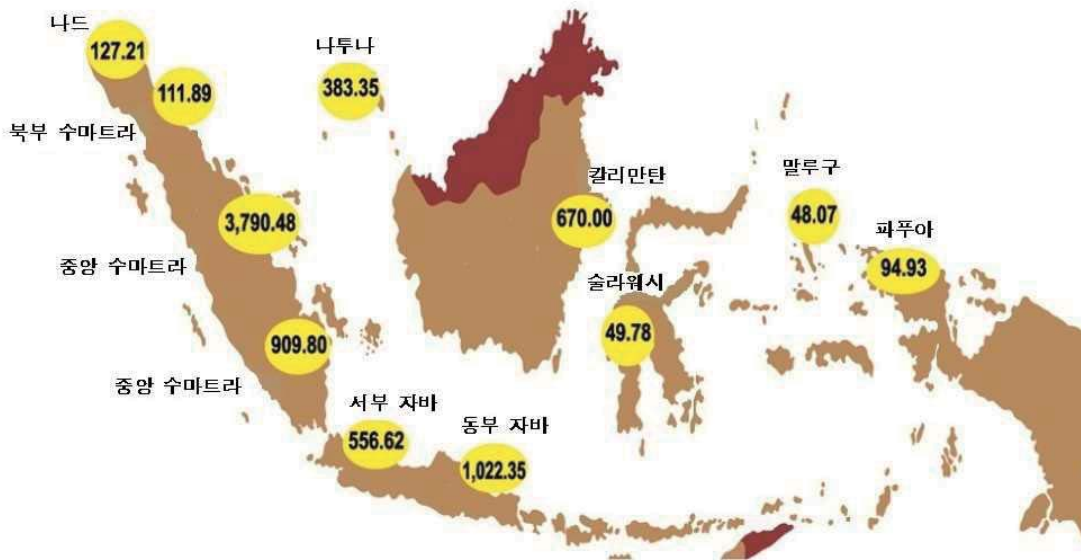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장량	백만 배럴	3,990	3,748	4,403	4,405	4,339	4,274	4,210	4,147	4,084
생산량	천 배럴/일	969	1,031	1,021	1,030	1,005	995	980	965	920
소비량	천 배럴/일	1,273	1,314	1,344	1,364	1,398	1,433	1,462	1,491	1,521
순수입	천 배럴/일	304	283	323	334	393	438	482	526	601

* 2011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Indonesia Oil and Gas Report Q1 2011.

주요 유전은 수마트라(Sumatra) 동부에 위치한 미나스(Minas)와 두리(Duri)로, 두 유전의 생산량이 인도네시아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신규 유전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9년 엑손모빌(Exxon Mobil)사가 개발한 씨푸(Cepu)유전은 추정매장량이 약 6억 배럴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별 석유 매장량>



* 단위: Million Stock Tank Barrel (MSTB)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donesia Energy Statistics 2010.

인도네시아는 고가의 고품질 원유를 수출하고 저가의 저품질 원유를 수입해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국토가 넓고 지역별로 지형조건의 차이가 커서 석유산업의 기간시설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원유의 대내외 운송이 파이프라인보다는 주로 선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생산된 인도네시아산 원유의 대부분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정유 공장으로 수출되어 정제되며, 내수용 원유는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라크 등지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한다. 2009년 기준으로 對일본 수출이 전체의 1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한국(14.6%), 싱가포르(8.7%), 미국(3.9%) 등의 순이다.

원유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는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P.T. Pertamina)³⁵⁾가 독점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국내 수요의 70%를 충당하

35) 2003년 Pertamina가 국영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로열티 지급 관련 특혜, 정유, 국내유통 및 마케팅에서 실질적인 독점 혜택

고 있다. 페르타미나(P.T. Pertamina)는 2017년까지 국내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하여 석유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총 9개의 정유공장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페르타미나(P.T. Pertamina)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공장의 처리 용량은 10만 배럴/일 이상이며, 페르타미나(P.T. Pertamina)는 외부자금 조달을 통해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유공장 현황>

운영자		정유공장 / 지역	처리용량 (배럴/일)
가동 중인 정유 공장	페르타미나 (Pertamina)	셀라캅(Cilacap)/동부 자바	348,000
		발릭파판(Balikpapan)/동부 칼리만탄	260,000
		무시(Musi)/남부 수마트라	127,200
		발롱간(Balongan)/서부 자바	125,000
		두마이(Dumai)/중앙지역	120,000
		세이파크닝(Sei Pakning)/리아우(Riau)	50,000
건설 중인 정유공장	인탄자야(Intanjaya), 아그로메가 (Agromegah), 아바디(Abadi)	파레파레(Pare Pare) 정유공장	300,000
	페르타미나, 시노펙 (Sinopec, China)	투반(Tuban)/동부 자바	200,000

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 또한, Pertamina는 상업성 있는 유전 및 가스전을 발견한 투자자에게 15%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외사업도 추진할 수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xonMobil, Caltex, Total, BP, ConocoPhillips, INPEX 등과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가 스

인도네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 10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매장량 기준으로는 세계 11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위의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기준 연간 719억 m³의 가스를 생산하여 액화천연가스(LNG) 형태 또는 가스수송관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3.2조 m³이다(2009년 기준). 인도네시아 천연가스의 약 70%는 나투나섬, 동부 칼리만탄, 남부 수마트라, 이리안 자야(Irian Jaya) 등 연안지역에 매장되어 있는데, 특히, 나투나섬 주변은 최대 매장지역으로 2009년 기준 전체 매장량의 약 45%가 매장되어 있고, 새로운 가스 공급원이 개발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매장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가스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장량	3,002	3,185	3,185	3,185	3,185	3,099	3,014	2,929	2,847
생산량	67.6	69.7	71.9	76.0	86.0	85.0	85.0	82.0	80.0
소비량	31.3	33.3	36.6	38.1	39.6	41.4	42.7	45.2	47.9
수출량	32.9	36.4	35.3	37.9	46.4	43.6	42.3	36.8	32.1

* 단위: 10억 m³

* 2011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Indonesia Oil and Gas Report Q1 2011.

<인도네시아 주요 천연가스전의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매장지역	매장량(조 m ³)	생산량(백만 m ³ /일)
Arun/South Lhoksukon/Pase	17.6	1,100
Badak(Nilam/Mutiara/Samberah)	N/A	1,240
Mahakam(Tunu/Peciko 포함)	24.4	2,591
Natuna Block A	13.0	175
Natuna Block B	1.1	140
Corridor(Suban 포함)	5.0	110
Tangguh(Wiriagar/Berau/Muturi)	14.4	.
기 타	19.3	2,300
계	94.8	7,600

자료: BP Migas, Total Company Results

인도네시아는 매년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74%를 LNG 형태로 일본(전체 생산량의 2/3)과 한국, 대만 등 동북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로써 벌어들인 천연가스 수출액은 2009년 기준 71.9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총 수출의 약 5.5%를 차지하였다. 게다가, 천연가스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 약 9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약 14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특히, LNG) 수출국의 지위를 누려왔으며, 특히, 1999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910만 톤의 수출량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2003년 기준으로는 세계 LNG 수요의 약 26%를 충당하였다. 그러나, 최근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가스전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난 10년간 LNG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

며, 중동국가들 및 호주에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인도네시아의 LNG 수출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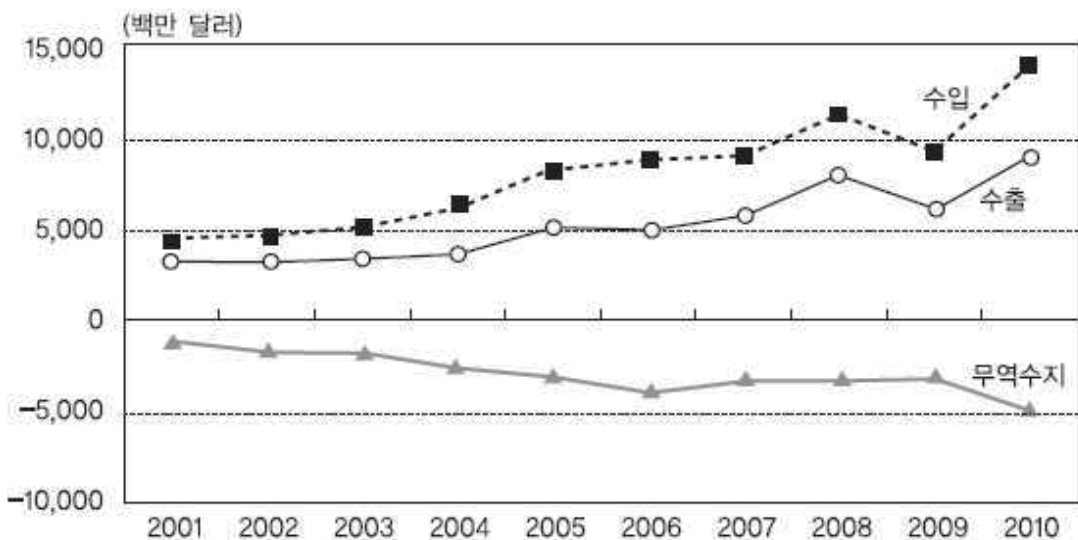
제 3 절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 및 투자 환경

I. 교역현황

1. 교역규모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규모는 2001년 77억 달러에서 2010년 228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제10위 교역국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교역액이다. 이러한 교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對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인도네시아 교역규모 변화 추이>



자료: KOTRA

2. 수 입

2010년을 기준으로 對인도네시아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對인도네시아 수입의 대부분은 1차 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은 對한국 수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對세계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2.1%로 원유·가스와 여타 광물자원의 비중인 17.8%와 16.9% 보다 상당히 높다.³⁶⁾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제조업 수출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코코넛, 고무, 구리·주석, 펄프, 목재가공 등 1차 산품의 가공이나 면직물, 음식료, 가죽제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對인도네시아의 수입에서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 이후 천연자원의 직접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는 사실이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소비증대에 대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천연가스 도입 역시 계약이 만료되는 2014년 이후 불가능해졌다. 그러므로 對인도네시아 수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자원 수입 중단으로 인하여 새로운 對한국 수출품목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향후 對인도네시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對인도네시아 수입>

2001			2010		
품목명	금 액	비 중	품목명	금 액	비 중
원유	1,099	24.6	석탄	3,034	21.7
천연가스	977	21.8	천연가스	2,827	20.2

36) Industry Facts & Figure (2011), Ministry of Industry Republic of Indonesia.

2001			2010		
품목명	금 액	비 중	품목명	금 액	비 중
석유제품	496	11.1	원유	2,385	17.1
동광	324	7.2	동광	1,210	8.7
목재류	291	6.5	석유제품	541	3.9
제지원료	205	4.6	임산부산물	368	2.6
석탄	161	3.6	제지원료	366	2.6
인조섬유방직사	101	2.3	기타 금속광물	256	1.8
종이제품	73	1.6	니켈제품	255	1.8
전자관	48	1.1	정밀화학원료	226	1.6

*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KOTRA, MTI 3단위 기준.

3. 수 출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석유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 석유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를 넘어섰으며, 석유제품 이외에 편직물, 철강판,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이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제조업 구조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 의류, 화학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자동차 및 수송기계의 성장세가 높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는 해당 상품제조에 필요한 중간재의 수입을 필요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 주력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對인도네시아 수출>

2001			2010		
품목명	금 액	비 중	품목명	금 액	비 중
석유제품	330	10.1	석유제품	3,212	36.1
기타 직물	225	6.9	편직물	597	6.7
합성수지	184	5.6	철강판	540	6.1
인조장섬유직물	162	4.9	합성수지	444	5.0
석유화학중간원료	152	4.6	합성고무	214	2.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45	4.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92	2.2
컴퓨터	118	3.6	무선통신기기	175	2.0
철강판	118	3.6	음향기기	163	1.8
가죽	104	3.2	영상기기	146	1.6
전자관	101	3.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3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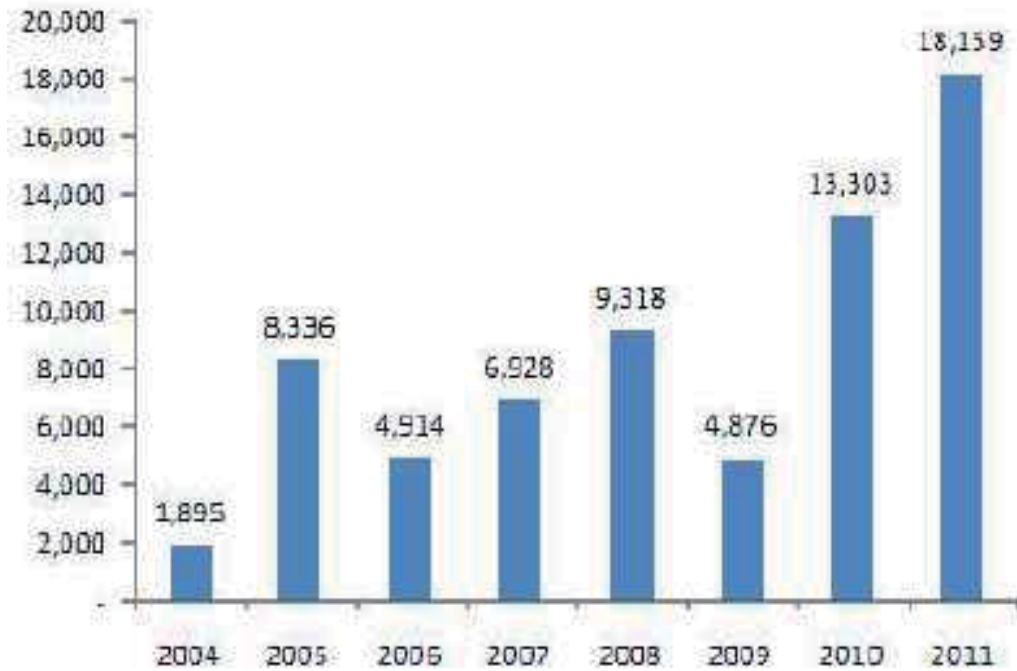
*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KOTRA, MTI 3단위 기준.

II. 투자 현황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약 49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약 133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2011년에는 총 181억 달러로 전년대비 39%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급증하고 있다. 2011년 투자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약 74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40%에 달하며, 광업이 41.6억 달러(22%), 소매업이 26억 달러(14%), 수송·보관·통신업이 23억 달러(13%)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인도네시아 FDI 유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한-인도네시아 간에도 그 동안의 교역증가와 최근 인도네시아가 신흥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투자규모는 2001년, 1억 7,536만 달러에서 2010년, 8억 6,392만 달러,³⁷⁾ 2011년에는 12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규모는 인도네시아 내 투자국 가운데 싱가포르, 일본, 미국,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3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11. 15면.

<대인도네시아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2011년)>

순 위	국 가	투자기준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싱가포르	5,123	31.3
2	일본	1,516	9.2
3	미국	1,487	9.1
4	네덜란드	1,354	8.3
5	한국	1,218	7.5
6	말레이시아	618	3.8
7	버진아일랜드	517	3.2
8	영국	419	2.6
9	대만	243	1.5
10	독일	158	1.0
총계	합계	18,159	100.0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투자의 대부분은 광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광업과 제조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투자금액의 34%와 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투자는 섬유, 신발, 가죽제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생산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자바섬 칠레곤(Cilegon)시에 POSCO의 일관제철소 준공³⁸⁾과 한국타이어의 자카르타 인근 브카시(Bekasi) 지역의 타이어공장 건설 등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롯데마트(LotteMart)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ASEAN 등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겨

38) POSCO는 인도네시아 칠레곤에 60억 달러를 투자해 일관제철소를 건설 중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사업이다.

양한 진출사례로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성향이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위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⁹⁾ 이 외에도 STX는 2012년 초 3,000만 달러를 투자해 IAC(PT Indonesia Cemerlang)社로부터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키탱 지역의 석탄광 지분 40%와 판매·운영 독점권을 인수하였다.

제 4 절 우리 정부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개발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1973년 9월 18일 수교⁴⁰⁾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상호 간의 경제협력은 양국 모두에 중요한 이유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ASEAN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거대한 잠재적 시장일 뿐만 아니라, 자원부국으로서 원자재 등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과 함께 천연자원의 직접적인 수출을 제한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에 의해 석유·가스 및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광종의 수입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원자재의 수급을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또한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⁴¹⁾와 경제협력을 통해 세계 무역의 중심과 연결통로를

39)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구매력 증가는 소비시장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개발, 전국적 판매망 확보 및 판매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9년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 매장 19개를 인수하여 창고형 할인매장 사업에 진출하였고, 락앤락(Lock & Lock)과 같은 소비재 기업들도 법인을 만들어 시장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롯데리아(Lotteria), 투레주르(Tour Les Jours)와 같은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40) 북한-인도네시아 간의 수교는 1964년 4월 16일에 이루어 졌다.

41) 우리나라의 지난 해(2011년) 무역규모는 1조 809억 달러로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점유율은 2010년 기준, 수출이 3.1%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룩한 압축적 경제성장의 경험을 활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증하듯 과거 경제및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 분야협력협정(19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9년), 투자보장협정(1991년), 문화협력협정(2000년), 범죄인인도조약(2000년), 자원협력협정(2002년), 한-ASEAN FTA 상품협정(2006년), 한-ASEAN FTA 서비스협정(2007년), 한-ASEAN FTA 투자협정(2009년) 등에 더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은 최근 급속하게 진전되는 양상이다. 특히, 2009년 6월 한-ASEAN 특별 정상회의 시 양국은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및 동년 12월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서도 양국은 경제·국방·에너지 등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 양국 간 정상 회담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실행전략 마련에도 한국이 향후 3년간 2백만 달러 규모의 KSP⁴²⁾ 정책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합동장관회의(2011년 2월)⁴³⁾, 경제협력을 위한 실무TF회의(2011년 5월 발리, 10월 서울), 임업위원회, 군사정보교류회의⁴⁴⁾ 등을 통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 군사 등의 분야에

로 세계 7위, 수입이 2.8%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2011), 24면.

42)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개발원(KDI)과 기획재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국식 원조모델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을 통해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43) 2011년 2월, 한-인도네시아 합동장관회의에서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해 전방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합작투자, 기술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44) 이러한 점에서 지난 해 이루어진 고등훈련기 T-50 수출계약과 잠수함 수출 진전

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양국 간 정상회담(발리 ASEAN+3 회의시)에서 양국 경제장관⁴⁵⁾이 사무국 운영지침(TOR)에 대한 서명을 거쳐 2012년 2월 28일에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실행에 관한 양국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을 설치·발족하였다.⁴⁶⁾ 같은 날 개최된 장관급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과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① 마스터플랜 협력을 위한 경협 사무국 Work Plan 마련, ② 협력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위해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재무부 간 체결 추진 중인 1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 내용 합의, ③ 양국이 추진·협약 중인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가속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 및 ④ 무역·투자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⁴⁷⁾ 협상개시에 필요한 절차의 조속한 진행, 유망 프로젝트 발굴, 在인도네시아 한국기업 경영애로 해소체계 강화 등을 향후 추진방안으로 협의하였다.⁴⁸⁾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에너지 협력에 관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석유·가스·광물자원 개발,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도 에너

은 양국 간 경제협력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0월,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기 위한 단독 계약협상에 착수하였다. 금액으로는 1조 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45) 한국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인도네시아의 하따 경제조정부 장관

46) 사무국 구성을 위해 한국은 관계부처 공무원(지경부, 기재부, 환경부 과장급) 및 산업연구원, KDI,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를 파견(6명)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조정부, 상공회의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6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47) 2007년 발효된 한-ASEAN FTA 보다 높은 수준의 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체결로 한-ASEAN FTA상 양허제외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철폐 시 우리나라 GDP는 약 0.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8) 보도자료(지식경제부), “동남아 경제협력 가속도 붙이다”-홍석우 장관 말련, 인니 방문으로 對동남아 경협 확산 지속- 한·인니 경협사무소 개소, 장관급 경협위원회 개최-, 2012.2.29. 참조.

지 부족⁴⁹⁾에 대비하여 보조금정책의 도입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부문별 추진 예정 사업⁵⁰⁾>

분 야	추진 예정 사업
환경	자카르타 인근의 오염된 강 복원사업, 발리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서부자바 지역 정수시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에너지·자원	압축천연가스(CNG) 방식의 중소 가스전 개발 및 수송·저장시설과 발전소 건설, ⁵¹⁾ 술라웨시 니켈광산 개발 및 제련공장 건설, 동 제련공장 건설 운영 및 기술제공 협력, 석유가스전 신규 동등탐사 및 개발사업 참여, 석탄층 메탄가스(CMB)광구 개발, 국내 기업의 민자발전(IPP)사업 진출확대를 위한 협력, 광해방지 공동협력 등
농림·수산	벼농사 농업기계화단지 조성사업, 조림사업, 농공산업복합단지(MIC) ⁵²⁾
산업	POSCO 일관제철소 건설 관련 인허가, POSCO 제철소 건설(\$60억), 한국타이어 공장설립(\$12억) 및 호남석유화학 크래커 Complex 조성(\$40~50억)을 위해 조세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국내 조선사와 DKB社 간 바탐지역 조선소설립 및 선박건조 협력 MOA 체결

49) 인도네시아는 최근 5년 이상 원유생산량이 OPEC 쿼터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자원 개발 투자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요성 및 시사점”, 2011.4.11. 참조.

50) 종래 국내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던 것과 달리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포괄적인 협력형태로 추진

51) 단순 가스전 개발을 넘어 CNG 개발·운송·저장활용을 망라한 종합 협력사업

52) 농공복합단지(Multi-Industry Cluster; MIC):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와 인도네시아 농업부 간 포괄적 농업협력 사업으로 현재 칼리만탄의 Pontianak, Kuburaya, Bulungan 등 3개의 후보지역(총 20만 ha)을 선정하였으며, 후보지 최종 확정 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 야	추진 예정 사업
건설 · 인프라	순다대교, ⁵³⁾ 남수마트라 철도 및 항만 개발사업 등
무역투자	2020년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 전략
정책 · 개발금융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10억 달러 규모의 기본 여신약정 체결 추진, 양국 정책금융기관 협의체 구성 방안

자료: 2012 세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인도-인도네시아 포럼, KOTRA (2012.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 · 인도네시아 경제교류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2011.11.)

제 5 절 평가(검토)

상술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2000년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며 최근 주요 신용평가기관과 UNCTAD 등으로부터 다른 ASEAN 국가들보다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세계의 주요 소비 및 투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인구 및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新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및 G20 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증가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바 최근 우리 정부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교역의 내용 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출은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원자재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 · 가스 · 광물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은 6개 경제회랑 모두에서 광물자원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는바 개발의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 자원개발과 인프라투자를 연동하여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53) 국내건설사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와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순다대교 추진위원회 및 추진조직을 설립할 예정이다.

만, 현재의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개혁정책에 대한 연정 내 기타 정당들로부터의 지지를 꾸준히 도출 또는 유지해야 하는 부담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의 일관성 부재, 천연자원 이외의 수출기반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 관리들의 부정부패 및 높은 청년실업률 등은 원활한 경협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정치·경제적 문제점으로 보인다.

제 3 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 1 절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I. 규제체계 개관

상기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상당 수준의 석탄, 구리, 금, 주석 및 니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광산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화력발전용 열탄(thermal coal)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며, 많은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석탄 및 광물분야 전망 시,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광업정책 평가 및 투자환경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던 결과, 최근 몇 년간 특히, 석탄부문 이외의 그린필드(greenfield)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투자규모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2009년에 새롭게 시행된 「광물 및 석탄 산업에 관한 법률(the 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4 of 2009; 이하 “광업법”)⁵⁴⁾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시행법령체계는 투자자들에게 필수규제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신규투자가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광산 분야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장기 작업계약(Contracts of Work; “CoW”) 체제 및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의 허가권(licensing system) 체제는 광업법 하에서 대체되었으며, 광업법은 허가권부여를 위한 투명한 입찰절차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기반 허가권제(area-based system of licensing)를 시행하였다. 광업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광업승

54) 이를 2009년 이전의 광산규제체계와 구별하여 “新광업법”이라고도 한다.

인절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광업정책, 표준, 지침(guideline) 및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광산 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는 개발(development), 통제(control), 평가(evaluation) 및 해당 부문 분쟁해결(conflict resolution)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광업법은 인도네시아 광산산업 투자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명확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법령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고수익 광산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들의 이익과 인도네시아 광물개발의 이윤이 공정한 비율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바람과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은 분명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법령을 통해 정부가 규정한 균형은 인도네시아에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인바 광업법 하에서 중앙정부는 채굴가능지역을 결정하게 되고, 이 같은 규제환경을 통해 중앙정부가 광산 가능지역에 대해 좀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업(forestry)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예정된 지역에 광산허가가 이중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광업법을 지원하는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에서는 생산자의 연간 국내시장공급의무(DMO)를 결정하는 틀이 확립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한 인프라투자가 확대되면서 예상되는 국내 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연자원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광업허가(mining licence) 보유자는 제3자에게 전적으로 하도급을 주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광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필수규정을 준수하는 등 운영상 높은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인도네시아인 소유의 회사에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광업활동의 이익 중 상당부분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보유하고,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는 거래의 최소가(minimum price) 설정을 위해 벤치마크 가격체제(benchmark pricing framework)를 제시하고 있다.

II. 광산 및 탄광 규제체계

1. 광업법(법 제4/2009호)⁵⁵⁾

광산 및 탄광작업은 상기한 2009년 1월 12일자 광산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 법은 기존의 작업계약(CoW) 및 석탄작업계약(Coal Contracts of Work; “CCoW”)을 포함하여 2009년 이전 인도네시아의 모든 광산 허가체제를 규정하였던 이전 광법 제11/1967호(the Mining Law No. 11/1967)⁵⁶⁾를 대체하는 법이다. 이렇듯 2009년 광업법의 도입은 이전 인도네시아 광업 규제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계약기반의 허가(contract-based concession)는 더 이상 새로운 광업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작업계약(CoW) 및 석탄작업계약(CCoW) 체제와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을 위한 광업권 및 광산권은 특정 광산지역에 기반을 둔 단일지역기반 허가시스템(single area-based licencing system)으로 대체되었다.

광업법에서는 자원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광산허가권(mining licence)을 다음과 같이 3가지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 “IUP(*Izin Usaha Pertambangan*)” 또는 광업허가(Mining Business Licence)
- “IUPK(*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또는 특별 광업허가(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 “IPR(*Izin Pertambangan Rakyat*)” 또는 일반 광업허가(People's Mining Licence)

55) The Mineral and Coal Mining Law No. 4/2009

56) 이를 2009년의 광업법과 구별하여 “舊광업법”이라고도 한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광업권(mining right; Kuasa Pertambangan; “KP”)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IUP기반 허가권은 인도네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회사를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광업법은 여러 시행규칙들로 뒷받침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4가지의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GR”)이 발표되었다.

- 광업지역(“GR22”)
- 광업활동(“GR23”)
- 광물 및 석탄채광에 대한 지시 및 감독(“GR55”)
- 광산매립 및 폐쇄(“GR78”)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에서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3가지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을 발표하였다.

- 광업서비스(“PerMen 28”)
- 국내시장공급의무(DMO)(“PerMen 34”)
- 벤치마크 가격(Benchmark Price)(“PerMen 17”)

MoEMR 산하의 광물·석탄청장(the Director General of Mineral and Coal; “DGoMC”) 또한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2가지 주요 규정(regulations)과 회보(circular letter)를 발표하였다.

- 로열티(royalty) 산정
- 벤치마크 가격

2. 규제체계

(1) 광산지역(Mining Area)

광업은 중앙정부가 광산 개방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만 영위될 수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광산지역(mining area; Wilayah Pertambangan;

“WP”)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상업적 광업지역(commercial mining business areas; *Wilayah Usaha Pertambangan*; “WUP”): 대규모의 광업용 광산지역
- 국가예비지역(state reserve areas; *Wilayah Pencadangan Negara*; “WPN”):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내정된 지역
- 일반 광산지역(people's mining areas; *Wilayah Pertambangan Rakyat*; “WPR”): 소규모의 광업용 광산지역

중앙정부는 광산지역(WP)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세한 지도제작 작업을 통하여 광산 개방지역에 대한 지도를 마련하게 된다. 광산지역에 선정된 지역은 광산만 허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림업과 같은 다른 용도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지역에 대한 지도는 매 5년 마다 최신화(update)된다.

(2) 광업허가(Mining Licence)

해당 광산지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복수의 당사자에게 광업허가가 발행될 수 있다.

- 광업허가(mining business licence; IUP)는 상업적 광업지역(WUP)에서의 광업활동을 위한 일반적 허가이다.
- 특별 광업허가(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IUPK)는 특정 국가예비지역(WPN)에서의 광업활동을 위한 허가로서 WPN지역에서 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일반 광업허가(people's mining licence; IPR)는 규모와 투자가 제한된 일반 광산지역(WPR)에서의 광업활동을 위한 허가로서 IPR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⁵⁷⁾

57) 따라서 본 보고서는 IUP와 IUPK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3) 광업허가의 소유권(Ownership)

광업허가(IUP)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에게 발행될 수 있다.

-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법인
- 협력업체
- 인도네시아인(조합 포함)

기업체는 인도네시아 법인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인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법인과 외국인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법인(즉, PMA 회사⁵⁸)이 모두 포함된다. 이전 광업법 제11/1967호(“舊광업법”) 하에서는 CoW와 CCoW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국내투자자 일방이 소유할 수 있었고, KP는 국내투자자에게만 발행되었다. 그러나, 광업법은 광업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구분을 대부분 제거함으로써 광업부문에서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the Negative List on Foreign Investment)와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4) 한 회사당 하나의 광업허가

광업법의 주요 특징은 하나의 비공개회사(privately held company)는 IUP든, IUPK든 하나의 허가만을 소유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만이 하나 이상의 허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업활동에 관한 GR23상의 전환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은 복수의 광업권(KP)을 소유한 비공개회사가 이를 IUP로 전환하고 한 회사 내에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허가신청은 별도의 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58) PMA 회사(company): *Penanam Modal Asing*; Foreign Investment Company

(5) 탐사(Exploration) 및 생산허가(Production Licence)

광업허가(IUP)이든, 특별광업허가(IUPK)이든 탐사운영(Exploration Operation)과 생산운영(Production Operation)이라는 별도의 2가지 광업활동 단계에 부여된다. 즉, 탐사 IUP 또는 IUPK는 상업적 광업지역(WUP)이나 국가예비지역(WPN) 내의 일반조사, 탐사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되고, 생산운영 IUP나 IUPK는 WUP나 WPN 내에서 건설 작업, 채광, 처리, 정제, 운반 및 판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된다.

(6) 광업허가(IUP) 발행 권한

IUP는 제안된 광산 및 관련 기반시설의 위치에 따라 지방정부(시장 또는 주지사)와 중앙정부(MoEMR 장관) 중 한 곳에서 발행된다. 광업권(KP) 발행절차를 다룬 **舊광업법**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탐사 IUP (Exploration IUP)는 탐사활동지역에 따라 주지사나 MoEMR 장관이 발행한다.

<탐사 IUP>

발행인	광업활동 장소
장관(Minister)	한 곳 이상의 지방(province)인 경우
주지사(Governor)	하나 이상의 리젠시(regency)이지만, 한 곳의 지방에 속하는 경우
시장 또는 리젠트(Mayor/Regent)	하나의 도시(city) 또는 리젠시인 경우

생산운영 IUP(Production Operation IUP)의 발행권한은 처리공장, 운반도로, 저장고 및 항구시설과 같은 광업 관련 기반시설의 위치와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생산 IUP>

발행인	장 소	환경적 영향
장관	광산지역, 처리, 정제 및 항구시설 등이 한 곳 이상의 지방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적 영향이 한 곳 이상의 지방에 미치는 경우(시장, 리젠트 및 주지사의 권고(recommendation) 포함)
주지사	광산지역, 처리, 정제 및 항구시설 등이 한 곳 이상의 리젠시에 걸쳐 있지만, 한 곳의 지방에 속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이 한 곳 이상의 리젠시에 미치지만, 지방 한 곳에 한정될 경우(시장과 리젠트의 권고 포함)
시장 또는 리젠트	광산지역, 처리, 정제 및 항구시설 등이 한 곳의 도시나 리젠시 한 곳에 있는 경우	환경적 영향이 한 곳의 도시 또는 리젠시 한 곳 안에만 미치는 경우(장관과 주지사의 권고 포함)

그러나, 프로젝트의 위치와 환경적 영향이 불일치할 경우, 생산 IUP를 부여하는데 있어 어느 쪽이 우선시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많은 광산프로젝트가 다른 리젠시 또는 다른 지방에 광산, 처리, 운반 및 항구시설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광업권(KP) 허가시스템에서 보다는 장관과 주지사가 생산운영 IUP의 발행 및 갱신에 좀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특별광업허가(IUPK) 발행 권한

IUPK는 운영상의 지리적 범위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발행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이 국가예비지역(WPN) 개발에 우선권을 가지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입찰절차를 통해 민간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8) 허가조건 및 연장

광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광업허가는 다음과 같이 발행되고 연장될 수 있다.

	탐사 IUP	생산 IUP	연 장
석탄	7년	20년	10년 x 2
금속광물	8년	20년	10년 x 2
비금속광물	3년	10년*	5년 x 2*
암석(Rocks)	3년	5년	5년 x 2

* 특정 비금속광물에 대한 생산 IUP는 최대 10년간 2번, 20년 동안 발행될 수 있다.

	탐사 IUPK	생산 IUPK	연 장
석탄	7년	20년	10년 x 2
금속광물	8년	20년	10년 x 2

(9) 허가지역

광업활동에 관한 정부령 GR23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석탄 및 금속 광물의 탐사 광업허가(IUP) 규모가 탐사 3년 이후부터는 줄어든다는 것이다.⁵⁹⁾ 따라서 생산 광업허가(IUP) 또는 특별광업허가(IUPK) 발행 시, 생산단계에서의 최대지역(maximum area)은 다시 감소된다.

탐사 IUP		GR23상 탐사 3년 후부터 축소되는 규모	생산 IUP
석탄	5,000ha~50,000ha	최대 25,000ha까지 감소의무	최대 15,000ha
금속광물	5,000ha~100,000ha	최대 50,000ha까지 감소의무	최대 25,000ha

59) 비금속광물 및 암석의 경우는 축소되는 규모가 비교적 작다.

탐사 IUP		GR23상 탐사 3년 후부터 축소되는 규모	생산 IUP
비금속광물	100ha~25,000ha	12,500ha(2년 후부터 적용)	최대 5,000ha
암석	5ha~5,000ha	2,500ha(1년 후부터 적용)	최대 1,000ha

탐사 IUPK		GR23상 탐사 3년 후부터 축소되는 규모	생산 IUPK
석탄	50,000ha	최대 25,000ha까지 감소의무	최대 15,000ha
금속광물	100,000ha	최대 50,000ha까지 감소의무	최대 25,000ha

광업허가(IUP)와 특별광업허가(IUPK)는 한 가지 유형의 광물 및 석탄에 대하여 발행되며, 다른 광물이 발견된 경우, 관련 정부당국은 해당 광물에 대하여 추가로 IUP 및 IUPK를 발행할 수 있다. 탐사IUP 소유자는 관련 정부당국이 다른 투자자에게 광업허가를 발행하기 이전에 추가 광물채굴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다.

(10) 신규 광업허가(mining licence) 입찰요건

신규 IUP 및 IUPK는 직접 지명보다는 경쟁 입찰과정을 통해 발행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대상자들이 모두 IUP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IUPK 허가의 경우는 국유기업이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낙찰자에게는 특정 석탄이나 신청한 광물에 대한 탐사 IUP 또는 IUPK가 발행된다. 입찰과정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담보되며, 舊광업법 하에서는 관련 정부당국이 신청에 대하여 바로 광업권(KP)을 발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입찰과정

입찰과정은 작업개시 최소 3개월 전에 발표되며, 구체적인 규정은 입찰위원회(tender committee)에 참석하는 3개 정부기관(중앙, 지방, 리

젠시)이 함께 정한다. 입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법인(즉, PMA회사)이어야 한다. 입찰과정에서는 입찰자가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자가 둘 미만인 경우,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재입찰 시에도 입찰자가 하나일 경우, 허가(licence)는 입찰기본가(최소입찰가)만 충족되면 해당 입찰자가 낙찰 받을 수 있다.

② 선정기준

광업활동에 관한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GR23에는 입찰가와 기술적 고려사항에 따라 낙찰자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같은 포괄적인 규정의 세부사항은 추가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에 따라 결정된다. “기술적 고려사항(technical considerations)”에 따라 세분화된 기술적·행정적·재무적 요건이 입찰과정 동안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회사로서 이전에 광업을 영위했던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이라는 증거(신설 법인의 경우, 모회사 또는 제휴사의 추천서로 입증)
-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으로서 광업·지질학 전문가인 직원이 최소 1명 이상이라는 증거
- 개발 초 4년간의 연간 작업계획서 제출

입찰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규 광업허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용료의 최대 10% 또는 허가가 만료된 경우, 자료 및 총 투자비용의 10%를 국영은행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11) 국내시장공급의무(DMO)

광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DMO에 대한 체계도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정부가 각 광업생산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며,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DMO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9년 12월 31일에 발효된 국내시장공급의무에 관한 MoEMR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 PerMen 34에 따르며, 이는 DMO가 모든 형태의 석탄 및 광물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광업회사는 광물과 석탄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DMO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PerMen 34와 GR23은 모두 구체적인 DMO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연도의 DOM 비율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장관이 결정한다.

- 국내 사용자들은 전년 3월까지 자신들의 필요 예상치(예상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관은 제출된 국내 필요치(수요)와 광업회사들의 생산계획을 검토하고 계산한다.
- 이후, 장관은 전년도 6월까지 최소 DMO 비율을 결정해서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국내 사용자와 이들 각자의 필요치(수요)를 기재하여야 한다.
- 광업회사는 허가를 발행한 당국(장관, 주지사 또는 시장/리젠트)과 광물·석탄청장(the Director General of Minerals and Coal; “DGoMC”)에 대하여 자신의 DOM 비율을 명시한 작업프로그램과 해당 연도의 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령에 따라 DMO 판매의 최소·최저가격이 규정되는데, PerMen 34는 이러한 최소가격이 수출품의 최소가격과 같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PerMen 34는 “Cap and Trade”방식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신의 DMO 의무를 초과달성한 광업회사는 DMO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업회사에게 DMO 크레딧(credits)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 DMO 크레딧에 대한 가격 메카니즘은 상업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DMO 크레딧의 거래 메

카니즘은 2010년 11월 29일자 회보(Circular) 제5055/30/DJB/2010호에 명시되어 있다. 동 회보에는 DMO 크레딧이 광물·석탄청장(DGoMC)의 승인을 얻어 광업회사 간에 거래될 수 있고, 광업회사를 대신하여 트레이더(trader)가 소유한 크레딧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선정된 석탄 광업회사만을 대상으로 최소 석탄 DMO 판매를 결정해 왔으며, 이 같은 광업회사들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연간 생산의 24.75%와 24.17%를 판매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내 석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DMO 석탄판매 의무량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석탄 및 광물가격 벤치마킹

광업활동에 관한 정부령 GR23은 광물 및 석탄판매 참고가격(reference price)을 규정하는 MoEMR의 승인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은 상기한 PerMen 17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대체로, 석탄 및 금속 광물에 대한 벤치마크 가격은 MoEMR가 광물·석탄청장(DGoMC)을 통해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비금속광물 및 암석에 대한 벤치마크 가격은 주지사나 시장 또는 리젠트가 결정하여야 한다.

벤치마크 가격은 정부 로열티(Royalty) 산정에 있어서 최저가격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실 판매가가 벤치마크 가격보다 높으면, 정부 로열티는 실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 판매가가 벤치마크 가격보다 낮으면, 벤치마크 가격이 정부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된다. 특정 유형의 석탄(분탄(fine coal)), 특정 불순물이 포함된 석탄 등과 특수용도 석탄은 광물·석탄청장(DGoMC)의 사전 승인을 받아 벤치마크 가격 이하로 판매될 수 있다.

또한, 벤치마크 가격은 현장 영업 및 장기판매(long term sales)에 적용되는데, 장기판매의 경우, 광업회사는 PerMen 17에 따라 12개월 마다 판매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석탄의 경우, 장기 석탄판매

가격은 이전 3개월 동안의 벤치마크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광업 회사는 장기판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제안된 판매가격을 광물·석탄청장(DGoMC)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투자철회(Divestment)

광업법은 광업허가를 받은 회사의 지배주주(또는 대주주)가 외국자 본인 경우 생산년도 5년차까지 투자의 일부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GR23은 광업허가(IUP) 소유 기업에 대한 지분의 최소 20%를 인도네시아인이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철회는 선호도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유기업 또는 국영 민간회사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14) 국내처리의무 규정

광업법에 따라 광업허가(IUP) 및 특별광업허가(IUPK) 보유자는 해당 광물 및 석탄의 가치증대를 위한 처리·정제작업(processing and refining)을 국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 생산운영(Special Production Operation) IUP 및 IUPK를 이미 보유한 자에게 처리 및 정제를 위탁할 수 있다. 석탄의 경우, GR23상의 “처리”에는 ① 석탄 분쇄(crushing), ② 석탄 세척(washing), ③ 석탄 혼합(blending), ④ 석탄 업그레이딩(upgrading), ⑤ 석탄 단광화(團鑛化; briquetting)⁶⁰, ⑥ 석탄 액화(liquefaction), ⑦ 석탄 가스화(gasification), ⑧ 석탄 물 혼합(water mixing) 등을 포함한다.

(15) 광물광업생산 제한규정

석탄·광물자원은 국가개발에 필수적이지만 재생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공급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석탄 및 광물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

60) 석탄가루 또는 알갱이를 굳혀서 덩어리로 만드는 일.

다고 인식하고 있다. 장관, 주지사 및 리젠시 대표는 생산제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며, 위반시 경고·작업중단(suspension)이나 극단적인 경우, 광업허가가 철회(revocation)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6) 광업지원서비스

광업법과 PerMen 28은 광업서비스업(mining service busines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PerMen 28에 따라 IUP 및 IUPK 보유자는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더라도 지상의 석탄 및 광석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PerMen 28은 광업서비스업의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특정 광업서비스업과 비핵심 광업서비스(Non-core Mining Services)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통상, 지역업체(local businesses)의 사용을 보장하고 제휴업체(affiliate companies)의 사용을 제한한다. IUP 및 IUPK 보유자는 PerMen 28에 따라 광업·처리·정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담·계획 및 테스트, 표토제거,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서비스회사(Mining Services Company)에 하청을 줄 수 있다. 광업서비스를 정의하는 상세한 목록은 PerMen 28 별첨(Attachment) I에 기재되어 있다.

① 광업서비스 및 광업서비스회사의 분류

IUP 및 IUPK 보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광업서비스 하위범주 및 허가요건>

광업서비스업	비핵심 광업서비스
PerMen 28상의 포괄 목록	광업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업서비스업’ 이외의 기타 서비스업
허가: 광업서비스업 허가(Mining Services Business Licence; <i>Izin Usaha Jasa Pertambangan</i> (“IUJP”))	허가: 등록 레터(<i>Registration Letter; Surat Keterangan Terdaftar</i> (“SKT”))

광업서비스는 인도네시아인(인도네시아 법인)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현지회사(local company) 및 전국규모 회사(national company)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PerMen 28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현지회사	한 곳의 주 또는 리젠시에 소재하고, 그곳에서만 운영되며, 지분 전체를 인도네시아인이 소유한 회사
전국규모 회사	인도네시아 국적자들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 또는 역외에서 운영되는 인도네시아 법인
기타 회사 (Other Company)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법인

광업서비스회사는 현지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현지의 상품, 하청업체 및 노동력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계열사·자회사의 활용에 대한 제한

IUP·IUPK 보유자는 자회사와 계열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광물·석탄청(DGoMC)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제한사항이 있으며,⁶¹⁾ 자회사 및 계열사는 IUP·IUPK 보유자가 직접적인 소유권을 갖는 법인을 말한다. 즉,

- IUP·IUPK 보유자가 계열사인 광업서비스회사 지분의 최소 25%를 직접 소유할 것
- IUP·IUPK 보유자가 직접적인 주주이면서 금융 및 운영통제에 관한 계약(agreement for financial and operation control)을 근거로 계열사인 광업서비스회사에 대해 50% 이상의 투표권(voting right)을 보유할 것

61) 이는 2010년 5월 10일자 광물·석탄청(DGoMC) 규정 제386.k/30/DJB/2010호에 따른 것이다.

- IUP · IUPK 보유자가 재정 및 운영이사 또는 기타 임직원을 임명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 등.

승인은 해당 리젠시나 주 내에 같은 종류의 다른 광업회사가 없어서 IUP · IUPK 보유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입찰에 붙여야 할 상황이지만, 현지 또는 전국규모의 서비스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③ 광업서비스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 금지

IUP · IUPK 보유자는 광업서비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광업허가(mining licence) 보유자가 모든 광산운영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생산된 석탄 및 광물의 양이나 이에 따른 이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7) 로열티(Royalty)

모든 IUP 및 IUPK 보유자는 정부당국에 생산로열티(production royalties)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광업규모, 생산수준 및 광업상품 가격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판매수익에 대한 비율은 석탄 및 광물채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이는 광업법 하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UPK 보유자는 순이익의 10%를 추가로열티(additional royalty)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이 같은 추가로열티의 40%를 받고, 나머지는 해당 주와 리젠시에서 공유한다. 추가로열티는 이렇게 순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IUPK의 경우, 자본지출 및 광산 운영비용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더 철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상품 선정을 위한 현행 생산로열티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해지며, 작업계약(Contracts of Work; “CoW”) · 석탄작업계약(Coal Contracts of Work; “CCoW”) · 석탄공동운영계약(Coal Co-operation Agreements; “CCA”)에 적용되는 비율은 후술하기로 한다.

상 품		생산로열티 비율
석탄 (Coal)	노천광(Open Pit)	3% ~ 7%
	지하(Underground)	2% ~ 6%
니켈(Nickel)		4% ~ 5%
아연(Zinc)		3%
주석(Tin)		3%
구리(Copper)		4%
철(Iron)		3%
금(Gold)		3.75%
은(Silver)		3.25%
철사(Iron Sand)		3.75%
보크사이트(Bauxite)		3.75%

(18) 양도제한

광업법에 따라 IUP와 IUPK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즉,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the Indonesia Stock Exchange)에서 IUP·IUPK 회사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탐사활동의 특정 단계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고, 양도의 경우에는 관련 정부당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광업업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이외의 지역에서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 매립 및 광산폐쇄 보증

2010년 12월 20일, 정부는 탐사운영 IUP 및 생산운영 IUP 보유자의 매립 및 광업 사후활동에 대한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제78/2010호(“GR78”)를 발표하였다. 이는 2008년 5월 29일자 MoEMR 장관이 발

표한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 제18/2008호를 최신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탐사운영 IUP 보유자는 자신의 탐사작업계획과 예산안에 매립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국영은행에 보증금의 형태로 매립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생산운영 IUP 보유자는 (1) 5년간 매립계획 및 (2) 채굴 사후계획을 마련하고, (3) 국영은행에 보증금이나 공동계정의 형태로 매립보증 또는 은행보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4) 채굴 사후보증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같은 매립 및 채굴 사후보증을 통해 IUP 보유자가 매립 및 광업 사후활동 수행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GR78상의 전환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은 작업계약(CoW) 및 석탄작업계약(CCoW) 보유자들도 동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립 및 광산폐쇄 보증은 장관, 주지사, 리젠트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20) 처벌규정

광업법은 불법채굴자, IUP · IUPK 보유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한 법률침해의 결과도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시 IUP · IUPK의 취소와 징역 등을 포함하여 행정적 ·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1) 분쟁해결

IUP 및 IUPK에 관한 분쟁은 일반 법령에 따라 법원과 국내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3. 전환조항(Transitional Provision)

(1) 광업권(Mining Right; KP)

GR23은 기존의 모든 광업권(KP)은 2010년 4월 30일까지 IUP 라이선스로 전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광업법이 KP의 전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환 자체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여러 KP

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GR23을 통해 IUP 전환 시 광업법 하에서 계속하여 해당 권리를 이어갈 수 있다.

(2) **작업계약(CoW) · 석탄작업계약(CCoW) · 석탄공동운영계약(CCA)**

기존의 모든 작업계약(CoWs) · 석탄작업계약(CCoWs) · 석탄공동운영계약(CCAs)(이하 “계약”)은 그 만료일까지 계속되고, 입찰에 붙일 필요가 없는 한 연장될 수 있다(계약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한 경우). 그러나 연장된 허가는 CoW체제에 따라서가 아니라 IUP 시스템에 따라 부여된다. 물론, 기존의 계약조건이 고려되기는 하겠지만, 광업법은 기존의 계약보유자도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광석의 처리 및 정제를 국내에서 수행하도록 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작업의 일부를 개시한 계약자들은 광업법 시행 1년 이내에 계약 지역 전체에 대한 광업활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IUP에서 정한 허용치까지 계약지역이 축소된다.

또한, 기존의 계약은 국가수익(state revenue)과 관련된 계약조건⁶²⁾을 제외하고는 신법인 광업법의 준수를 위하여 1년 이내에 수정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계약이 신법의 어느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철회의무(divestment obligation), 광산지역의 규모 재조정, 생산감축기간 및 계열사인 광업계약자의 이용금지 등이 수정 · 변경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환조항은 광업법의 통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2개의 조항에서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 국가수익처리(state income treatment)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권이 어떻게 지켜지

62)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조세수익은 물론, 로열티와 같은 비세금 국가수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은 기존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 같은 전환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자들의 추가 투자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약보유자들과 CoW·CCoW·CCA에 대한 변경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작업계약(Contracts of Work)

1. 개관 및 상업조건

(1) 작업계약(Contracts of Work; “CoW”)

광산운영 규제를 위한 작업계약 시스템(CoW system)은 현재 인도네시아 광산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967년 도입된 작업계약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및 해외의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여 지난 40여년간 점진적으로 정비되고 현대화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7번의 세대교체를 겪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광업법은 작업계약을 새로운 허가체계 하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환규정에 의해 기존의 작업계약이 명시된 만료일까지는 유효함을 확인하고 있고, 같은 관점에서 연장은 새로운 IUP 허가체계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운 광업활동은 광업법 상의 IUP 체계 하에서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본 Part에서는 광업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작업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기로 한다.

작업계약은 MoEMR 결정서(Decision Letter) 제1614/2004호에 의해 규제되는데, 본질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법인 간의 포괄적 계약(comprehensive contract)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법인은 100% 외국인이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향후 투자철회의무(divestment

obligation)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업계약은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이 지분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작업계약은 탐사, 생산, 광산폐쇄 등을 포함한 광업운영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계약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작업계약 상 법인은 석유·가스·석탄 및 우라늄을 제외한 작업계약 지역 내의 모든 광업에 대한 단일 계약자가 되며, 작업계약 법인은 탐사, 개발, 생산, 정제, 처리, 저장, 운송 및 판매 등 광업활동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 활동에 대하여 통제·관리권 및 책임을 부담한다. 작업계약은 규정된 기간에 따라 일련의 단계로 개관할 수 있다.

단 계	기간(년)	연장가능기간
일반조사(General Survey)*	1	6개월 ~ 1년
탐 사**	3	1년 ~ 2년
타당성 연구	1	1년
건 설	3	.
생 산	30	20년 또는 정부승인기간

* 일반조사는 작업계약의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

** 제1세대 CoW의 경우, 타당성 검토까지 일반조사의 최대기간은 18개월이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작업계약에는 지출의무(expenditure obligation), 수입·수출시설, 마케팅, 회계의무, 보고의무, 기록·조사 및 작업프로그램, 인도네시아인의 채용 및 훈련, 환경관리 및 보존, 기반시설(인프라)에 관한 지역협력 등과 같은 중요 고려사항이 포함되며, 계약지역의 확정채굴료, 생산로열티, 법인소득세, 직원의 개인소득세, 배당금·이자·임대료·로열티 및 유사지출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수입관세, 건물세 등을 비롯한 모든 세금, 로열티 및 회계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2) 석탄공동운영계약(CCA) 및 석탄작업계약(CCoW)

석탄작업계약(CCoW)은 MoEMR 결정서 제1614/2004호에 의해 규제되며, 1997년 11월 이후, 석탄 광업이 많아지면서 작업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적인 광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석탄공동운영계약(CCA)에는 2개 세대(제1세대 및 제2세대 계약)가 있고, 일반적으로 제3세대 석탄작업계약으로 일컬어지는 석탄작업계약 세대가 있다. 석탄공동운영계약(CCA) 제1세대는 1981년 10월 28일자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제49/1981호에 의해 규제되었고, 1993년 2월 27일, 석탄공동운영계약(CCA) 제2세대 규정인 대통령령 제21/1993호로 대체되었으며, 제3세대 석탄작업계약(CCoW)은 1996년 9월 25일자 대통령령 제75/1996호에 따라 발표되었다.

① 석탄공동운영계약(Coal Co-operation Agreements; “CCA”)

석탄공동운영계약(CCA)과 작업계약(CoW) 시스템 간의 주요한 차이는 석탄공동운영계약(CCA) 하에서는 외국 광업법인이 인도네시아 국영 석탄 광업회사인 PTBA(PT Bukit Asam Tbk)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CCA 상의 PTBA의 권리의무가 정부, 즉 MoEMR로 이양되었다. CCA 하에서는 석탄계약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86.5%에 대한 권리를 갖고, 광업탐사, 개발 및 생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인도네시아 정부(이전에는 PTBA)는 생산량의 나머지 13.5%에 대한 권리만을 확보한다. 그러나 1996년 9월 25일자 대통령령 제75/1996호는 계약자로 하여금 정부의 생산량 지분(13.5%)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금액이 판매비용의 공제 후, 판매액의 13.5%가 되도록 하였다.

제1세대 CCA의 경우, 석탄계약자가 구입한 장비는 인도네시아 정부(이전에는 PTBA)의 소유가 된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자산을 이용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감가상각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제2세대 CCA와 제3세대 및 석탄작업계약(CCoW)의 경우, 계약자가 구매한 장비는 계약자의 소유로 남는다. 또한, 제1세대 CCA는 외국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한 경우, 인도네시아인이나 인도네시아 기업에 지분의 일부를 제공하여 운영 10년 후에는 외국인의 소유지분이 최대 49%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석탄작업계약(Coal Contracts of Work; “CCoW”)

석탄작업계약(CCoW) 하에서 광업회사는 실제 석탄 생산량의 전부(100%)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판매수익의 13.5%를 로열티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석탄공동운영계약(CCA)과 석탄작업계약(CCoW)은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일련의 단계로 개관할 수 있다.

단 계	기간(년)	연장가능기간(년)
일반조사	1	1
탐 사	3	제3세대의 경우 2년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타당성 연구	1	제3세대의 경우 2년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건 설	3	.
생 산	30	.

(3) 작업계약(CoW), 석탄작업계약(CCoW) 및 석탄공동운영계약(CCA)에 따른 회계체계

제2세대 CCA를 제외하고 CoW, CCoW, CCA(이하 “계약”)의 모든 세대는 계약이 체결되는 때와 장소에 적용되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는 종종 각각의 계약에 따라 광업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

용되는 법령이 현재의 규정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른 회사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전 계약세대의 적용을 받는 광업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이전 세대의 계약들은 외국인 지분에 대한 투자철회의무(divestment requirements)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 작업계약(CoW)을 위한 사전 비용

일반적으로 계약회사가 설립되어 실제 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계약회사의 주주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러한 설립前 지출비용은 사전운영비용(pre-operating costs)으로 책정되어 주주에게서 계약회사로 이양되고, 생산이 개시된 때로부터 시작하여 분할상환하게 된다. 이 같은 비용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MoEMR와 국세청(the 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 “DG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탐사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회사는 보증금(미국 달러)을 MoEMR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 조사기간(the General Survey Period)의 완료시(50%)와 탐사단계의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MoEMR 장관에 대하여 일반적 지질지도(general geographical map)를 제출한 경우(50%)에 돌려받을 수 있다. 제7세대 작업계약(CoW) 및 제3세대 석탄작업계약(CCoW)의 경우에는 일반적 조사기간의 완료(25%), 탐사 1년차(25%) 및 탐사단계의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MoEMR 장관에 대하여 일반적 지질지도(general geographical map)를 제출한 경우(50%)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 생산단계 동안, 계약체결 회사들은 상세한 분기별 진행보고서를 MoEMR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은 계약상의 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세부사항도 MoEMR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회사는 환경복원, 인도네시아인 채용 및 훈련, 인도네시아 공급업체에 대한 우선권 및 현지 커뮤니티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체 계약기간에 걸쳐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의 유형에 따른 계약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작업계약(CoW)	석탄공동운영계약(CCA) · 석탄작업계약(CCoW)
일반조사단계	일반조사기간 동안 계약회사는 합의된 계약금을 지출하여야 하며, 기간종결시점에 품목과 지출액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래 계약지역의 최소 25%를 양도(포기)하여야 한다.	일반조사기간 동안 계약회사는 합의된 계약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기간종결시점에 품목과 지출액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제3세대의 경우, 원래 계약지역의 최소 25%를, 제1세대의 경우 40%를 양도(포기)하여야 한다.
탐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사단계에서 계약회사는 탐사활동과 관련하여 매년 합의된 계약금을 지출하여야 하며, 본 단계에 착수할 당시 MoEMR에 연간 프로그램과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탐사단계의 종결시점에 계약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MoEMR에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학적·야금학⁶³⁾적(metallurgical) 조사의 요약 및 확보된 모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사단계에서 계약회사는 탐사활동과 관련하여 매년 합의된 계약금을 지출하여야 하며, 본 단계에 착수할 당시 MoEMR에 연간프로그램과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탐사단계의 종결시점에 계약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MoEMR에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공구(drill holes), 구덩이(pits) 및 샘플분석 사본 - 계약지역의 지구물리학적·지질학적 지도 사본

63) 광석에서 금속을 골라내는 방법이나 기술

	작업계약(CoW)	석탄공동운영계약(CCA) · 석탄작업계약(CC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지역의 포괄적인 지질지도 • 계약회사는 탐사단계의 2년째 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원래 계약지역의 50%를 넘지 않는 한도로 계약지역을 축소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사단계의 2년째 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제3세대 회사는 원래 계약지역의 25%를 넘지 않는 한도로 계약지역을 축소하여야 하며, 제 1·제2세대 계약자들은 원래 계약지역의 20%~ 40%를 넘지 않는 한도로 계약지역을 축소하여야 한다.
타당성연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회사는 타당성연구단계의 종결시점에 환경적 영향 연구를 포함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MoEMR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 또한, 타당성연구 종결시점에 계약회사는 원래 계약지역의 25%를 넘지 않는 한도로 계약지역을 축소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회사는 타당성연구단계의 종결시점에 환경적 영향 연구를 포함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MoEMR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 또한, 타당성연구 종결시점에 CCoW회사는 25,000ha를 넘지 않는 한도로 계약지역을 축소하여야 한다.
건설단계	<p>계약회사는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여야 한다.</p>	<p>계약회사는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여야 한다.</p>
확정채굴료 (Dead Rent)	<p>계약회사는 작업계약(CoW) 기간 동안 확정채굴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작업계약 지역의 ha단위 면적과 작업계약 단계를 기준으로 한 연간 액수이다.</p>	<p>계약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확정채굴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승인지역의 ha단위 면적과 광업단계를 기준으로 한 연간 액수이다.</p>

4. 생 산

계약회사는 생산단계 동안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MoEMR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격주 통계보고서
- 월간 통계보고서
- 운영의 진척도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 연간 보고서
- 기타 여러 부서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계약회사는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지만,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권장받는다. 제휴사에 대한 판매는 제3자 거래가격이어야 하며, 3년을 초과하는 판매계약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계약회사는 자체적으로 광산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대한 하청을 줄 수도 있는데, 아웃소싱 광산운영은 당해 계약에 적용되는 광업법과 PerMen 28상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단일 회사가 단일 계약(CoW, CCA 또는 CCoW 어느 쪽이든)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산업체그룹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인도네시아 법인을 갖고 있다.

5. 기타 재정적 의무

(1) 로열티(Royalty)

로열티는 계약에 명시된 세부사항에 따라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정부에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공제(소득세) 대상이다.

(2) 확정채굴료 및 토지·건물세

계약회사는 계약에 명시된 확정채굴료와 토지·건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확정채굴료는 광산지역의 ha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한 연간 비용이며, 이들 또한 세금공제(소득세) 대상이다.

6. 계약의 해지(Termination)

계약회사는 계약지역에 대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다만, 제1·제2세대 CCoW의 경우에는 특별히 언급된 바가 없다).

- 패쇄안, 관련 서류, 지도, 작업계획, 기타 기술적 자료 및 정보를 첨부한 계약해지의 통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자료와 회사의 의무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MoEMR가 승인할 만한 경우, 장관은 해당 통지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부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의 각 단계에서 일반적인 계약해지의 의미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모든 판매, 철거 및 자산의 처분은 계약에 명시된 세법에 따른다.

- 일반조사기간 및 탐사기간
 - 계약회사는 6개월의 기간 동안 당해 자산을 판매 또는 철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은 정부에 귀속된다.
 - 계약회사는 작업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MoEMR에 제공하여야 한다.
- 타당성연구기간
 - 계약회사는 계약지역에 위한 모든 자산을 시장가(market value)로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같은 청약(제안)은 30일 간 유효하며, 정부가 승낙할 경우 90일 이내에 처리한다.
- 정부가 청약에 대하여 거절한 경우, 계약회사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자신의 자산을 판매 또는 철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해 자산은 보상 없이 정부로 귀속된다.
- 건설기간
 - 대체로 타당성연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나, 다만, 정부가 청약에 대하여 거절한 경우, 계약회사가 자산의 판매 또는 처분에 12개월의 기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 운영기간(Operating Period) 및 계약만료(Expiration of the Contract)
 - 계약회사는 계약지역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을 시장가로 정부에 청약(제안)하여야 한다.
 - 이 같은 청약(제안)은 30일 간 유효하며, 정부가 승낙할 경우 90일 이내에 처리한다.
 - 정부가 청약에 대하여 거절한 경우, 계약회사는 12개월 이내에 자신의 자산을 판매 또는 철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해 자산은 보상 없이 정부로 귀속된다.

계약해시 시, 도로, 학교, 병원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및 관련 장비는 계약회사에 대한 별도의 보상 없이 즉시 정부자산으로 귀속된다.

7. 계약의 이전

(1) 계약상 직접적 이익의 매매(구매 및 판매)

계약은 CoW · CCA · CCoW 회사가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전행위 시에도, 양수인 또는 이전받는 업체가 의무사항

까지 인수하여 이행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회사가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회사 지분의 매매

상기한 바와 같이, 계약상 직접적 이익의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회사 지분의 이전이나 계약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이전을 통하여 계약상 이익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약회사의 주주들은 정부의 서면동의 없이 운영기간(operating period)의 개시 이전에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며, 운영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도 MoEMR 장관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계약조건에 따라 이 같은 동의는 부당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아니되며,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지분양도나 주주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동의요건이 면제된다.

(3) 비법인 합작투자(Unincorporated Joint Ventures)

이렇듯, 계약상 이익의 부분적 이전은 대단히 드문 경우이고, MoEMR와의 협의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하여 합작투자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 또한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계약 및 소득세법도 합작투자에 관한 세금처리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합작투자가 발생된 계약상의 이익이전 문제와 함께 MoEMR장관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IV. 광업투자 시 고려사항

1. 투자법⁶⁴⁾

투자법 제25/2007호(“투자법”)는 사업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 가장 최근의 입법으로서 투자정책의

64) The Investment Law No. 25/2007(투자법 제25/2007호)

시행에 관한 조정권한을 투자조정위원회(the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에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상 유한책임회사(“PT”)는 (1)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우선적 채용, (2)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의 조성,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 및 (4) 환경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재생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투자자들은 환경타당성기준을 충족할 만한 부지회복자금(funds for site restoration)을 마련해 놓아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투자법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활동 및 허가의 제한(restriction), 중지(freezing) 또는 취소(revocation)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중앙정부는 투자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국유화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국유화가 불가피한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로열티, 배당금, 대출상환, 투자 및 관리의 판매, 기술서비스 수수료 등의 형태로 외국통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2. 산림법⁶⁵⁾

상기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산림자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림자원(특히, 산림보호지역)의 이용 역시 중앙정부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광업허가지역이 산림지역(산림보호지역이든, 생산지역이든)과 겹치는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광업활동이 경우에 따라서 산림 관련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99년 산림법은 산림보호지역에 13개의 노천광산(open-pit)을 허용하였는데, 다만, 해당 광업회사가 산림법의 도입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65) The Forestry Law No. 41/1999(산림법 제41/1999호)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제24/2010호 및 2011년 3월 30일자 산림부장관령(Minister of Forestry Regulation) 제P18/Menjut-II/2011호에 따라 비임업활동을 위한 산림지역(Forest Areas)의 이용은 산림부장관으로부터 “임대 및 사용”허가(“borrow-and-use” permit)를 받으면 생산산림지역(Production Forest Areas)과 산림보호지역(Protected Forest Areas)에 모두 허용된다. “산림보호지역”은 광업활동이 노천광이 아니라 지하광산을 통해서만 수행된다는 전제하에 허용되며, “생산산림지역”의 경우에는 지하 및 노천광이 모두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밖에도 여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업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산림보존지역(Conservation Forests)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산림지역에 대한 이용승인은 일반적으로 산림부장관이 발행하는데, 그 영향력이 중대하고, 중요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예비지역(WPN)에서 광산운업을 위한 산림지역 이용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만 산림부장관이 발행할 수 있다.

3. 환경 관련 법령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의 보존과 광산업계의 활동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환경보호는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 규제되며, 위반 시 벌금, 형벌 및 극단적인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최근에 개정된 환경법 제 32/2009호(“환경법”)⁶⁶⁾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전략적 환경 분석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에까지도 지속 가능한 개발원칙이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광업법과 환경법은 모두 사회적·환경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광업회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

66) The Environment Law No. 32/2009.

감시계획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영향계획서(environmental impact planning document;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AMDAL”)의 작성·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AMDAL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경관리노력서(environmental management effort document; Upaya Pengelolaan Lingkungan(“UPL”) & Upaya Pengawasan Lingkungan (“UKL”))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루피아(Rp) 이상 7억 5천 루피아(Rp)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이 적용된다.

4. 에너지법⁶⁷⁾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천연에너지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 에너지 관리계획 작성 시 중앙정부의 개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2007년 에너지법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위원회(the National Energy Council; DEN)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틀을 설계하고, 일반계획을 마련하며, 에너지 위기와 비상조건의 각 단계를 결정하는 등 에너지 부문의 정책구현을 감시하기 위한 정부기관이다.

5. 광산운영과 관련된 기타 규정

인도네시아 광산운영에 적용되는 기타 규정에는 지하수 이용, 공기 오염 통제, 수질 및 수질오염, 폐유 관련 규제 및 생산된 화학물의 저장과 관련된 규정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벌금, 형벌 및 극단적인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67) The Energy Law No. 30/2007(에너지법 제30/2007호)

제 2 절 석유 · 가스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I. 규제체계 개관

1. 석유 · 가스법(법 제22/2001호)⁶⁸⁾

인도네시아에서 석유 · 가스 활동을 규제하는 법은 2001년 11월 23일 자 법 제22/2001호로서(이하 “석유 · 가스법”) 동법 제3조는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① 효과적 ·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탐사 및 개발의 보장, ②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경쟁을 통한 책임감 있는 처리 · 운송 · 저장 및 상업적 활동의 보장, ③ 국내 수요를 위한 에너지 지원으로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석유 및 가스의 공급 보장, ④ 국력의 증진, ⑤ 국가수입의 증대 및 ⑥ 환경보존과 더불어 공공복지와 번영의 강화 등을 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의 석유와 가스는 일반적으로 생산공유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PSC”)을 통해 정부가 관련 영업허가권의 보유자로서 통제하고 있다. 이에 석유 · 가스법은 상류영업활동(Upstream Business Activities; 탐사 및 개발)과 하류영업활동(Downstream Business Activity; 처리 · 운송 · 저장 및 영업)을 구분하여 상류활동은 업체와 집행기관(BP Migas)⁶⁹⁾ 간의 공동협력계약(Joint Cooperation Contract: “JCC”)을 통해 통제하고(주로 PSC), 하류활동은 규제기관(BPH Migas)⁷⁰⁾이 발행하는 영업허가(Business License)로 통제한다.

68) The Oil and Gas Law No. 22/2001

69) 석유 · 가스법 제6조

70) 석유 · 가스법 제7조

BP Migas와 BHP Migas는 상류 및 하류활동을 감독하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① 자원의 보존 및 유지,
- ② 석유 및 가스 관련 자료의 관리,
- ③ 적절한 표준기술의 적용,
- ④ 처리된 상품의 품질,
- ⑤ 작업 안전 및 보안,
- ⑥ 환경관리(오염방지 및 환경피해 복구 등),
- ⑦ 현지 인력·상품·서비스 및 국내 기술의 우대,
- ⑧ 현지 커뮤니티의 개발, ⑨ 석유·가스 기술의 개발과 적용 등

상류 및 하류활동은 국영기업, 지방정부 소유기업, 협동조합, 소규모 기업 및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데, 외국 법인의 지사는 상류활동에만 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지사는 영구적인 설립체(Permanent Establishment; “PE”)이어야 한다. 상류활동 법인은 하류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⁷¹⁾ 다만, 상류업체가 자체적인 개발활동과 통합하여 운송·저장·처리시설 및 기타 하류활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⁷²⁾

2. 기타 관련 법률

(1) 에너지법(법 제30/2007호)⁷³⁾

2007년 8월 10일자 에너지법 제30/2007호는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개선된 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속성·에너지 안보 및 환경보전을 강조하고 있다.⁷⁴⁾ 동법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위원회

71) 석유·가스법 제10조

72) 석유·가스법 제1조

73) The Energy Law No. 30/2007

74) 에너지법 제3조

(the National Energy Council; “DEN”)⁷⁵⁾는 하원에서 승인한 국가에너지 정책(the National Energy Policy)의 구체화와 시행, 국가에너지일반계획의 결정, 에너지 위기 및 긴급 상황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① 국가수요를 충족시킬 에너지 가용 수준, ② 에너지 개발 우선순위, ③ 국가에너지자원의 이용, ④ 국가에너지 완충 자원 등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관리 정책으로서 2025년까지 다음과 같은 최적의 에너지자원 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에너지자원 배합 목표>

에너지 자원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 연료	지열 에너지	액화석탄	기타 신재생 에너지
배합비율 (%)	20	30	33	5	5	2	5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

(2) 투자법(법 제25/2007호)⁷⁶⁾ 및 회사법(법 제40/2007호)⁷⁷⁾

① 영업형태

석유·가스 부문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허용되는 형태는 외국인 회사의 지사를 통한 방식이다(즉, 영구설립체 또는 “PE”). 회사법(법 제40/2007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유한책임회사

75) 국가에너지위원회(DEN)는 에너지장관을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의장직을 맡는다. DEN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에는 장관, 에너지 관련 규정·운송·유통 및 이용을 관할하는 공무원, 이해관계자(학계 2명, 업계 2명, 기술대표 1명, 환경대표 1명, 소비자단체 2명) 등이 포함된다.

76) The Investment Law No. 25/2007

77) The Company Law No. 40/2007

(Limited Liability Company; L.L.P.)⁷⁸⁾의 형태로 對인도네시아 투자가 허용되는데, 석유·가스법 제13조 상의 이른바 “보호막(Ring Fencing) 원칙”으로 인하여 각각의 PE 및 PT에 단일한 PSC만이 발행될 수 있는 경우, 독립된 각 법인은 각자의 작업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석유·가스법의 통과후 페르타미나(Pertamina;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각각의 작업지역의 BP Migas와 PSC를 체결해야 했다.

2007년 4월 26일자 투자법(법 제25/2007호)는 하류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PT에만 적용된다. 동법은 투자자들이 이익금, 은행이자 및 배당금을 외국환으로 송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⁷⁹⁾ 자본투자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에는 생산에 필요한 자본상품, 기계 및 설비의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및 경감, 부가가치세의 면제 또는 연기를 포함한다.⁸⁰⁾

② 법정 의무: 환경 및 기타

2007년 8월 16일자 회사법은 천연자원 분야 및 유관 자원분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사회적·환경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의무의 이행비용은 해당 법인이 부담하고, 법인 지출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⁸¹⁾ 모든 관련법은 이러한 의무의 해태에 따른 제재사항을 다루고 있다.

투자법이 규정하고 있는 PT기업의 의무는 ①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고용우대(제10조), ②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의 조성(제16조),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제15조) 및 ④ 환경보존의무(제16조)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78) 기업체 또는 “PT”

79) 투자법 제6조~제8조.

80) 투자법 제18조.

81) 회사법 제74조.

투자자들은 환경타당성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해당 지역을 복구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제17조). 이러한 의무를 해태할 경우, 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영업활동의 제한이나 중단 및 취소 등과 같은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제34조).

(3) 환경법(법 제32/2009호)⁸²⁾ 및 산림법(법 제41/1999호)⁸³⁾

2009년 10월에 통과된 인도네시아 환경법은 조세적(租稅的) 성격의 환경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환경적 품질요건 기준(standard environmental quality requirements)의 준수 의무와 영업개시 이전에 환경에 대한 허가를 획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⁸⁴⁾ 특히, 환경적 품질요건(가스배출과 폐수 온도 수준에 관한 내용)은 새로운 처리기술(process technologies)의 구현시간 지체와 생산비용의 증대로 인하여 최근 업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산림법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석유·가스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 2월 1일자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은 석유·가스 활동, 발전소, 광업 및 운송,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포함한 특정 프로젝트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림보호지역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3. 이해관계자

(1) 에너지광물자원부(The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oEMR”)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관부서이며, 법령에 따라 영업활동이 영위되도록 하고, 계약을 발주

82) The Environment Law No. 32/2009

83) The Forestry Law No. 41/1999 (and its amendments 1/2004 and 19/2004)

84) 이에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천연가스의 운송 및 유통을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에 대한 책임도 맡고 있다. MoEMR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7개의 하위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석유·가스청(Directorate General of Oil and Gas)은 ① 리프팅 계산공식 및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배분, ② 연료보조금의 점진적 감축정책, ③ 새로운 탐사 및 생산단지의 제공 및 ④ 석유·가스업계에 대한 기타 정책의 마련 등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2) BP Migas

2002년 7월 16일 비영리 국영법인으로 설립된 BP Migas는 시행·집행기관으로서 공동협력계약(JCC)을 통해 정부를 대신하여 상류활동을 통제하고, 석유·가스계약을 관리한다. 또한, 석유·가스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페르타미나가 기존 협력계약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BP Migas로 이전된다.

BP Migas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작업지역 및 공동협력계약(JCC)을 준비하고 제시하는데 있어서 MoEMR에 조언 제공
- 공동협력계약(JCC)의 당사자로 참여
- 작업지역에 대한 최초 개발계획⁸⁵⁾의 평가 및 MoEMR의 승인을 받기 위한 평가서 제출
- 개발계획의 승인(상기사항 제외)
- 작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MoEMR에 공동협력계약(JCC)의 이행에 대한 보고
- 정부의 최대이윤에 기여할 수 있는 석유·가스의 국가 지분 판매자 지명 등

85) “현장개발계획(field development plans)”이라고도 한다.

MoEMR과 BP Migas의 최고책임자는 상류영업활동의 범위와 감독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명문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상류영업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 BP Migas의 최고책임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BPH Migas

2002년 12월 30일에 설립된 BPH Migas는 규제기관으로서 국가소유의 석유·가스회사인 페르타미나의 하류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관장하고 있다.⁸⁶⁾ 충분한 천연가스의 확보와 국내연료 공급 및 가스의 정제, 저장, 운송 및 유통의 안전한 운영, 영업허가(business license)를 통한 석유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하류활동에 대한 BPH Migas의 규제·개발·감독>

BPH Migas의 규제·감독분야	MoEMR의 감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 연료의 유형, 기준 및 품질 ● 석유연료 운송 및 저장시설의 이용 ● 국내수요를 위한 가스 탐사 ● 전략적 석유비축 ● 가스운송 및 유통망에 대한 마스터 플랜 ● 직업적 안전, 건강, 환경 및 커뮤니티 개발 ● 가정용 및 소매 가스판매가를 포함한 가격 체계 ● 지역자원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 연료의 유형, 기준 및 품질 ● 직업적 안전, 건강, 환경 및 커뮤니티 개발 ● 채용 ● 지역자원의 활용 ● 석유·가스 기술 ● 측정도구의 활용

86) 석유·가스법 제46조, 제47조.

또한, BPH Migas는 연료용 석유 유통 및 PT회사들이 운영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운송을 감독해야 할 책임도 맡고 있다.

연료용 석유의 유통 감독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운송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용 석유의 공급 및 유통 ● 원거리 지역에 대한 연료용 석유의 공급 ● 연료용 석유의 보존 할당 ● 시장점유율 및 거래량 ●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구간 및 유통망 개발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관세 및 가격 결정 ● 운송 및 유통시장 점유율 ● 분쟁해결

BPH Migas는 의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DPR”) 및 지방정부

하원 산하 11개 위원회 중 제7위원회(Commission VII)는 에너지, 광물자원, 연구 및 기술, 환경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석유·가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의 관리를 관장하고 있는바 석유·가스 관련 법률 초안, 통제(국가예산 및 규정, 국가 회계 결과 및 법률의 재시행 포함)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조정 업무 등을 포괄한다. 또한, 석유·가스 부문이 국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하여 정부에 제안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허가(local permit) 및 토지권(land rights)의 발행을 통하여 개발안(Plans of Development; “PoD”)⁸⁷⁾의 승인에 관여한다.

(5) PT Pertamina

2003년 6월 18일, PT Pertamina(“페르타미나”)는 독립된 근거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국영 석유·가스기업에서 국영 유한책임회사(limited

87) “현장개발안(field development plans)”이라고도 한다.

liability company)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페르타미나는 여전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국내소비를 위한 연료용 석유의 공급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일정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페르타미나는 향후 일정 시점에 완전한 민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6) PT Perusahaan Gas Negara(“PGN”)

Perusahaan Gas Negara는 원래 Firma L.I. Eindhoven & Co.라는 네덜란드의 가스회사였는데, 1958년 해당 회사가 국영화되면서 Perusahaan Negara Gas가 되었고, 1965년 5월 13일 PT Perusahaan Gas Negara(“PG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03년부터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었다. PGN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천연가스 이용 및 공공소비를 위한 공급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적·국가적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정책에 따라 수송관(transmission lines)을 건설할 예정이다.

(7) 산업협회(Industry Associations)

인도네시아 석유협회(the Indonesian Petroleum Association; “IPA”)는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해외의 관심증대에 대응하여 1971년 설립되었다. IPA는 인도네시아 석유산업에 있어서 탐사, 생산, 정제 및 시장성을 촉진·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의 정보(public information)를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가스협회(the Indonesian Gas Association; “IGA”)는 페르타미나와 주요 가스 생산업자의 후원으로 1980년에 설립되었다. IGA의 주요 목적은 천연가스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가스기술 분야의 지식과 연구개발(R&D)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場)을 제공하며, 가스 산업에 관한 생산, 운송, 소비 및 규제 부문 간의 협력과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IPA 및 IGA 산하의 탄층메탄위원회(the Coal Bed Methane Committee)는 탄층메탄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 인도네시아 지열협회(the Indonesian Geothermal Association; “INAGA”)는 인도네시아 내 지열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로서 현재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약 400여명의 회원이 있다.

II. 상류부문(Upstream Sector)

1. 상류규정(Upstream Regulations)⁸⁸⁾

(1) 작업지역(Work Areas)

상류영업활동(즉, 탐사 및 개발)은 “작업지역(work areas)”으로 불리우는 지역에서 시행되는데, 이는 BP Migas와 해당 지방정부의 논의를 거쳐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지고, 추후 공동협력계약(JCC)에서 세분화 된다. 작업지역은 입찰(tender)⁸⁹⁾ 또는 직접적인 청약(offer)을 통해 제공받으며, 모든 업체 및 PE(“계약자”)는 소위 “보호막(Ring Fencing)”원칙에 따라 하나의 작업지역만을 받을 수 있고, 공동협력계약(JCC)에 따라 약정사항이 충족(완료)되면 단계별로 또는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 일단, 작업지역이 반환되면, 개방지역(open areas)이 된다.

(2) 계약발주: 새로운 토지에 대한 직접 청약 또는 입찰

① 새로운 토지에 대한 직접 청약

MoEMR은 직접 청약을 통해 토지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석유·가스청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평가를 수행한 기업은 입찰에서 최

88) 석유·가스법 제11조~제22조, 동법 시행규칙 GR 제35/2004호 및 GR 제34/2005호. 즉, 석유·가스에 관한 상류부문활동은 석유·가스법(법 제22/2001호) 및 동법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인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s: “GR”) 제35/2004호와 그 수정안 GR 제34/2005호에 따라 규제된다.

89) 입찰자의 작업프로그램, 기술 및 자금력, 위험성 및 효율성의 수준 등을 고려한다.

고가 입찰자와 같은 권한을 받게 된다. 페르타미나는 MoEMR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접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이 개방지역일 때, (2) 계약자가 자신의 PSC 참여이익을 비제휴사에 이전할 때, 또는 (3) PSC지역이 만료되거나 취하될 때(그래서 결국 개방지역으로 복귀했을 때) 등.

② 새로운 토지 입찰

새로운 토지의 대부분은 입찰과정을 통해 공급되는데, 입찰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MoEMR의 석유·가스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찰정보를 얻어 입찰참가자로 등록
- (2)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기술평가와 제안된 탐사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 구입
- (3) 입찰일 수일 전에 설명회 참석
- (4) 입찰마감일까지 작성된 2부의 입찰서류 제출.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입찰서류 체크리스트(checklist)>

	서류명	주요내용
1	신청서	작성완료된 신청서
2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	제안된 탐사작업에 대한 6년간의 프로그램 및 예산
3	기술보고서 및 몽타주	탐사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지질학적·기술적 정당성
4	회계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인증한 최근 3년간의 연간 재무제표 또는

	서류명	주요 내용
		참가자가 최초 3년간의 작업프로그램상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타 증명서 ⁹⁰⁾
5	상여금 관련 진술서	참가자의 상여금 지불능력 확인서
6	모든 컨소시엄 계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합의서 및 컨소시엄 운영자에 대한 확인
7	PSC 초안	PSC 합의초안
8	PSC 초안에 대한 합의서	낙찰자가 서명하게 될 PSC 합의초안의 조건에 대한 합의서
9	지불영수증 원본	입찰정보서류 구입 영수증 원본
10	정보구입비 사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정보를 구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1	공증증서 및 설립정관	참가자의 정관 공증 사본
12	준법서약서	입찰의 결과를 따른다는 참가자의 진술서

(5) 입찰서류의 평가와 등급은 새로운 토지에 대한 MoEMR의 석유·가스 기술입찰팀이 맡는다. 입찰은 각 입찰자가 제시한 인도네시아의 국가이익 증진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행정절차의 준수, 재무·기술능력, 과거 수행실적 등이 고려된다.

(6) 낙찰자는 입찰팀의 추천을 받아 석유·가스청이 결정한다.

(3) 일반조사와 석유·가스 정보

작업지역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는 MoEMR의 승인을 받아 자체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일반조사(지질학적·지구물리학

90)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로 후자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적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조사 및 탐사·개발에 관한 정보는 국가의 자산이 되며, 인도네시아 국내외적으로 자료를 이용, 전달, 인도 및 이전하는 경우에는 MoEM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탐사 및 개발활동의 결과에 관한 정보는 그 수집, 처리 및 해석이 완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BP Migas를 통하여 MoEMR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지역이 정부로 반환되기 이전에는 그 작업지역에 대한 석유·가스정보는 4년(기본정보)~8년(해석정보) 간 기밀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단, 작업지역이 반환되면, 그 정보는 더 이상 기밀로 분류되지 않는다.

(4) 공동협력계약(JCC)

상류활동은 공동협력계약을 통해 수행되는데, 이는 석유·가스법에 따라 생산공유계약(PSC)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협력계약(예컨대, 서비스 계약, 공동운영계약(Joint Operation Agreement) 또는 기술보조계약(Technical Assistance Contract))으로 정의되며, 기업체(business entity) 또는 영구설립체(“PE”)가 BP Migas(집행기관)와 함께 서명한 탐사 및 개발 활동을 그 영역으로 한다.

석유·가스법 제6조는 공동협력계약(JCC)과 관련하여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은 운송의 도착지까지는 정부가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BP Migas의 궁극적인 운영관리통제 하에 모든 자본과 위험(risk)을 계약자(Contractor)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수익(State Revenue)” 조건, ② 작업지역 및 반환, ③ 작업프로그램, ④ 지출의무, ⑤ 석유·가스 관련 생산품의 소유권 이전, ⑥ 계약연장기간 및 조건, ⑦ 분쟁해결, ⑧ 국내공급의 무⁹¹⁾(생산량의 최대 25%는 국내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사용), ⑨ 사후 광산운영에 관한 의무, ⑩ 작업 안정성 및 보안, ⑪ 환경관리, ⑫ 보고

91) Domestic Supply Obligations

의무, ⑬ 현장개발계획, ⑭ 현지 커뮤니티 개발, ⑮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우선 사용 등.

석유·가스법의 통과 이후, 대부분의 새로운 계약은 생산공유계약(PSC)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5) 활동·지출 및 상여금 의무

계약자는 공동협력계약(JCC)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개시하여야 하며, 탐사기간 최초 3년간은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운영상 모든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탐사가 실패한 경우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자금은 보통 미국 달러(the U.S. dollar)로 준비되며, BP Migas가 지출한 비용은 계약자로부터 반환받는다.

초기 6년 및 4년 연장기간 동안의 연간 탐사지출의무는 생산공유계약(PSC)에 명시되는데, 전반적인 연간 지출의무가 PSC에 규정되면, 세부사항은 연간 작업프로그램 및 관련 예산의 형태로 BP Miga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자로 하여금 최초 3년의 계약기간 동안에 대한 계약이행채권(performance bond)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지만, 미달하여 지출한 금액은 BP Migas의 동의를 요한다. PSC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JCC가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이행채권과 관련하여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여전히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은 보통 BP Migas에 대한 특정 상여(bonus)지급의무 포함하고 있는데,⁹²⁾ 이 같은 상여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서명보너스(Signature Bonus)⁹³⁾와 생산량이 계약상의 하루 특정 배럴(barrel)

92) 정부는 점차 체결보너스에 대한 채권(bond)을 입찰의 일부로서 요구하고 있다.

93) 통상 100만 달러~150만 달러 수준이다.

을 초과한 경우 지급되는 생산보너스(Production Bonus)가 있다. 지급되는 보너스의 금액과 PSC에 명시되는 의무지출비용은 통상 계약자와 BP Migas 간의 협상을 통한 합의로써 공식 서명 이전에 결정한다.

(6) 계약기간

공동협력계약(JCC)은 승인일로부터 최대 30년간 유효하며, 서명 후 6개월 내에 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이후, 계약자는 MoEMR에 대하여 추가로 최대 20년의 계약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⁹⁴⁾ 연장신청은 JCC만료 10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천연가스 판매 및 구매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기의 기한 이전에도 계약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0년의 기간은 탐사 및 개발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탐사기간은 원칙적으로 6년간이고, 추가로 최대 4년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다.⁹⁵⁾ 탐사기간 동안 상업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JCC는 해지되며, 계약자는 작업지역을 MoEMR에 반환하여야 한다.

(7) 공동협력계약(JCC)의 변경(수정·보완)

계약자는 BP Migas를 통하여 공동협력계약의 조건에 대한 정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 장관은 BP Migas의 의견과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8) 참가이익(Participating Interests)의 이전

계약자는 MoEMR와 BP Migas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참가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비제휴사로 이전하는 경우, MoEMR는 국영기업에 이를 먼저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탐사기간 최초 3년간은 참가이익의 대부분을 비제휴사에 이전할 수 없다.

94) 석유·가스법 제14조.

95) 석유·가스법 제15조.

계약자는 상업성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참가이익의 10%를 지방기업(regionally owned business entity)에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기업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낙하여야 한다. 제안이 거절된 경우, 계약자는 해당 이익을 전국규모의 회사(national company)에 제시하여야 하는데, 국영기업이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낙부(諾否)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제안은 종결된 것으로 확정된다.

(9) 직업적 건강 및 안전, 환경관리 및 커뮤니티 개발

계약자는 직업상의 건강 및 안전, 환경관리, 지역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 “CD”)과 관련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2008년을 전후로 시행된 PSC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에게 CD프로그램에 관한 이행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자의 CD 기여는 물리적 시설 및 인프라와 같은 물질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현지 기업과 현지 인력으로의 권한분산 방식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CD활동은 지방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작업지역 가까이에 위치한 커뮤니티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 등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CD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2008년 이전에 시행된 PSC의 경우, CD 관련 지출은 통상 회수가 가능한 비용이었으나,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령(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Regulation) 제22/2008호에 따라 탐사단계에서의 CD지출은 회수불가비용에 포함되었다.

(10) 저장소 확장 및 통합

다른 계약자의 작업지역(work area), 개방지역(open area) 또는 타국가의 영역(territory) 및 대륙붕(continental shelf)으로 저장소를 확장할 경우에는 MoEMR와 BP Migas에 보고하여야 한다. 저장소가 타 계약자의 작업지역까지 확장되는 경우, 통합조정(unitization arrangement)이 공식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장소가 개방지역으로 확장되는 경우, 해당 개방지역이 추후 작업지역으로 될 경우를 대비하여 통합에 대한 공식화가 필요하다. 모든 통합은 MoEM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비영리 하류활동(Downstream Activity)의 허용

현장 처리 · 운송 · 저장 및 계약자의 상품판매 활동은 상류영업활동(upstream business activity)으로 분류되며, 이는 이윤추구 활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용공유비율(proportional cost sharing)에 기초하여 제3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여력이 있고, 비영리 활동인 경우에 한하여 BP Migas의 승인을 얻어 허용된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는 전형적인 하류활동을 징표하는 것으로 하류활동의 허가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12) 국내수요 충족을 위한 생산분

계약자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 GR 제35/2004호에 따르면, 계약자의 국내수요 충족 부담지분은 계약자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지분의 최대 25%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최대 비율은 국내시장공급의무(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 비율에 따라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13) 국가수익(석유 · 가스법 제31조~32조)

계약자는 세금(tax) 및 비과세 수익(non-tax revenue)의 형태로 국가수익(State revenue)을 지급하여야 한다.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세 및 관세, 지방세 및 기타 추가부담금이 해당하며, 일부 PSC 수입세 및 관세, 지방세 및 기타 추가부담금은 정부가 책정한다. 비과세 국가수익(non-tax State revenue)은 고정비용에 대한 국가 지분, 탐사 및

개발비용,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적용할 세법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세당시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JCC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자는 상업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BP Migas가 승인한 작업계획 및 예산, 자금지출승인에 따라 시행된 탐사 및 개발 작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면제받게 된다.

(14) 토지소유권(석유·가스법 제33조~37조 및 GR 제35/2004호 제VII장)

작업지역에 대한 권리는 지표권(land surface rights)을 포함하지는 않는 사용권(right to use)에 불과하지만, 토지권의 확보는 일반법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합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⁹⁶⁾ 토지가격은 일반적인 시장가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권자는 계약자가 상류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⁹⁷⁾ 일부지역에서는 이해관계자(예컨대, 정부 당국 및 커뮤니티 등)의 동의가 없으면 상류 및 하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 같은 제한지역에는 묘지,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장소, 자연보호지역, 군사지역과 관련 건물, 유적지, 주거지역 및 공장지역 등이 포함된다. 동의과정에서 재협상도 가능한데, 2004년 정부령 GR 제35/2004호 제VII장은 협상절차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송유관 및 가스관의 경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계약자는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다른 계약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경로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경로권을 확보하고 있는 타계약자나 제3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고,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MoEMR 및 BP Migas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

96) 석유·가스법 제34조.

97) 석유·가스법 제35조.

(15) 국내 상품·서비스·기술·공학 및 디자인 역량의 이용

계약자들이 구매하는 모든 상품 및 장비(설비)는 정부의 자산이 되며, 모든 수입품은 MoEMR,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MOF”) 및 기타 다른 부처들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품질과 등급, 효율성, 운송시간 보장 및 판매 후 서비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품 및 장비의 관리는 BP Migas가 관할하는데, 상품 및 장비가 과잉공급 되었을 경우 비용회수 이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다른 계약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과잉공급된 상품 및 장비를 다른 계약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BP Migas는 이를 MOF에 이전하여야 한다. 이 같은 상품 및 장비를 기부, 판매, 교환 및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BP Migas와 MoEMR의 추천을 받아 MOF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류활동에 사용된 모든 상품 및 장비는 공동협력계약(JCC)이 종료될 때 이를 정부에 이전하여야 한다.

(16) 관할권 및 보고의무

공동협력계약(JCC)에는 인도네시아법이 적용되며, 계약자는 MoEMR와 BP Migas에 석유 및 가스의 발견과 매장량에 대한 인증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직업적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석유회수증진기술(enhanced oil recovery technology)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바람직한 산업기술의 관행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분쟁해결: 중재

BP Migas와 계약자 간에 계약사항의 이행과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생산공유계약(PSC)

(1) 개관 및 상업조건

생산공유계약(PSC)은 인도네시아 상류부문에 이용되는 공동협력계약(JCC)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정부와 계약자는 PSC상의 합의비율을 기초로 수익으로 책정된 생산량의 배분에 합의한다. 계약자의 운영비용(operating costs)은 PSC에서 규정한 공식에 따라 생산량에서 회수하며, 계약자는 자신의 석유·가스지분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① PSC의 변천

PSC는 5세대로 진화해 왔는데, 각 세대의 주요 차이점은 생산지분의 배분에 있다. 1976년 이후의 제2·제3세대 PSC는 수익의 40%라는 예전의 비용회수상한을 없애고, BP Migas와 계약자가 각각 세후(after tax) 석유지분을 85:15로 확정했다. 1980년대 후반의 제3세대 모델은 최초지분석유(First Tranche Petroleum: “FTP”)을 도입했고, 국경지역·한계지역 및 심해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1995년에는 원거리 및 국경지역(동부지방)의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가 해당 지역 계약자에게 세후 석유지분 배분을 65:35로 제시하였다(제4세대). 제5세대 PSC는 2008년 이후 도입되었는데, 세후 지분의 배분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한 반면, 비용회수 이용품목을 한정하였고,⁹⁸⁾ 투자크레딧(investment credit)과 같은 기타 분야의 규정을 강화하였다.⁹⁹⁾

요컨대, 후기 PSC세대와 이전 세대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고정된 생산이력에 따른 세후 지분보다는 생산지분비율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생겼다.
- 현재의 PSC는 천연가스용 국내시장공급의무(DMO)를 규정한다.

98) GR 제22/2008호에 공표된 “Negative List” 참조.

99) 회수가능 비용 품목과 Negative List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 BP Migas는 석유생산의 10%에 대한 FTP권한을 갖고, 이는 계약자와 공유되지 않는다.
- 계약상에 나타난 이윤공유비율(profit sharing percentage)은 계약자가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6(4)조에 따른 세후 이윤에 대하여 배당세액(dividend tax)을 따르는 것을 가정해 결정되며, 다른 세금 관련 조약에 의하여 축소되지 않는다.
- 특정한 계약체결 전 비용(예컨대, 지진정보 구매비용 등)은 회수가 능비용으로 책정될 수 있다.
- PSC 참가이익을 비제휴사에 이전하는 것은 ① 계약자가 과반 이상의 이익 및 운영권을 유지하고, BP Migas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PSC 체결 후 3년이 경과하고, BP Migas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상업조건(Commercial Terms)

PSC의 일반적 개념은 계약자가 상업적 생산이 실시되기까지의 탐사 비용 및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만약,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같은 비용은 회수할 수 없으며,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자는 생산량에 대한 지분을 받아 비용회수와 투자크레딧 및 세후 지분이익(equity interest)에 충당한다.

PSC상의 계약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계약자는 생산비용, 분할상환 탐사비용 및 자본지출 등을 포함하여 모든 허용 가능한 현재 비용을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 탐사비용의 회수는 계약된 작업지역의 생산에 한정된다. 해당 작업지역은 개발계획(Plan of Development; “POD”) 승인을 받은 곳으로 최초의 작업현장은 물론, 추후 후속현장에 대한 비용회수를 보장한다(이전 세대의 PSC에는 POD 및 현장에 대한 링펜스(“ring fence”)가 없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상여, 교육상여 및 원유생산상여와 같은 일정 범위의 상여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생산상여는 누적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 같은 상여는 회수가능비용은 아니지만,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산정시 세금공제의 대상이 된다.
- 계약자는 일정 기간 동안(over a certain number of years) 최소 탐사지출액으로 작업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에 동의한다.
- 계약자가 구매한 모든 장비, 기계, 재고, 재료 및 공급품은 일단 인도네시아에 도착된 것이면 BP Migas의 자산이 되며, 계약자는 운영기간 동안 관리 및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탐사·개발 및 지질학적·지구물리학적 자료(정보)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자료는 MoEMR의 자산으로 남는다.
- 각 계약자는 생산분을 공유하며,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탐사의 모든 위험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원래, 각 계약자는 FTP 15%(동부현장과 서부 인도네시아 일부) 또는 기타 현장 20%의 권한을 가졌고, 이는 비용회수와 투자크레딧 고려 이전에 산정되었는데, 최근 PSC는 FTP지분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전체 FTP가 정부에 누적된다.
- 계약자는 국내시장공급의무(DMO)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유생산지분의 일부를 공급하여야 한다. DMO의 양과 가격은 합의서에 명시되며, 특히, 새로운 PSC는 가스 DMO를 의무화하고 있다.
- 생산이 상업화된 이후, 계약자는 원유생산시설의 개발에 투입된 비용의 17%~55%까지 투자크레딧을 회복할 권한을 갖는다.
- 계약자는 PSC에 명시된 스케줄에 따라 계약지역의 일부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비용회수원칙(Cost Recovery Principles)

다음 사항에 대한 허가를 기본적인 비용회수원칙으로 한다.

- 현재 연도의 자본(현재 연도 감가상각비용 포함) 및 비자본 비용
- 이전 연도의 미회수 자본 및 비자본 비용
- 재고비용
- 운영에 부수하는 본사의 제비용
- 보험할증금 및 보험금청구 영수증

기타 관련 원칙은 PSC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기간 BP Migas(이전 페르타미나) 규정 및 인도네시아 국세청(the Indonesian Tax Office; “ITO”) 규정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석유의 경우, PSC 계약자들은 비용회수 및 투자크레딧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세후 15%의 지분을 얻는다(국경지역, 가스 및 신규계약의 경우 비율은 더 높음). 그러나 DMO는 이러한 석유·가스에 대한 지분과는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PSC에 지분이 있는 외국석유회사는 통상 지분석유의 15% 이하를 회수해 가는데, 이는 PSC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비용회수와 세금공제가 안되고, DMO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FTP 조정을 통해 계약자가 충분히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생산에 대해 공유할 수 있다.

1995년부터 PSC는 부지회복을 계약자의 책임이며, 작업완료 시 부지를 깨끗이 치우고 회복시키는 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지회복을 위하여 책정된 자금은 회수 가능한 비용이며,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BP Migas로 이전된다.

④ 회계기준

PSC는 계약자가 신청한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개관하고 있다. 계약조항에 따라 운영비용·비자본비용 및 자본비용은 관련 회계 방

식에 의하여 정의되며, 이는 일반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과는 다르다. 인도네시아 GAAP는 석유·가스에 적용될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두고 있으나,¹⁰⁰⁾ 대부분의 회사는 이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보다는 모회사의 본사에서 조정한 PSC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⑤ 포기(Relinquishment)

계약자는 PSC의 규정에 따라 탐사기간 중에도 작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세부사항은 계약에서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BP Migas와 상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은 타인이 석유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이어야 한다.

(2) 석유지분(Equity Share-Oil)

① 생산공유(Sharing of Production): 석유

국내공급의무(Domestic Supply Obligation)의 이행으로 조정된 세금을 고려하기 이전에 FTP에서 받은 양을 초과하는 원유생산, 비용회수 및 투자크레딧은 정부와 계약자에게 할당된다. 정부와 계약자 간에 공유되는 생산물은 ① 코스트 오일(Cost Oil), ② 투자크레딧(Investment Credit) 과 ③ 지분석유(Equity Oil)이다.

② 코스트 오일(Cost Oil)

계약자는 특정한 생산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바, 회수가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 현장 또는 개발계획(POD) 승인을 받은 현장의 현재 연도 운영비, 탐사 및 개발 유정에 대한 시추비용 및 인도네시아 내의 재고

100) 이것이 이른바 “PSAK 제29호”인데, 이는 미국재무회계기준(the U.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SFAS”) 19(석유 및 가스생산 회사용 재무회계 및 보고)와 유사하다.

비용 등. 계약자는 현재 연도 비용의 2%를 상한으로 하여 본사간접비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는 비용 산정 방법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분기별 보고서에 공개되며, BP Migas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자본비용의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을 이용하기 시작한 연도 초에 산정되는데, 후기 PSC세대인 경우, 초년도에는 월 단위의 감가상각만이 허용된다. 감가상각 산정방법은 PSC의 규정에 따라 하향균형방식(declining balance method) 또는 2중 하향균형방식(double declining balance method) 중 하나로 결정되며, PSC에 언급된 감가상각 요소가 곱해진 개별자산을 기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감가상각요소는 특정 자산이 유용성을 가지는 수명에 따라 결정되는데, 트럭 및 건설장비의 경우 50%, 생산시설(production facilities) 및 시추·생산 장비의 경우는 25%이다. 자본 물품에 대한 권리는 해당 물품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순간 정부에 귀속되지만, 계약자가 감가상각을 요구할 수는 있다.
- 회수하지 못한 전년도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비용을 회수할 만큼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그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

2008년 6월,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령 제22/2008호는 비용회수 불가품목을 17개로 세분화 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품목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취급된다.

1. 직원 개인비용(예: 개인소득세, 개인소유의 차량이나 주택 매도시 손실액 등)
2. 직원 인센티브(예: 장기근속 인센티브계획(the Long-Term Incentive Plan; “LTIP”) 등)
3. 국외거주자 인력이용계획(the Expatriate Manpower Utilization Plan; “RPTKA”)을 준수하지 않거나 BP Migas로부터 작업허가(work permit; “IKTA”)를 득하지 않은 국외거주자의 채용 비용

4. PSC의 운영과 관계없는 법률상담 비용
5. 세무상담 비용
6. 고의적인 실수로 인한 마케팅 비용
7. 홍보비용
8. 개발단계 동안의 환경 및 커뮤니티 개발 비용
9. 부지양도와 복구작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타 관리 비용
10. 국외거주자의 기술교육훈련 비용
11. 인수·합병 비용
12. 석유운영작업 관련 대출이자 비용
13. 제3자의 소득세
14. 적절한 소명 없이 재정지출승인(Authorization Financial Expenditure; “AFE”)의 10% 이상을 초과한 비용
15. 잘못된 계획으로 인한 과잉 재료구입비
16. 시설을 부주의하게 운영하여 발생한 비용
17. 국가(인도네시아)에 손해를 야기한 제휴사와의 거래(예컨대, 단독입찰, 반독점 관행, 불공정거래 또는 조세법령의 위반 등)

③ 투자크레딧(Investment Credits)

BP Migas와의 협상을 통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한 직접개발 및 생산자본 비용에 대해서는 투자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개발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윤의 발생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여 크레딧은 개발, 운송, 생산시설 자본비용의 17%~55% 범위로 이용할 수 있다. 제2세대 PSC는 1976년 이후 상업화된 현장의 2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크레딧은 생산 초기 1년간의 석유 및 가스에서 얻어야 하지만, FTP제한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④ 한계유전 인센티브(Marginal Fields Investments)

MoEMR는 2005년 5월 28일 한계유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령 제008/2005호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계약자들이 추가적으로 20%의 비용을 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센티브는 투자크레딧과 유사하다(즉, 회수가능비용이지만 과세대상이다). 동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 유전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생산작업지역 내에 위치할 것.
- PSC 및 기타 일반 인센티브 관련 법령상의 조건에 따라 상정된 회수비율이 15% 이하일 것.

인센티브의 신청은 BP Migas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석유·가스청장에게 송부하는데, BP Migas는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연말 30일 이내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한계유전 반환비율과 실제 실현상황에 대하여 BP Migas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는 취소된다. 그러나 해당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도 유사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환비율이 15%~30% 사이일 경우, BP Migas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으며, 인센티브가 월별로 산정될지 또는 연 단위로 산정될 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

⑤ 관리 및 본사 간접비

계약자는 작업지역 내에서 석유 및 가스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그 같은 활동에 대해 BP Migas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제로, BP Migas는 계약자의 연간 작업프로그램과 예산 및 인력계획에 대한 승인을 통하여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BP Migas가 승인한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본사 간접비와 관련된 일부 일반 행정비용(직접 비용 제외)은 PSC 운영에 할당될 수 있다. 이 같은 간접비 할당방법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BP Migas의 정기감사 및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일부 PSC는 PSC 총 운영비용의 2% 이내로 간접비에 대한 상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⑥ 석유지분(Equity Share-Oil)

투자크레딧과 비용회수 이후 남은 석유는 BP Migas와 계약자 간에 나누게 되는데, 제2·제3세대 PSC는 BP Migas와 계약자가 각각 85:15로 세후 분배(국경지역은 65:35)한다.

<PSC 세대별 석유지분>

(%)

	제5세대 PSC (새로운 계약)	1995년 동부지역 PSC	제4세대 PSC (1995년)	제3세대 PSC (1985~1994)	舊 PSC
세율	44	44	44	48	56
정부	변동(협약가능)	65	85	85	85
계약자	변동(협약가능)	35	15	15	15
세전생산의 계약자 지분	44.64~62.50

⑦ 최초지분석유(First Tranche Petroleum; “FTP”)

2002년 이전의 계약에 따르면, 계약자와 정부는 모두 FTP에 대한 권한이 있고, 매년 똑같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석유를 받았다. 이는 운영비용의 회수(recovery) 공제 및 생산처리 이전의 비율이며, 차 후에 계약에 명시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반면, 비교적 최근의 PSC 상에서 정부는 계약자단체와 공유하지 않고, 비록 10%

이하이기는 하지만 전체 FTP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후기 PSC세대의 경우에만 생산의 20% 또는 15%의 FTP가 지분석유(equity oil)의 일부로 간주된다.¹⁰¹⁾ 따라서 현재 비용회수 및 투자크레딧은 생산의 최대 80%~85%로 한정된다.

⑧ 국내시장공급의무(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

계약자는 PSC 조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인도네시아 국내시장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매년 부담해야 할 DMO는 다음 중의 더 적은 비율로 산정된다.

- 계약자의 표준 세전(pre-tax) 지분의 25% 또는 계약지역에서 생산되는 총 원유량에 대한 참여이익 지분의 25%
- 계약자의 계약지역 생산원유 표준 지분을 총공급 원유량으로 곱하고, 이를 PSC지역의 모든 석유회사가 전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원유량으로 나눈 값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생산량에 대한 자기의 지분비율에서 계약지역 총 석유생산의 최대 25%를 인도네시아 국내시장에 공급하여야 하며, 석유 DMO는 FTP만의 지분석유로 충당된다. 따라서 석유 DMO가 계약자의 지분석유 전체를 잠식할 수도 있으나, 석유 DMO를 충당할 만큼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족분이 이월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계약지역에서 상업적 생산이 개시된 이후 최초 5년 동안은 석유국내공급의무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BP Migas로부터 보전받는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해당 가격의 10%로 감소된다. 가스생산과 관련해서는 DMO가 없었으나, GR 제35/2004호¹⁰²⁾와 최근의 PSC가 가스생산에 따른 DMO도 새로이 도입하였다.

101) FTP가 지분석유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02) 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인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제35/2008호

(3) 가스지분(Equity Share-Gas)

① 생산공유(Sharing of Production): 가스

가스에 대한 생산공유 규정은 지분의 분배와 DMO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석유의 경우와 유사하다. PSC를 통하여 석유와 가스를 모두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비율 또는 BP Migas가 승인한 다른 할당수단에 따라서 각각 할당된다. 회수되지 않은 각 카테고리의 비용은 그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당해 연도의 다른 카테고리 상품으로 대체된다.

석유와 가스 생산 간의 주요 차이점은 지분의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 석유의 경우 대부분의 PSC는 세후 분배 85:15를 기준으로 하나, 가스의 경우에는 통상 세후 분배를 정부와 계약자 간 각각 70:30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舊 PSC의 경우 세후 분배를 65:35로 하는 경우도 있고, 1995년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이후 동부지방 가스계약자들은 세후 분배 60:40을 이용하고 있다.

<PSC 세대별 가스 지분>

(%)

	제5세대 PSC (새로운 계약)	1995년 동부지역 PSC	제4세대 PSC (1995년)	제3세대 PSC (1985~1994)	舊 PSC
세울	44	44	44	48	56
정부	변동(협약가능)	60	70	70	70
계약자	변동(협약가능)	40	30	30	30
세전생산의 계약자 지분	생산지분에 따라 다름 (대부분 71.43)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용이 완전히 회수되지 않은 경우, 초과비용은 계약지역의 원유생산에서 회수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과잉원유비용(원유비용 대비 원유수익이 낮은 경우)이 발생하면, 그 초과비용은 천연가스 생산에서 회수하게 된다.

② 통합 LNG 공급 프로젝트(Integrated LNG Supply Projects)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수마트라 북부에 위치한 아룬(Arun)과 칼리만탄 북동부에 위치한 봉탕(Bongtang), 그리고 2009년 6월에 첫 운송이 이루어진 파푸아의 탕구(Tangguh) 등 3곳의 대규모 LNG시설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통합 LNG 판매자-구매자 공급체인구조를 이용해 왔다. 아룬과 봉탕에는 모두 현지법인으로서 가스를 LNG로 처리하기 위해 생산자와 구매자가 설립한 비영리 특수목적 O&M(Operating & Maintenance) 회사들이 있다. 초기 판매계약은 생산자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고정 장기공급계약에 대한 조건과 최소가격을 중심으로 체결되었으며,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조건¹⁰³⁾도 포함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운송조건이 변경되어 구매자 및 타인이 FOB(Free on Board)조건¹⁰⁴⁾에 따른 장기운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LNG 프로젝트는 정부의 묵시적인 보증으로 자금이 지원되면서 낮은 비용으로 수행이 가능했던 효과적인 프로젝트였으며, 신탁관리자 대리결제 조건(Trustee Paying Agent Arrangement)은 채무 및 O&M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설되었다. 이러한 처리비용과 재무비

103) CIF조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서 수출업자(판매자, 매도인)가 수입지의 공항이나 부두까지의 운송, 운임 및 비용책임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조건

104) FOB조건: “본선(또는 본인)인도조건”으로서 수출업자가 수출지 공항이나 부두까지만(즉, 선적 前까지의 비용) 운송과 비용책임을 진다는 조건. 즉, FOB조건은 화물수송에 필요한 선박수배와 해상운임 및 보험료 등을 수입업자(구매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CIF조건은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위험과 보험료까지 수출해주(판매자)가 부담한다.

용은 처음에는 순이익과 LNG 이익금에서 충당하고, 차후에 PSC 산정으로 해결한다. 탕구의 LNG시설은 아룬 및 봉탕과 유사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생산자들을 대신해 BP Indonesia가 운영하고 있다.

③ 비통합 LNG 공급 프로젝트(Non-integrated LNG Supply Projects)

비통합 LNG 프로젝트는 가스추출 및 LNG 생산자산의 법률적 분리 및 투자상의 분리와 관련이 있으며, 이 밖에도 PSC 계약자와 LNG 투자자 간의 가스 유통관(offtake) 가격도 주된 문제로 부각된다. 또한, LNG공장의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재무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투자분 회수율을 정해야 한다. 이 같은 비통합 LNG구조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것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세법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기가 어렵다. 즉,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세율의 차이 및 이전가격 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며, 해외 프로젝트 회사는 조세조약에 대한 적격성여부를 검토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4) 기타 PSC 조건 및 고려사항

①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석유 및 가스 계약자의 상품과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인 또는 국내(인도네시아) 공급자가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지정된 가치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BP Migas의 승인과 입찰 등 세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령 제80/2003호(“Keppres 80”)을 통하여 국영기업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과 관련된 조달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결정서 제KPTS.21/BP00000/2004-SO호에 따라 Keppers 80 BP Migas는 협력계약 공급체인 관리체계(the Management Framework for the Supply Chain for Cooperation Contracts)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007/PTK/VI/2004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자산관리, 관세 및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구매는 입찰이나 직접선택 또는 직접지명(특정요건에 따름.)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록된 판매ID를 가진 판매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계약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PSC 계약자는 자체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해당 패키지가 200억 루피아 또는 200만 (U.S.)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 BP Miga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0억 루피아 또는 500만 (U.S.)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최초 계약가 보다 공급자의 계약가를 높이기 위한 계약의 범위 및 조건상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BP Migas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BP Migas의 승인을 받아 공급자가 지명된 경우 및 초기 계약의 10%를 넘는 경우 또는 500억 루피아 또는 500만 (U.S.)달러 이상인 경우의 계약
- 계약자가 공급자를 지명한 경우 및 최초 계약의 누적량과 초과분이 500억 루피아 또는 500만 (U.S.)달러를 넘는 경우의 계약

PSC 계약자가 제출하는 입찰서류에는 입찰권유 및 일반규정, 자격사항, 행정적·기술적·상업적 요건 등으로 구성되는 입찰자 참고사항이 포함된다.

계약자는 분기별로 조달활동에 관한 특정 보고서를 BP Migas에 제출하여야 하며, 500억 루피아 또는 500만 (U.S.)달러 이상인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본을 BP Migas에 제출하고, 프로젝트의 완료, 계약의 종료, 자산관리, 관세 및 프로젝트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낙찰은 가격, 기술적 이점 및 명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외국인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도 참가가 허용되고, 현지 인도네시아 회사로 간주된다. 입찰과정에서는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도네시아산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요건

이 충족된 경우라면 고가라도 인도네시아산 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PSC 계약자가 구매한 모든 장비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순간 정부자산으로 간주되는데, 석유 및 가스장비는 운용목적의 경우,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비스회사가 수입하는 장비는 외국인투자협력위원회(the Foreig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가 면제시켜주지 않는 한, 수입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석유 및 가스장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0%~29%까지 이다.

정부는 최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와 관련하여 결정서 제KEP-0066/BP00000/2008/SO(“KEP 0066”)호를 발표했는데, 이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시 결제자 및 수령자/판매사의 결제계좌를 국가일반은행(National General Banks)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BP Migas는 차후 PSC 계약자가 탐사단계 동안은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은행이면 어디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단 PSC가 생산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PSC는 국영은행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재고(Inventory)

PSC에 따라 재고는 자본과 비자본의 2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비자본 재고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즉시 비용회수의 대상이 된다. 평가계정(contra account)은 재고의 물리적 이동 및 이용을 추적하기 위해 유지되며, 후기 PSC세대의 경우, 재고는 사용에 따라 청구된다(즉, 소비시 비용회수로 청구됨.). 수입되는 모든 재고 품목은 PSC 면세지역인 바탐 아일랜드(Batam Island)를 통해 들어와야 하며, 이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PSC 계약자들 상당수가 물품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바탐에 창고시설을 갖고 있다.

BP Miga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과 재고 및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재고는 다른 PSC로 이전하여야 하며, 비용회수로 청구되기 전에 BP Miga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상기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령

제22/2008호에 따라 2008년부터 체결된 PSC는 잘못된 계획으로 인하여 재고 구매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회수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재고가 다른 PSC로 이전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판매가는 운송비용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재고의 판매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 PSC 계약자가 재고를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리제외(write-off proposal; “WOP”)를 BP Migas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단 승인을 받으면 재고는 통상 비용회수로 청구하고, BP Migas의 창고나 시설로 이전시킨다.

③ 자산·공장 및 장비(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P&E”)

PSC 조건에 따라 PSC 하에서 구매한 PP&E(토지권 포함)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게 되면 정부의 자산이 되지만, 회사는 BP Migas가 양도를 승인할 때까지 당해 자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자산의 순장부가액(net book value)은 PSC 재무제표에 반영된 대로 아직 회수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회사의 지출로 나타난다. 실패한 탐사유정의 실제 시추비용은 운영비용으로 청구되는데, 상업적 매장량이 계약지역에서 확인되고, 탐사유정이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시추 실비는 자본화되며, 추가적으로 유정개발에 성공했을 경우의 실비도 자본화된다.

감가상각은 당해 자산이 서비스화되는 연초에 산정한다. 초기 PSC 세대에서는 전체 연도의 감가상각이 최초 연도에 가능했지만, 후기 PSC세대는 월별 산정방식이어서 12월에 서비스화된 자산은 최초 연도 한달치의 감가상각만이 허용된다. 매년 허용되는 PP&E 및 자산 비용회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은 PSC 조건에 따라 하향균형 감가상각방식 및 2중 하향균형방식 중 하나로 결정되며, PP&E 회수산정은 개별 PP&E 자산에 PSC에 명시된 감가상각요소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 PP&E는 당해 자산이 유용성을 가지는 수명에 따라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④ 부지복원 및 양도조항(Site Restoration and Abandonment Provision)

1995년 이후의 PSC 계약자들은 작업완료 후, 부지를 깨끗이 정리하고, 치위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2008년 이후 PSC의 경우, 현금자금은 양도를 위해 비환불계정(non-refundable account)으로 따로 분류하고, 부지복구는 회수가능 비용이 되며,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BP Migas로 이전된다. 개발단계로 진행되지 못한 PSC의 경우, 발생한 비용은 매몰비용(sunk costs)이 되고, BP Migas로부터 회수 받지 못한다.

Ⅲ. 하류부문(Downstream Sector): 하류규정¹⁰⁵⁾

석유·가스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겨냥해 하류시장(처리·운송·저장·거래)을 개방하였고, 국영 석유·가스회사인 PT 페르타미나의 독점을 폐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류시장을 자유화하였다. 인도네시아 내의 다국적 기업은 예전에는 하류제품과 혼합 유탄류의 유통을 주로 수행하였지만, 석유·가스법이 발효되면서 많은 유명 다국적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하류부문의 보다 자본집약적인 지역에 많이 설립되어 사업영역을 유통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해 왔다.

- 대규모 액화 및 LPG용 탱크 집합지역/저장시설
-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유통(도시가스 및 장거리 수송관)
- 제안된 정유공장 및 하류 LNG
- 제안된 LNG 재기화(regasification) 터미널
- 연료소매

105) 하류규정: 석유·가스법 제23조~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GR 제36/2004호. 즉, 석유·가스에 관한 하류부문활동은 석유·가스법(법 제22/2001호) 및 동법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인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s: “GR”) 제36/2004호에 따라 규제된다.

1. 하류부문 사업의 운영 및 감독

하류부문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된 법인(이하 “PT회사”라 한다.)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BPH Migas의 추천을 받아 MoEMR가 발행하는 사업허가(business licence)를 얻어야 한다. 상기 II.1.(3)③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PH Migas는 하류부문 사업의 운영에 대한 규제·개발 및 감독책임이 있다.

2. 사업허가(Business Licence)

하류부문 중에서 별도의 사업허가가 필요한 영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활동이 허가가 필요 없는 상류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처리(유전 처리 제외)
- 운송
- 저장
- 거래(‘도매거래 사업허가’와 ‘거래 사업허가’라는 2가지 형태의 사업허가가 필요하다.)

하나의 PT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허가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허가는 BPH Migas의 추천을 통해 MoEMR가 관리하고, 허가를 받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기술적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PT회사는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MoEMR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적·행정적 요건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운영자의 성명
- 제안된 사업의 영업부문
- 운영절차의 준수와 수행

- 영업 관련 상세 계획 및 기술적 요건

사업허가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발행된다.

- PT회사가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대 5년의 기간을 허용하는 일시적 허가(temporary licence)
- PT회사가 운영할 준비가 된 경우, 영구운영허가(permanent operating licence)

3. 처리(Processing)

처리 사업허가를 보유한 PT회사는 운영보고서, 연간계획서, 월별달성도 및 기타 보고서를 MoEMR와 BPH Migas에 제출하여야 하며, 석유·가스의 처리와 윤활유, 석유화학물을 생산하기 위한 산출물의 처리는 MoEMR와 산업무역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가 공동으로 규제하고 운영한다. 가스를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및 액화가스(Gas to Liquids; “GTL”)로 처리하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류개발의 2차적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하류영업활동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통합 LNG·LPG 공급체인(supply chain) 개념은 다음을 통해 가능하다.

- PSC 계약자가 가스판매자로 지명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처리를 별도의 법인이 하도록 함.
- LNG 공급조건의 단축.
- 주주협약서(shareholder agreement)¹⁰⁶⁾에 따라 후원되는 국내 프로젝트 회사의 활용. (LNG 처리공장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초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106) 주주협약서는 주로 회사의 설립과 더불어 대주주들 간에 회사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둠으로써,향후의 의견불일치를 미리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4. 운송(Transportation)

전송구간(transmission segment)이나 유통 네트워크지역(distribution network area)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에 의한 가스운송은 특정 파이프라인 및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발행되는 사업허가와 BPH Migas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운송 사업허가를 보유한 PT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MoEMR와 BPH Migas에 대한 월별운영보고서의 제출
- 육상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협력업체, 소규모 회사 및 국영 민간 회사가 소유한 운송시설의 우선적 이용
- 가스운송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및 기타 시설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국가 가스운송 및 유통망에 대한 마스터플랜(the Master Plan for a National Ga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Network)의 준수

또한, BPH Migas는 운송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PT회사, 사용자 및 소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규제하고, 조정·감독한다.
- 국가 가스운송 및 유통망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PT회사에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운송 허가권을 발행한다.

PT회사는 특별허가(special permission)를 통하여 운송수단 및 시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저장(Storage)

PT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요건으로 하류부문 활동으로 저장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 매 분기별 운영보고서를 MoEMR에 제출하고, BPH Migas의 요청 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장시설 공유기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원거리 지역의 저장시설 공유
- LNG 저장 사업허가의 획득

PT회사는 BPH Migas의 허가(permission)를 통하여 저장시설 및 관련 시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윤추구 및 임대료 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제3자와 함께 이용하려는 목적의 운송 및 저장활동은 하류 영업활동으로 간주되며, 관련 하류사업허가가 필요하다.

6. 거래(Trading)

거래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PT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거래 유통망 내의 생산물과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가능성
- 거래 유통망 내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
- 연료 및 생산물 처리 가격의 공정성
- 거래시설의 충분한 이용가능성
- MoEMR가 정한 생산물 처리와 연료의 품질 및 기준
- 사용되는 측정시스템의 정확성
- 적절하고 합법적인 기술의 사용

또한, PT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요건으로 거래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월별 운영보고서를 MoEMR에 제출하거나 BPH Migas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장시설, 저장수단 및 국내외 자원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승인된 상표(trademark)를 사용하고, 유통업체를 통하여 소규모 사용자에게 연료를 유통하여야 한다.
- 유통업자를 지명할 경우, 협력업체, 소규모 법인 및 국영 민간회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유통업자의 지명과 관련하여 MoEMR와 BPH Migas에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매거래허가를 보유한 PT회사는 특정 소비자(즉, 대형소비업체)를 위하여 거래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MoEMR와 BPH Migas는 PT회사의 저장시설 및 기타 시설의 최소용량 한계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PT회사는 최소용량 요건을 충족한 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항구 및 터미널을 보유한 사용자는 MoEMR의 승인을 통하여 연료석유, 가스 및 기타 연료를 수입할 수 있고, 자체 이용을 목적으로 직접 산출물을 처리할 수 있으나, 재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LPG 거래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PT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저장시설 및 저장수단과 LPG 용기의 주입 관리
- 등록상표의 보유
- 고품질의 LPG, LPG 용기주입 및 LPG 시설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

가스 거래영업을 영위하는 PT회사는 가스 유통망시설(distribution network facility)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 가스 거래허가를 획득하고, 유통망지역(Distribution Network Area)에 대한 특별허가(special permission)을 득한 후에 운영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가스 거래허가를 획득한 후, 유통망지역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한 다른 PT회사의 유통망시설을 통해서만 거래영업을 할 수 있다. MoEMR는 가스의 기술적 기준과 유통 및 시설에 대한 최소 기술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갖는다.

7. 전략적 석유비축(전략비축유; Strategic Oil Reserve)

정부가 정한 전략적 석유 비축분은 국내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정부는 PT회사가 전략적 석유비축에 기여하도록 이를 PT회사에 할당할 수 있으며, MoEMR는 전략적 석유비축의 저장 및 이용과 관련하여 비축량, 종류 및 장소를 결정한다. 전략적 석유비축량은 석유 수요가 중심이 된다.

8. 국가연료석유 비축(National Fuel Oil Reserve)

MoEMR는 국가연료석유의 비축량 및 그 종류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PT회사에 해당 비축분을 구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감독책임은 BPH Migas에게 있으며, 비축분은 연료석유의 부족시에만 사용되고, 일단 부족분이 해결되면 해당 비축분은 본래의 장소로 복귀시켜야 한다.

9. 표준 및 품질

MoEMR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래되는 연료석유, 가스, 기타 연료 및 특정 처리제품의 표준과 품질 및 그 형태를 정하며, 품질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적용된 기술, 생산자의 역량 및 소비자의 재무상태, 안전성, 건강 및 환경기준 등을 검토한다.

처리영업(processing business)을 영위하는 PT회사는 처리된 생산물의 품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실을 보유하여야 하며, 연료석유를 생산하기 위해 혼합작업(blending)을 수행하면서 저장영업(storage business)을 영위하는 PT회사는 혼합생산물의 품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PT회사가 자체 소유의 실험실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제3자가 소유한 공인된 실험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는 연료석유, 가스 및 최종제품 형태의 처리생산품은 MoEMR가 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되는 연료 및 처리생산품의 경우, 생산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기준 및 품질을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요청된 연료 및 처리생산품은 정해진 기준과 품질에 대하여 MoEMR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특정 종류의 연료석유 가용성(Availability) 및 유통

시장의 여건상, 완전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에서 특정 종류의 연료석유의 가용성 및 유통을 확보하면서 거래영역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MoEMR가 국내 연료석유 거래지역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며,¹⁰⁷⁾ BPH Migas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거래 사업허가(business licence)를 보유한 법인을 위하여 특정 종류의 연료석유 거래유통지역(trade distribution area) 지정
- 시장메커니즘이 비효과적이거나, 시장이 원거리지역인 곳에서의 운송 및 저장시설의 공동이용 결정

필요한 경우, 정부는 BPH Migas의 조언을 받아 특정 종류의 연료석유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산정을 통해 소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종류의 연료석유를 운송업자에게 거래하거나 가정용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석유를 거래하는 도매거래 사업허가를 보유한 PT회사는 지명한 유통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유통업자에는 PT회사와 계약한 협력업체, 소규모 기업 및 국영 민간기업이 포함된다. 유통업자는 기업체의 상표가 부착된 연료석유만 유통할 수 있고, PT회사는 유통업자의 상호를 MoEMR와 BPH Migas에 보고하여야 한다.

107) MoEMR가 지정하는 국내 연료석유 거래지역에는 다음의 지역이 포함된다. ① 시장메커니즘이 효과적인 곳, ② 시장메커니즘이 비효과적인 곳, ③ 시장이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곳

11. 직업적 건강 및 안전, 환경관리 및 현지 커뮤니티 개발

하류 사업허가를 운영하는 PT회사는 직업상 건강과 안전, 환경 및 현지 커뮤니티 개발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같은 책임에는 현지 채용과 같은 방식을 통한 현지 커뮤니티의 개발 및 활용이 포함되며, 개발은 운영지역 주변이나 지방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2. 현지 상품·서비스·기술 및 디자인 역량과 인력의 활용

하류 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활동을 운영하는 PT회사는 현지 상품·도구·서비스·기술 및 공학과 디자인 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지 PT회사는 인도네시아의 노동 관련 법상 직무역량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직원이 역량기준 및 직업적 자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원의 역량 개선을 위해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을 조정하여야 한다.

13. 제재(Sanctions)

PT회사가 사업허가를 위반한 경우, BPH Migas는 제재를 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제재는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계속 강도가 높아지며, 이에는 서면경고(written reminder), 영업중단(suspension), 영업동결(freezing) 및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업허가의 취소(annulment)가 포함된다. 제재로 인한 모든 손해는 당해 법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하류영업활동을 영위한 개인이나 회사도 처벌을 받게 되며, 연료 및 처리 생산품의 위조나 복제 또는 보조금이 지급된 연료의 거래 및 운송의 남용은 최대 징역 6년 또는 600만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 3 절 검토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구리·주석·니켈·석탄 등에서 세계 최상위의 생산국이며, 이 밖에도 금, 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사철 등도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함으로써 광물 관련 수출이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2009년 1월에 新광업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생산량 증대를 모색하고 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표 이후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으로, 우리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광산개발은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 및 외국의 대기업들이 참여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형태였는데, 이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현지 주민과의 관계, 운송 인프라 미비 등 리스크가 커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고, 광업권을 갖고 있는 현지 업체들은 해외투자자와 협력하여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기업의 광업권 보유 회사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문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인도네시아 광업시장에 진출하면서 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광업투자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실제 광산에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광산이 오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광산의 매장량 및 품질조사와 함께 광물이동을 위한 도로, 발전소 건설 등 기반시설 확대도 함께 고려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래 판매처까지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높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진출하여 성공하기는 여의치 않은 점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 유명기업과의 합작 또는 기 생산 광구의 지분인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2008~2015년 기간 중 인도네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약 11% 감소하고, 소비량은 약 1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생산기술 개발 및 유전 확보, 정유시설 증설 추진 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유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광구 탐사뿐만 아니라 정유공장, 운송을 위한 파이프, 저유탱크 및 터미널 설치 등 관련 인프라 부문의 사업기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분야의 투자기회를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의 상류부문활동 뿐만 아니라 하류부문활동에도 참여하여 투자·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적극 조달한다는 취지에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개발권을 둘러싼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적인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의 부족과 가격상승에 맞춰 각종 광물자원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되, 석유·가스·석탄 등 국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내수 위주의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원분야의 투자환경은 다소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더불어 석유·가스를 제외한 각종 광물들의 개발관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면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상실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 등은 향후 투자에 있어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광물·석유·가스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법제도 및 현지 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의 장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4 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 및 정책 분석

제 1 절 개관: 투자법의 발전과정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수반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현지 투자에 앞서 대상국의 투자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투자법은 FDI에 우호적인 환경 및 여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하에서는 인도네시아 투자법의 역사를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 독립 이전(1511~1945)

인도네시아의 FDI는 1511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하여 네덜란드(1596~1795), 영국(1811~1816), 네덜란드(1816~1942) 및 일본(1942~1945)의 순으로 행해져 왔다. 이 시기 실투자수익의 가치는 대단히 컸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준거법이 인도네시아 법이 아니라 투자자의 본국법이었던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부투자활동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을 육성하는데 실패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식민지화를 불러왔고, 이 같은 상황은 한 동안 지속되었다.

II. 舊질서 시대(1945~1966)

이 시기에는 향후 인도네시아 투자법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투자법 제78/1958호(“1958년 투자법”)가 제정·시행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정립하였고,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용이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악의 투자환경을 조

성하였다고 평가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FDI는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비우호적인 정책은 잦은 외국의 간섭과 마찰로 인하여 정부가 외국원조나 기타의 자본유입을 불신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일례로 정부는 법 제86/1958호를 근거로 네덜란드 회사들을 국유화하여 국내의 외국인 자본을 유용하였고, 동 법을 폐지하고 시행된 법 제16/1965호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회사를 모두 청산조치하고, 향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내부투자를 부정하였다.

Ⅲ. 新질서 시대(1966~1998)

이 시기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법 제1/1967호(“舊투자법”)가 제정되어 당시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적 보호체계가 마련되면서 인도네시아 내 FDI활동의 르네상스로 칭송받는다. 동 법은 외국인투자를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투자에 호의적인 분위기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도 갖추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 ①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담당부서로서 외국인 투자업무 집행위원회(the Executive Board for Foreign Investment)의 설치
- ② 신속하고 간소한 투자절차·허가·관리 시스템의 마련
- ③ 30년의 직접투자기간(기산일은 회사설립일이 아니라 실제 영업 시작일)
- ④ 필요시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사업우선목록(business priority list)을 마련

- 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외국인 자본 투자제한의 완화: 해당 제한에는 부정적 투자목록(negative investment list), 외국투자회사의 주식소유권에 대한 조건, 외국투자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등이 포함됨.
- ⑥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 특별관세규정, 투자세 및 기타 공제형태로 투자활동시설 및 비용을 허용
- ⑦ 인도네시아 내에 외국중재보상액 인정 및 집행을 보증하는 투자 분쟁 해결규정 마련
- ⑧ 외국투자회사가 인도네시아 내 자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마련
- ⑨ 투자활동을 위한 토지활용기간을 35년까지 연장, 추가로 25년 갱신 가능
- ⑩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협약의 비준. 특히, 세계 무역기구 설립 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다자간국제보증기구 설립 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및 일부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 등

IV. 개혁시대(1998~현재)

이 시기의 투자규정은 투자법 제25/2007호(“新투자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특징된다. 동 법은 과거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던 일반적 투자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한데 모아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TRIMs에 따른 투자법의 국제적 최소기준을 조정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주요 이슈와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투자의 범위 및 정의 확장

동 법은 TRIMs에 따른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에 입각하여 외국 및 국내 투자조항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2. 기본투자정책의 확립

기본적 투자정책의 직접적인 목적은 내부 자본투자의 활성화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자활동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의 조성에 주안점이 있다.

3. 투자보호보증(investment protection guarantee)의 제공

동 법은 반차별대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원칙 적용), 자본송환, 반유용(anti-misappropriation) 및 반국유화에 대한 보증, 허가절차의 간소화, 토지소유권, 이민시설 및 법적 안정성을 포함하여 다수의 투자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4.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및 조건부 투자개방업종의 목록 작성

동 법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우선적인 투자목록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목록의 작성권은 대통령에 전속되며, 대통령 규정(presidential regulation)이 이를 정하고 있다.

5. 투자시설 규정

투자시설에 관한 규정은 동 법의 가장 광범위한 부분을 구성한다. 즉, 최소 6개 조항이 투자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시설과 비재정시설이 포함된다. 투자시설은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

6. 투자절차와 메커니즘의 간소화

동 법은 자본투자의 허가를 담당하는 투자조정위원회(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의 관할 하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one-stop integrated service)를 제공한다.

7. 투자정책의 조정 및 시행

동 법은 투자정책과 운영의 조화를 위하여 투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동 법 제27조 내지 제28조는 과거 대통령령에 포함되었던 투자조정위원회의 기본적 업무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8.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의 개발

정부는 투자유치의 원활화와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이 같은 지역에 특별투자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투자법 외에도 개혁시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업무 집행위원회 관련 규정, 투자절차·허용 및 감독체계에 관한 규정, 투자분쟁 해결규정,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국제협약 비준 및 양자간 투자협정 비준 등 여러 법령을 상당수 제정하였다. 이는 개혁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국가투자법 체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내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각 부문별 규정을 보완하였고, 자본투자 메커니즘도 인도네시아 지방자치정책과 일치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내부투자 증가 및 과거 여러 명칭으로 개발되어 왔던 지역들을 통합하여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한 것도 일례라 할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개혁시대의 인도네시아 투자법체계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법제 및 정책

I. 투자법 제25/2007호(“新투자법”)

개혁시대는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이 사임하고,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하비비(B.J. Habibie)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¹⁰⁸⁾ 당시 불어 닥친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경제도 하락세에 있었고, 정부는 경제부흥을 위한 전략적 단계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미시적·거시적 규모의 경제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개혁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외국인투자는 이 같은 정부의 개선노력의 최우선 과제로서 2007년 신투자법의 제정은 인도네시아 투자법의 초석이 되었다. 동 법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WTO가입 이후 경제적 세계화 요구에 맞춰갈 수 있는 총체적인 규정이 다수 제정되었고, 비차별원칙,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과 같은 기본 조항이 법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¹⁰⁹⁾ 한편, 담당 기구(부서)의 신설과 투자부문별 규제의 구체화로 인하여 투자분위기 쇄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점차 현실화 되었다.

투자업무와의 관계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저해하는 부패의蔓延은 외국자본의 유입에 주요한 장애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정부부처 간의 불협화음과 비효율적인 관료체제, 경제의 고비용 구조 및 법적 안정성보장의 취약성도 경제의 하락세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혁시대의 투자 관련 법제는 투자 장벽의 제

108) “Indonesia: Era Reformasi,” 2007, available at <http://indonesiaindonesia.com/printthread.php?t=2392> (last visited on August 23, 2012).

109) Theofransus Litaay, “Peningkatan Investasi di Indonesia Membutuhkan Konsistensi Reformasi Hukum,” KRITIS, Jurnal Studi Pembangunan Interdisipliner, vol. XIX, no. 3, 2007, pp.141.

거와 對인도네시아 투자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즉, 투자조정위원회(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투자자를 위한 재정시설(fiscal facilities)의 허가, 수출활성화팀의 설립 및 자유무역과 항구에 관한 법률(Act on Free Trade and Port)의 제정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규정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新투자법은 1967년 舊투자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투자증진을 실현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우호적인 투자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탄생되었다. 인도네시아는 新투자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각각 분리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과 내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을 비로소 통합하게 되었다. 특히, 동 법은 그 적용범위, 기본투자정책, 사업의 형성, 투자자의 대우 및 사업 분야 등을 주요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형태를 위한 투자조항도 규율하고 있다. 즉, 권리, 의무, 투자책임, 투자자를 위한 시설, 투자승인 및 허가 뿐 아니라 조직문제, 자본투자의 운영 및 분쟁해결 메카니즘 등과 관련된 투자정책의 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新투자법의 구성

新투자법은 18개의 장(章)과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12개 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1967년 舊투자법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와 내용이 한층 넓어지고 복잡해 졌다. 제1장의 총칙(General Provisions)에 이어, 제2장에서는 원칙과 목적(Principles and Objectives)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기본투자정책(Basic Policy of Investment), 제4장에서는 회사의 형태와 소재지(Form of Corporation and Domicile), 제5장은 투자에 대한 조치(Treatment to Investment), 제6장은 노동력(Manpower), 제7장은 사업분야(업종)(Business Field), 제8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발전(Investment Development to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제9장은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The Rights, Obligations and Liability of Investor), 제10장은 투자시설(Investment Facility)에 대해서, 제11장은 회사의 합법화와 허가(Company Legalisation and Licensing), 제12장은 투자정책의 조정과 시행(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olicy), 제13장은 투자의 구성(Organization of Investment), 제14장은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제15장은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제16장은 제재조치(Sanctions), 제17장은 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제18장은 부칙으로 효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新투자법의 주요 내용

新투자법은 직접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법 앞에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하여 직접투자와 관련한 내·외국인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자산의 국유화 금지, 과실송금의 보장 등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득세 감면,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감가상각 가속, 토지세 감면 등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新투자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Capital Investment Coordination Board;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은 각 부터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모든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인·허가에 대한 일원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개선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新투자법의 주요 내용을 일괄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 있는 부분만을 선별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新투자법 주요 내용>

조 항	주요내용
제6조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
제7조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을 함
제8조	과실송금 이전의 자유 보장 -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 자본,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 로열티, 투자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소득 등을 외국화폐로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12조	투자제한·금지 분야 및 업종 -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이 정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며, 내·외국인 투자자도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
제14조~ 제17조	투자자의 권리·의무·책임 - 투자자는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 받으며, 선량한 기업경영의 원칙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자본투자행위에 관한 BKPM에의 보고, 법령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제18조	조세혜택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증지

조 항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y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제22조	<p>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제23조	<p>외국인 투자자의 주거편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을 갖춘 투자자 중 BKPM의 추천에 따라 2년 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 사증부여, 인도네시아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허가서 부여 가능 등
제25조 ~ 제26조	<p>사업허가서 취득에 있어서 통합서비스 시스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One Door Integared Service)을 통하여 획득
제27조 ~ 제28조	<p>투자정책의 조정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BKPM은 투자정책을 시행하며, BKPM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
제32조	<p>외국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외국투자자 간의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됨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지식경제부 · KOTRA, 2011 주요국가 해외투자 편람 (2011), 108면 ~ 109면.

(1) 개념정의

新투자법이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동

법에서의 “투자(investment)”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투자활동을 의미하는데(Art. 1, para 1.), “내국인투자(domestic investment)”란 내국인 투자자(인도네시아 국민, 법인, 인도네시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에 의한 인도네시아 내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활동을 의미하고(Art. 1, para 2.),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란 외국인 투자자(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포함된다)가 외자 또는 국내자본과 합자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내 회사에 투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Art. 1, para 3.). “외자(foreign capital)”란 모든 외국 정부, 외국인, 외국회사,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일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소유의 모든 자본(금전적 가치를 포함)을 의미하고(Art. 1, para 8.), “내자(domestic capital)”란 인도네시아 정부, 국민, 법인 또는 비법인이 소유하는 자본을 말한다(Art. 1, para 9.).

(2) 원칙과 목적

新투자법 제3조는 투자의 기본원칙과 투자기관의 존재목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투자의 기본원칙이란 투자이행상의 원칙으로서 일반 전체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뜻한다. 즉,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 개방(openness), 책임(accountability),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연대(togetherness), 공정한 효율(impartial 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환경친화성(environmental friendly), 자립(independency), 균형발전(balance of progress)과 국내경제의 통합(national economic unity) 등이 있다(Art. 3(1)). 동 법의 목적은 경제성장의 증진, 일자리의 창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가경쟁력의 향상, 국가 기술능력의 증진, 국민경제의 발전 고양, 국내·외로부터의 기금을 통합 실물경제의 잠재력 향상, 지역사회의 번영에 맞추어 있다(Art. 3(2)). 정부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 환경을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책임이 있으며, 국가의 이익에 관한 지속적인 고려에 있어서 국내 및 국외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허가절차에서부터 투자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법적 안정성 및 사업의 확실성, 기업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중형·소형·초소형 기업을 보호하고 발전기회를 부여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기본정책은 투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Art. 4).

(3) 동등한 대우

상기한 바와 같이, 新투자법의 제정 이전에는 외국인투자와 내국인 투자에 관한 법을 각각 분리하여 두었으나 新투자법은 제1조와 제2조 및 제4조 제2항에서 동 법이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新투자법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동등하고 대우하고 있다는 것인데(“to provide the same treatment to any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이는 곧 외자와 내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정 업종을 개방하지 않거나,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을 정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BKPM이 정하고 있는 외국인 회사설립의 최소자본요건(Minimum Capital Requirement)¹¹⁰⁾에 관한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나 명문화되지 않은 정책(unwritten policy)들 자체가 동 조항에 의하여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대통령령에 따른 투자제한업종 목록에는 외자와 내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내자에 허용되는 많은 분야가 외자투자에는 금지 또는 조건적인 경우도 있다.

110) 현행의 최소자본요건은 250,000만 달러(USD)이다.

(4) 관련 기관

외국인 투자업무는 투자조정청(BKPM)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BKPM은 석유·천연가스·광업·임업 및 금융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전반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BKPM은 자카르타의 본부 이외에 각 주(州)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들 지방사무소는 각 주정부 관할 하에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활동을 심사·평가한다. BKPM의 주요 업무로는 투자금지업종 리스트 결정, 개발정책에 따른 지방에의 투자활동 장려, 투자사업 이행감독, 투자사업의 종료(완성)촉진, 투자자 및 업계와의 소통증진, 투자허가 신청내용 검토 및 평가, 외국인투자 신청사업 평가서와 내국인투자의 승인, 투자허가서의 발급, 일반적인 투자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다.

(5) 기업과 본사의 형태

사업자의 형태에 있어서 내자의 경우에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형태를 허용하나, 외자투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명의로 투자와 사업의 영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최소 2인 이상이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에 투자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투자승인서를 획득한 후에 이 투자승인서에 따라 현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자격을 취득하여 동 주식회사의 명의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동 회사의 주주가 된다 (Art. 5).

(6) 투자절차

① 신 청

외국인투자신청서는 BKPM 소정의 투자승인신청서 7부를 BKPM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명수권서
- 투자모회사의 연차보고서
- 투자모회사 및 현지 합작파트너회사의 정관
- 현지 합작파트너의 납세번호
- 합작투자약정서 및 기술협약서
- 생산기술서 및 공정도
- 위해물 사용업체의 경우 환경보존방안
- 투자모회사 및 현지 합작파트너회사에 대한 거래은행의 신용조사서

② 승 인

BKPM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정부의 투자정책과 투자금지업종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대통령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승인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추천내용을 승인하면 BKPM은 대통령의 투자승인을 발급하는데, 이로써 투자자는 투자에 필요한 절차를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의 투자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모든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종료(완성)되어야 한다.

(7)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투자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어떠한 국유화나 공공수용에 관한 조치도 행할 수 없다(Art. 7(1)). 정부가 국유화 또는 공공수용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 또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Art. 7(2)). 이 때, 시장가치의 평가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지명된 제3의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만약, 보상가액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진다(Art. 7(3)).

(8) 자금이체 및 송금의 보장

新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하여 세금과 로열티를 비롯한 기타 금융상의 지불의무를 준수하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하여 자본, 수익, 은행이자, 추가자금, 대출상환, 로열티, 소득, 청산잔액, 투자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외환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체와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Art. 8(3)).

(9) 고용

新투자법상 모든 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특정한 지위에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증진시키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한 투자회사는 인도네시아 국민인 근로자에게 훈련이나 기술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Art. 10).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산업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조정노력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산업 관련 법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Art. 11).

(10) 투자제한업종

기본적으로 무기·탄약·폭약·전투장비와 같은 군장비시설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지만(Art. 12(3), para. a), 동 법에 의해 명시된 투자제한 및 조건부 투자개방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Art. 12(1)).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건·문화·환경·국방·안보를 비롯한 국익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분야와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Art. 12(3)). 또한, 정부는 특정 분야와 업종을 조건부로 개방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자원의 보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보호, 생산과 분배의 감시, 기술능력의 향상, 내자의 분담, 정부가 지정한 회사에 대한 합작투자 증의 이유가 수반되어야 한다(Art. 12(5)).

인도네시아 정부는 新투자법을 제정·공포함과 동시에 대통령령(Presidential Regulation No.77 of 2007)을 통하여 투자제한업종(closed line of business)과 조건부 투자개방업종(open line of business with conditions)을 정리함으로써 직접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관련 법률체계를 완성하였다. 新투자법과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투자법 일반과 네거티브 투자리스트의 기본 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현행 네거티브 투자리스트는 2010년 개정된 대통령령(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으로서 2007년 리스트를 개정하여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이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2007년의 리스트 보다 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① 투자제한업종

2010년 개정된 투자제한업종(closed business fields)에 대해서는 2007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활동이 제한된다. R&D와 같이 해당 업종에 대한 비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리스트가 적용되나, 이 경우 개발사업 분야에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는 있다.

<투자제한업종 목록>

분 야	업 종
농업	마리화나 경작
임업	1. CITES협약 부속서 IDP 등재된 어종의 포획 2. 원료·석회·칼슘 및 기념품·장신구의 제작을 위한 자연산 산호의 이용(제거)

분 야	업 종
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류업(술, 와인, 맥주 등 맥아가 포함된 음료) 2. 수은, 염소, 알칼리 주조산업 3.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관한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론 - 펜타클로로페놀, DDT,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4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폼, 메틸아취소산, CFC 4. CWC협약 표1의 화학물질에 관한 산업
교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터미널의 제공 및 유지 2. 검문소의 유지 및 운영 3. 차종검사 4. 자동차 정기 점검 5. 항행 통신·지원 설비 6. 선박운항정보시스템(VTIS) 7. 항공운항 안내서비스
정보·통신	라디오 주파수 및 위성궤도 스펙트럼 모니터링 장치의 관리 및 유지
문화·관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박물관 2. 문화유산(사원, 성, 비문, 고대유적 등) 3. 주거환경/전통환경 4. 기념비 5. 도박업·카지노

투자제한업종은 총 6개 분야 2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업종에는 농업·임업과 같은 1차 산업, 주류업, 환경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화학 산업, 교통·통신 관련 기간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문화·관광산업의 일부가 포함된다.

② 조건부 투자개방업종

조건부 투자개방은 농업분야, 임업분야, 해양·어업분야, 에너지·광물자원분야, 산업분야, 국방분야, 공공분야, 무역분야, 문화·관광분야,

교통분야, 정보·통신분야, 금융분야, 은행분야, 노동·이주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보안분야 등 총 17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다수의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을 모두 나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분류가 가능한데, (a)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유보, (b) 동업, (c) 외자소유, (d) 특정 지역 내, (e) 별도의 허가, (f) 100% 현지자본, (g) 외자 및 토지소유, (h) 별도의 허가 및 외자소유, (i) 100% 현지자본 및 별도의 허가, (j) 외자소유 및 ASEAN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위한 지역 등의 조건들이 부가되기도 한다.

한편, 상세조건에서는 최대 허용 가능한 투자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전자조작식품(GMO)이나 옥수수·콩·쌀·감자와 같은 주요 농작물(25ha를 초과하는 부지에 한하여 적용된다)은 최대 45%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곡물에 대한 경작이나 플랜테이션(이 역시 25ha를 초과하는 부지에 한하여 적용된다)에 대해서는 최대 95%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2007년 리스크에는 부지의 크기에 따른 제한 없이 외국인 지분을 95%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 리스크로 인하여 투자제한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2007년에서 2010년 동안 25ha 미만의 부지에 외국인 투자가 허가된 사례가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제한이 강화된 것이라기 보다는 불명확했던 투자조건을 명문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¹¹¹⁾

이 밖에 석유·가스·원자력·지열·전력·발전소 설비 등은 최대 95%, 건설은 최대 67%, 건설컨설팅은 최대 55%, 관광·숙박·스파 등은 최대 51%, 자동차 수리·군장비시설·영화제작·화물운송·취업알선·일부 사교육(컴퓨터, 언어, 미용 등)은 최대 49%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당구·볼링·수영·축구·테니스·골프와 같은 레저산업은 최대 49%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중소

111) 전성우, “인도네시아-네거티브 투자 리스트,” 법률신문 (2012.2.9.)

기업과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51%의 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인도네시아 동부지역(Kalimantan, Sulawesi, East Nusa Tenggara)과 Bengkulu, Jambi와 같은 지역에서는 최대 100%의 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11) 투자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모든 투자자는 新투자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를 보장받으며, 운영하는 사업 분야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도 서비스 및 법률규정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Art. 14). 또한, 기업의 선량한(good) 경영원칙에 따라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여야 한다. 투자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조정위원회(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활동이 영위되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Art. 15). 모든 투자자는 자본투자행위 시에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동 법에 따라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리, 정리, 유기하는 경우, 의무 및 손해를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경쟁사업풍토를 조성하고, 독점제한 등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을 조정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 편의 등의 제공에도 책임이 있다(Art. 16).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해당 지역의 회복을 위한 배당기금을 부담해야 한다(Art. 17).

● 투자자의 권리

- 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②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공개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③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제반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투자자의 의무

- ① 성실경영원칙을 적용하여 회사를 경영한다.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한다.
- ③ 정기적으로 투자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인도네시아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 ⑤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 투자자의 책임

- ①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자본금을 마련한다.
- ②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포기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하며, 독과점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 ④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⑤ 근로자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⑥ 모든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투자시설 및 조세 관련 인센티브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투자에 대하여 투자편의의 측면에서도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 확장 및 신규투자의 유치를 원하는 모든 투자자들에 대하여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Art. 18(1)~(2)), 여기서 사업 확장 및 신규투자의 유치를 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은 소득세 감면, 설비·제품·자재 등에 대한 면세, 원료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감가상각 인정, 부동산세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다(Art. 18(4)).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시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비제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수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거나 원거리, 황폐한 지역 또는 국경지역,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환경을 보존하고, 연구개발에 종사 및 혁신의 노력을 하거나 초소형·중소기업과 협력관

계를 유지하고 국내의 자본상품, 설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수준의 투자수준까지 순소득세를 공제해주거나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수입된 자본상품, 기계류, 설비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 및 공제해 준다. 또한, 일정 기간 특정 조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보조원자재(support material)에 관한 수입세를 감면해 주며, 일정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된 자본상품, 기계류,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및 재산세를 감세, 특히, 특정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특히, 신기술이나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해 주는 개척분야 산업인 경우, 일정 총액이나 기간 동안 회사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며, 기계류나 자본상품을 교체하려는 투자자에 대하여도 수입세를 감면해 준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Art. 20).

또한, 정부는 식품가공업, 포장업, 플라스틱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가구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세금지원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 Government Regulations No.1 of 2007 regarding the Facility of Income Tax for Investment on Certain Business Sectors or Regions
- Ministry of Finance No.16/PML/03/2007 regarding Granting Income Tax Facilities for Investment on Certain Business Sectors or Certain Regions
- Directorate General of Tax No. Per 67/PJ/07 of 2007 regarding Procedure of Granting Income Tax for Investment on Certain Business Sectors and/or Certain Regions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 부동산 권리

상기한 바와 같이, 新투자법은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개발권, 건설권 및 사용권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가장 광범위한 권리로서 존속기간과 사용권 및 담보설정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소유권은 오직 인도네시아인만이 보유할 수 있고, 소유권의 양도는 토지등록소에서 양도증서의 실행에 의해 가능하다. 경작권은 농업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자연인과 PMA(Penanaman Modal Asing)회사¹¹²⁾를 포함한 법인에게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허용한 권리이다. 건설권은 토지의 이용이나 토지소유 전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의 허가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장권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권은 부동산에 대한 부수적인 권리로 약정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에게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외국인과 외국투자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개발시 이용된다.

新투자법은 경작권, 건설권, 사용권의 사용기간을 과거보다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즉, 경작권은 95년으로 계약과 동시에 60년을 더 갱신할 수도 있고, 추가로 3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건설권은 기본 80년이고, 동시에 50년을 미리 갱신할 수 있으며, 추가로 30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사용권은 70년이고, 동시에 45년을 미리 갱신할 수 있고, 추가로 25년 연장이 가능하다(Art. 22).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용익적 성격을 가지는 물권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원스톱통합서비스(One-stop Integrated Service)

원스톱 통합 서비스는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의 편의, 회계기능 및 투자정보를 조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Art. 26(1)). 이는 허가업무절차에 관하여 권한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투자분야의 행정청

112)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新투자법의 주된 규제대상이다.

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된다(Art. 26(2)). 즉, 원스톱서비스는 허가권이 있는 기관이나 행정청으로부터의 권한 위임과 지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BKPM은 채굴·석유·가스분야, 은행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허가절차를 진행하는 단독기구가 된다. 통합서비스의 시행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와 더불어 통합서비스기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15) 투자정책의 조정 및 시행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간,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의 투자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정책의 조정 및 시행은 투자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의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조정위원회 의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Art. 27). 투자이행의 조정에서 투자조정위원회는 의무이행과 투자부문에서의 정책이행을 조정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활동 및 서비스의 실행에 관한 규범, 기준, 절차를 정한다. 또한, 회사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투자기회와 잠재력을 개발하고, 투자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 파트너십과 경쟁 증진 및 건강한 사업경쟁 조성을 통하여 투자활동 분야 내에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사업 분야를 개발하고, 투자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컨설턴트 이행 및 많은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영토 외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의 국내투자를 조정하고,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조정 및 실행하게 된다. 투자조정위원회는 협력의무에 더하여 법률에 따른 투자서비스의 제공의무가 있다(Art. 28).

(16) 특별경제구역

특정 지역의 자원이 국가 경제발전에 전략이 되거나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을 정하여 이에 관한 투자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Art. 31).

(17) 분쟁의 해결

新투자법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모든 투자자들이 포함된 모든 투자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중재,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또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입각한 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Art. 32(2)).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내 투자자들 사이의 분쟁의 경우, 중재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Art. 32(3)),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Art. 32(4)).

II. 2012년 新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2월 7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新투자법을 보완하는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2012년 제16호, 新투자계획안(the Capital Investment General Plan; RUPM)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명시하였다. 즉, 新투자계획안 1단계에서는 투자 장애요인제거, 2단계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 환경개선, 3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도네시아 국내기업의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4단계에서는 기업들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특히, 투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BKPM이 도입한 원스톱 통합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복투자를 금지하고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및 쌀·옥수수·통·사탕수수·야자수 등의 농업과 철강,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 전력, 송전, 대체에너지 발굴 등 에너지 산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이 주목된다.

<2012년 인도네시아 투자계획안>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광업부문 투자를 허용하고, 5년 간 광업지분을 100%를 허용하였던 2009년의 新광업법을 근간으로 2012년에 관련 법령 시행세칙이 추가되면서 광물과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2012년 2월 초에 발표된 “광물자원의 국내 가공·정제 의무조항에 대한 시행세칙”에서 2014년까지 모든 광물자원이 가공된 상태에서 수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관련 제련 및 가공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말 발표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11년 제52호는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바 정유·석유화학·금속·기계 등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주요 산업에 대해 1조 루피아(약 1억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 3 절 조세 관련 법제

I. 세법의 구성

인도네시아에는 크게 ① 조세총칙법,¹¹³⁾ ② 소득세법,¹¹⁴⁾ ③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¹¹⁵⁾ ④ 재산세법,¹¹⁶⁾ ⑤ 인지세법,¹¹⁷⁾ ⑥ 조세심판법,¹¹⁸⁾ ⑦ 강제징수법¹¹⁹⁾ 및 ⑧ 부동산취득세법¹²⁰⁾ 등 8개의 세법이 있다. 조세총칙법은 세무행정처리에 관한 일반 법률로서 총 11개 장, 4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¹²¹⁾ 소득세법은 총 9개장 35개 조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법은 총 8개 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세총칙법

- 총칙(제1조)
- 사업자등록과 말소, 부가가치세 신고업체, 신고서의 종류, 납세기한 및 방법(제2조~제11조)
- 조세의 확정과 부과(제12~제17C조)
- 조세의 징수(제18조~제24조)
- 의의신청과 조세심판(제25~제27A조)
- 회계장부와 감사(제28조~제31조)
- 특별규정(제32조~제37조)
- 형사규정(제38조~제43조)

113) UU KUP No.28/2007, No.16/2000, No.9/1994, No.6/1983

114) UU PPh No.17/2000, No.10/1994, No.7/1991, No.7/1983

115) UU PPN/PPnBM No.18/2000, No.11/1994, No.8/1983

116) UU PBB-Pajak Bumi & Bangunan No.12/1994, No.12/1985

117) UU BM-Bea Meterai No.13/1985

118) UU PP-Pengadilan Pajak No.14/2002, BPSB-Badan Penyelesaian Sengketa Pajak No. 17/1997

119) UU PPSP No.19/2000, No.19/1997

120) UU BPHTB No.21/2000, No.21/1997

121) 동 법은 1983년에 제정되어 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 특별조사(제44조~제44B조)
 - 경과규정(제45조~제47A조)
 - 부칙(제48조~제49조)
- **소득세법**
 - 총칙(제1조)
 - 납세자(납세 의무자)(제2조~제3조)
 - 과세대상(제4조~제15조)
 - 소득의 계산(제16조~제19조)
 - 과세기간(회계연도)의 세금납부(제20조~제27조)
 - 연말의 세금계산(제28조~제31조)
 - 기타규정(제31A조~제32A조)
 - 경과규정(제33조~제34조)
 - 부칙(제35조)
 -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 총칙(제1조~제2조)
 - 부가세 발생업체의 지정(제3조), 업종보고의무와 세금의 징수, 납부, 보고의무(3A조)
 - 과세대상(제4조~제6조)
 - 세율과 세금 계산방법(제7조~제10조)
 - 부가세 발생시점과 장소(제11조~제16조), 특별규정(제16A조~제16D조)
 - 기타규정(제17조)
 - 경과규정(제18조)
 - 부칙(제19조)

또한, 재산세법은 토지·건물의 정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세율, 과표계산방법, 과세기간 및 과세의무의 발생, 과세대상 토지·건물의 신고, 고지서의 발행, 납부, 이의신청, 상고, 세수의 배분,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율은 0.5%이고, 당해 토지·건물의 고지가격의 최저 20%에서 최고 100%가 과세대상 금액이다.¹²²⁾ 비과

122) 일반적으로 20%~40%이다.

세대상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최고 12,000,000 루피아(Rp.)이며, 자카르타는 10,000,000 루피아(Rp.)이다. 서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인지세법은 인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서류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인지의 종류, 사용방법,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지의 종류는 Rp. 3,000권과 Rp. 6,000권이 있고, Rp. 250,000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Rp. 250,000에서 Rp. 1,000,000까지는 Rp. 3,000권을, Rp. 1,000,000 이상에 대하여는 Rp. 6,000권을 사용한다. 어음과 수표는 Rp. 3,000권을 사용한다.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결정한 조세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도 세무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조세심판법으로서 1950년부터 1997년 5월까지 MPP(Majelis Pertimbangan Pajak; 조세검사위원회)로, 1997년 5월 23일부터 2002년 4월 11일까지 UU BPSP(Badan Penyelesaian Sengketa Pajak; 조세분쟁조정위원회)로 불리우다가 2002년 4월 12일부터 조세심판법이 시행되면서 현재의 PP(Peradilan Pajak)가 되었다. 강제징수법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으로서 동 법 제23조에 의하여 고지서 또는 추납결정서 등이 정한 결정세금의 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7일 후에는 납세독촉장을, 21일 후에는 강제집행장을 발행하게 되는데, 48시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압류명령장을 발행하고, 14일 후에는 경매(공매)공고를 하여 이후 경매의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부동산취득세법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전에 대한 정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정부고시가액, 판매가액, 비과세금액, 납세의무의 발생시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금액은 Rp. 60,000,000이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Rp. 300,000,000이다. 과세대상금액은 정부의 고시가액과 판매가액 중 큰 것으로 하며, 세율은 과세대상금액의 5%이다.

II. 조세총칙법

1. 납세자번호와 부가세 신고번호

기업(특히, 주식회사)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투자 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할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납세자번호(NPWP)와 부가세 신고번호(PKP)이다. 외국회사의 경우, BKPM의 승인, 설립정관, 회사소재증명서 등의 서류가 갖추진 이후 진행되는 서류로서 자칫 소홀히 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부가세신고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회사는 매입부가세를 매출부가세와 상계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초기에 사무실 임대, 공장임대, 기계류의 국내구입 등을 이유로 부가세를 납입하였지만, 부가세신고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매입부가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2000년부터는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방에서도 외국인 회사의 본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회사가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지사만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인세(PPH25)와 부가세(PPN), 결산(PPH BADAN)은 자카르타에, 지방세인 원천징수세(PPH 21 · 23 · 26), 토지 · 건물 임대세(PS 4(2)) 등은 지방에 납부해야 했던 과거의 번거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더구나, 2007년 개정법은 납세자번호와 부가세 신고번호를 받지 않았을 경우, 국제청장의 직권으로 최고 5년까지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신고서의 종류, 기한 및 방법

모든 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인도네시아어, 라틴문자, 아라비아 숫자 및 루피아 화폐 단위로 신고서를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장부의 작성 및 기타 부속명세도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의 승인¹²³⁾을 받은 외국인 회사 및 특정 회사는 US 달러 단위와 영문 재무제표의 사용이 가능하다.

(1) 신고서의 종류

세무신고서는 크게 수시신고서와 기간(월차)신고서 및 연말(결산)신고서로 나눌 수 있다.

- 수시신고서: 수입통관 시의 수입소득세(PPH 22)
- 기간(월차)신고서: 개인 갑근세(PPH 21 · 26), 법인 원천징수세(PPH 23 · 26), 토지 · 건물 임대세(PS 4(2)), 부가세(PPN), 법인세 중간예납(PPH 25) 등은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연말(결산)신고서: 여기에는 법인결산(SPT Thn Badan), 개인소득세 연말정산(SPT Thn PPH 21) 및 개인소득세 결산신고가 있는데, 이는 결산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법에는 수시신고서와 기간(월차)신고서는 변동이 없고, 개인 결산신고서는 익월 3월 말까지, 법인 결산신고서는 4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결산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서의 종류는 PPH 21 · 25, PPN이다. 납세자 등록번호와 부가세 신고업체 허가를 받았다면, 거래가 없더라도 익월 20일까지 “영(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지연신고에 대한 벌과금

현행법상 지연신고를 하게 되면, 지연신고 벌과금이 징수되는데, 기간(월차)신고서의 경우 Rp. 50,000, 연말(결산)신고서의 경우에는 Rp. 100,000이던 것을 개정법이 좀 더 세분화하고, 벌과금도 상당히 상향

123)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국세청장으로부터 신청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정하였다. 즉, 월 부가세신고서의 경우 Rp. 500,000, 기타 신고서는 Rp. 100,000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인결산서의 경우에는 Rp. 1,000,000를, 개인 결산신고서의 경우에는 Rp. 100,000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3) 신고서의 접수방법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 영수증상의 관련 세금의 종류, 납세기간, 접수 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장소는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우편접수가 있다.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 소인날짜를 신고일자로 간주한다.

(4) 세금의 납부기한

자재 및 기계류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인 PPH 22, PPN, BM은 수입할 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통관을 할 수 없으므로 거래 발생 시에 납부한다. 하지만, 개인·법인·해외 원천징수세금은 익월 1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과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쉬지만 공휴일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일이 토요일인 동시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인 12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평일인 토요일 이라면 금요일인 9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지연납부에 대한 벌과금 이자

상기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지연납부세금의 2%를 벌과금 이자로 추징한다. 이 때, 하루를 초과하여도 한 달로 계산하며, 이는 최고 2년, 48%까지 추징할 수 있다. 특히,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세무감사의 결정으로 확정된 세금의 미납에 대한 벌과금 이자는 실제로 납부가 있을 때까지 계산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조세총칙법 제19조).

(6) 세무신고의 수정신고

신고서상의 내용을 잘 못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세무감사를 받기 전 2년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며, 제8조 제4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감사 전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이 때 추가되는 세금에 대하여는 월 2%의 벌과금 이자가 징수된다.

3. 조세의 확정과 부과

(1) 자진신고제도

인도네시아의 납세의무는 법령 상 자진신고제도에 의해 이행된다. 즉, 모든 납세의무자는 납세결정서(STP)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세법의 의거 해당 세금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납세자가 신고한 세무신고서 상의 납세 총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그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계산되어지지 않았을 경우 정확한 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2) 과세과부족결정서

국세청장의 과세과부족결정서(STPKB) 고지 기한은 5년이며, 국세청장은 동 기간 내에 다음의 항목을 사유로 하여 과세 과부족 결정서를 고지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기타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 신고서 미접수(독촉장 발행 이후)
- 부가세에 대한 감사에 의하여 부가세의 잘못된 상계처리 및 적용
- 회계장부상 의무사항의 불충분기재로 인하여 과세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

5년 이내에 과세과부족결정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의 신고세액은 법령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조세범인 경우에는 5년을 경과했는지라도 과세과부족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행정과태료(이자)는 미지급 또는 과부족세액의 최고 48% 까지 추징할 수 있다.

(3) 납세징수서의 발행

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납세징수서(Surat Tagihan Pajak)를 발행할 수 있다.

- 회계연도 내에 소득세의 미납 또는 과부족 납부
- 세무신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오기 또는 계산의 오류로 인한 조세의 과부족 납부
- 납세의무자(또는 기업)에 대한 행정벌과금 또는 지연이자의 징수
- 과세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UU-PPN Thn 1984)과 그 개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세 신고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부가세 신고업체가 아닌데 부가세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등

(4) 추가과세과부족결정서

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추가과세과부족결정서(SKPKBT)를 발행할 수 있다.

- 회기 말 또는 회계연도 말에 새로운 자료나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미납세금이 발생된 경우 5년 이내에 SKPKBT를 발행할 수 있다.
- SKPKBT에는 과부족세금의 100%에 대하여 행정벌과금이 추가된다. 단, 국세청장의 세무감사 이전에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SKPKBT가 발행된 경우의 행정벌과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납세자가 조세범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추가과세과부족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SKPKBT에 추가로 행정벌과금 이자를 최고 48%까지 추징할 수 있다.

(5) 환급결정서와 “영(0)”세결정서

국세청장은 세무감사를 통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납부한 세액이 더 큰 경우 또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선납한 경우에 환급결정서를 발급하며, 납부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이 동일한 경우 및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영(0)”세결정서를 발급한다.

(6) 과세결정서

국세청장은 선 환급결정서의 사안을 제외하고는 환급신청서에 의해 조사를 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과세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2개월을 도과한 경우,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환급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2%의 이자를 계산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산은 환급결정서 발행일자로부터 계산한다.

(7) 선 환급결정서

국세청장은 특수한 상황일 경우, 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는 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선 환급결정서(SKPPKP)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의 과오납부에 대한 선 환급 이후, 국세청장은 조사를 할 수 있고, 과세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납세 과부족 납부금액이 발생할 경우 과부족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행정벌과금이 부과된다.

Ⅲ. 법인세

1. 납세의무자(과세대상자)

국내법인 납세의무자(거주자)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국내에 그 주소지가 있는 법인으로서 일부 예외의 법인을 제외한 모

든 법인을 포함한다. 법인의 설립 또는 주소지의 등록과 동시에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해산이나 인도네시아의 주소지에 더 이상 소재하지 않을 때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반면, 국외법인 납세의무자(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설립되지 않았거나 주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고정사업체 또는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고정사업체를 통한 사업이 시작될 때 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고정사업체를 통한 사업이 더 이상 없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더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2. 법인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인세의 과세대상에는 인도네시아 국내법인 소득과 국외법인 소득으로 나뉜다. 즉, 소득세법 제17/2000호 제4조에 의하여 국내법인 소득은 범 세계소득원칙에 의거하여 인도네시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수령하였거나 획득한 모든 소득을 말하며, 동 법 제5조에 따른 비거주 국외법인 고정사업체 법인소득은 다음과 같다.

- 고정사업체의 사업이나 활동 또는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고정사업체에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나 용역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발생한 소득
- 동 법 제17조 및 제26조가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6조는 배당금,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할증금, 수수료 및 할인을 포함한 이자소득, 로열티, 임대료 및 재산사용에 대한 기타 소득, 용역 및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수, 상금 및 포상금, 연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 등이 있다.

또한, 동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구호금 및 기부금 또는 의연금 수령단체나 국가에서 인가한 의연금모집연맹에서 모금한 의연금
- 인도네시아 내에서 설립되고, 그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자본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조합, 국영기업 또는 주정부 소유기업이 받거나 획득한 배당금이나 이익금의 일부
- 회사의 설립이나 사업허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회사가 첫 5년 동안 받았거나 획득한 채권의 이자 등

<법인세율>

과세표준금액(루피아 Rp.)	세율(%)
최초 금액 ~ 50,000,000	10
50,000,001 ~ 100,000,000	15
100,000,001 이상	30

3.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가능한 유형고정자산을 다음과 같다.

- 토지를 제외한 1년 이상의 과세대상소득을 획득·수령하고, 보전하기 위한 유형자산
- 소득을 획득·수령하고,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회사의 직원이 사용하면 서 집으로 가져가는 회사소유의 차량이나 회사의 역내에 위치하지 않은 직원용 주택 등
-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시장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며, 차손일 경우의 손실액은 손금불산입된다.

-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제로 소득의 획득·수령 및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달이나 또는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시작하여 감가상각을 실행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양도가격을 다음과 같다.

-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의 실제 인수가격. 만약,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한다.
-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인수가격으로 한다.
- 재무부장관령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회사의 청산·합병·해산이나 분할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 이전에 대한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 주식의 교환이나 자본의 출자에 대한 자산인수의 경우, 관련된 자산의 시장가격

4. PPH22(물품의 수입 및 특정 물품의 매매)

PPH 22는 수입자재의 사용이나 특정 물품의 사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을 전제로 국가에서 선 징수하는 선납 법인세의 일종으로 세부규정은 재무부장관 규정이 별도로 정하고 있다. 수입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2.5%, 없는 경우에는 7.5%가 부과되므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한 전산등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전자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PPH25(법인세 중간예납)

납세의무자는 자진하여 중간 예납금액을 계산하여 익월 15일까지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한 것을 신고로 간주한다. 중간예납금액의 계산은 전년도 결산시고 소득금액에서 영외 외 손익

및 특별손익사항을 가감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세율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여 전년도 제3자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선납 세금(PPH 21·22·23)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중간예납금액이 된다.

IV. 개인소득세

1. 근로소득세의 징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근로·용역 또는 여하한 이름이나 형태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세의 징수·납부 및 신고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
- 정부의 재무관
- 연금조합, 공무원 보험예금재단, 노동자 사회보장보험재단
- 전문기술자에게 사례금을 제공한 법인
- 기업, 법인 및 사업활동의 주체

2.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규칙적·정규적인 소득:
 - 월급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의 소득
 - 수당 및 보조금
 - 학자금보험
 - 선물 및 사례금

- 고용주가 지불한 산재사고보험, 사망보험 및 건강보험 등과 같은 복지보험을 포함한 보험수수료. 반면, 노후보장보험 등은 노년이 된 이후에 지급되어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기 이외의 여하한 이름이나 형태의 소득
- 일정치 않은 소득 및 임금: 생산용역, 하사금 등의 선물, 휴가수당, 명절 보너스 및 연차 상여금, 일용직·주급직 또는 도급직 임금, 기타 소득 등
- 퇴직배상금, 노후연금적금, 노년수당 및 전별금
- 사례금, 장학금, 선물, 수고비 및 커미션
- 전문직에 대한 보수: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사, 의사, 공증인, 감정사 및 각종 상담사
- 기타 각종 보수 및 사례금

3.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소득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건강보험, 사고보험, 생명보험, 이종목적보험 및 장학보험 등
- 고용주가 퇴직연금재단에 납부한 퇴직적금, 노후복지수당 또는 공무원 보험예금재단에 납부한 공무원보험예금, 사회보장복지보험재단에 납부한 보험금 등
- 고용주가 책임지는 세금과 같은 형태의 특전
- 정부에서 수여한 여하한 이름이나 형태의 현물 또는 특전
- 정부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된 자선기금 수령연맹으로부터 개인이 받은 기부금 등

4. 일반 개인거주자의 원천세율

<일반 개인거주자의 원천세율>

과세표준금액(루피아 Rp.)	세율(%)
최초 금액 ~ 25,000,000	5
25,000,001 ~ 50,000,000	10
50,000,001 ~ 100,000,000	15
100,000,001 ~ 200,000,000	25
200,000,001 이상	35

5. 최종 분리과세되는 근로소득세(PPH 21 Final)

공무원, 문관, 경찰 및 군인이 받는 보수나 사례금 등으로서 중앙정부의 재무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무부서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총 소득액의 15%가 부과되며, 해고금, 퇴직보상금, 노후보장수당 및 적금 등 일시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정부령 제149/200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된다.

금액(루피아 Rp.)	세율(%)
0 ~ 25,000,000	비과세
25,000,001 ~ 50,000,000	5
50,000,001 ~ 100,000,000	10
100,000,001 ~ 200,000,000	15
200,000,001 이상	25

V. 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은 모든 지급액으로부터 징수하는바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소득 신고시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한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거 국세청장령 KEP-170/PJ./2002(구법)가 정하고 있었으나, PER-70/PJ./2007(신법)이 이를 개정하여 2007년 4월 9일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래내용	No.170(구법)	No.70(신법)
육상운송에 대한 임대·임차료	3%	1.50%
기타 자산의 임대·임차료(육상운송 및 토지·건물의 임대·임차료 제외)	6%	4.50%
전문용역	7.50%	세분화
기술 및 관리 용역	6%	4.50%
컨설팅(건설컨설팅 제외)	7.50%	4.50%
건설설계 및 감독 용역	4%	4%
감정용역	7.50%	4.50%
손해보험감정사 용역	7.50%	4.50%
회계장부 용역	7.50%	4.50%
실내장식·디자인·광고·기계장비설치 용역	6%	4.50%
석유·가스 탐사 용역	6%	4.50%
석유·가스 채굴보조 용역	6%	4.50%
석유·가스 이외의 탐사보조 용역	6%	4.50%
항공업 관련 용역	6%	4.50%
산림벌채(정지작업 포함) 용역	6%	4.50%

제 4 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 및 정책 분석

거래내용	No.170(구법)	No.70(신법)
쓰레기수거·처리 용역	6%	4.50%
인력송출 용역	6%	4.50%
중개업	6%	4.50%
유가증권거래업	6%	4.50%
보관업	6%	4.50%
일반통신이 아닌 통신용역	6%	비과세
녹화	비과세	4.50%
녹음	6%	4.50%
기술정보 용역(인터넷 포함)	6%	비과세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 용역	6%	4.50%
설치용역, 기계·전기·수도·가스·AC/TV케이블, 기구장치의 설치(건설업허가를 가진 업자 제외)	6%	4.50%
건설업자가 행하는 상기의 용역	2%	2%
임가공 용역	6%	3%
조사와 경비 용역	·	3%
이벤트 용역	·	3%
임대업자	·	3%
대중매체에 장소와 시간의 제공(광고판)	·	1.50%
도시락·Catering 용역	1.50%	1.50%
방역·청소 용역	1.50%	1.50%

VI.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징수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물이나 용역이 이전되는 모든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매 납세기간(월별) 매입매출세액의 차액을 신고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관련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이월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재화 및 용역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매출자 및 제공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사업자가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고, 부가세 징구의무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자는 판매가격만 수령하게 된다.

-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재무국과 같은 재무 관련 사무소
- 국영 석유회사
- 중앙은행 및 지방개발은행을 포함한 중앙·지방투자기업
- 광물 및 석유탐사와 관련된 작업계약(Work of Contract) 및 생산물 공유계약(Product Sharing Contract)을 체결한 회사 등

2. 사업자/회사

일반적으로 사업자 또는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상회, 개인합자회사, 조합, 재단 등을 말한다.

- 개인 또는 법인 납세의무자
- 사업 활동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재화 또는 물품의 생산

- 재화 또는 물품의 수입 및 수출
- 판매 및 상업행위
- 국외에서 들여온 무체물 형태의 재화의 사용
- 용역의 제공이나 사용
- 국외에서 들여온 용역의 사용 등

3. 과세대상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누어지며,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건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고, 무체물은 동력, 열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상표권, 특허권, 사용권 등). 또한, 재화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용역의 제공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즉, 계약이나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물품, 시설 및 권리의 사용 또는 재료를 제공한 주문에 의한 물품의 생산 등을 포함한다(컨설팅, 임대업, 건설업, 중개업 및 외주생산업 등).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8/2000호 제4조는 ① 회사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생된 재화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③ 회사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 ④ 무체물인 재화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⑤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과세대상 용역 및 ⑥ 부가세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수출한 재화 등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6C조 및 제16D조는 ① 개인 및 법인 납세의무자로서 사업 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직접 완성한 건축물과 ②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매매가 아닌 목적으로 수입한 자산의 이전 등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4. 비과세대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에는 ① 원료로부터 직접 채취한 광물 및 석유생산물(중유, 천연가스, 모래, 자갈, 철광석, 주석 및 금광석 등), ②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쌀, 과일, 옥수수, 콩, 녹말, 소금 등), ③ 호텔·식당·음식백화점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및 ④ 금전, 금괴 및 금융가치가 있는 각종 증서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국민후생 용역: 동물병원을 포함한 각종 전문의, 침술사, 치아교정, 산부인과 및 산파, 물리치료사, 간호사, 실험실 및 영양원 등
- 사회복지 및 교육부문 용역: 유아원, 탁아소, 양로원, 소방서, 긴급구조대, 공동묘지 및 화장터, 학교·학원 등
- 우편송달 용역
- 은행·보험 및 자본임대차 용역
- 종교부문 용역
- 문화 관련 용역(특히, 관람세가 적용된 행사)
- 방송 용역(광고가 포함되지 않은 것)
- 육상·해상 대중교통 용역
- 노동력 관련 용역: 노동인력의 공급·교육·훈련 및 경영
- 호텔업 용역(지방세 적용)
- 정부가 주관하는 정부시책의 실행을 위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용역 등

제 4 절 검토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2012년 1분기 중 외국인투자 유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투자관심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다.¹²⁴⁾ 1967년 외국인 투자법과 1968년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 전반에 대한 골격을 재정비한 인도네시아의 新투자법은 투자의 범위 및 정의 확장을 기초로 하여 투자보호보증의 제공,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 과실송금 이전의 자유, 조세혜택, 재산권의 강화, 원스톱통합서비스의 제공, 투자분쟁의 국제중재 처리 규정 등 투자환경 개선 규정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의 환경 개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¹²⁵⁾ 등을 골자로 하여 단계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포함하는 新투자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공 처리되지 않은 원자재의 수출금지 및 금속 원광 수출세 부과, 광업 및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 등의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최근의 대외경제 불안정성의 확대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對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24) 김유미, “최근 대(對)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원인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5.8.), 3면.

125) 정유, 기계, 금속 등 인도네시아 주요산업에 1조 루피아(약 1억 1천만 달러) 이상 투자시, 5~10년 간 법인세 면제 등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법제상의 시사점

광물자원에 있어서 세계 최상위의 생산국이며, 광물 관련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09년 1월에 新광업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생산량 증대를 모색하고 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표 이후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新광업법이 외국기업의 광업권 보유 회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인도네시아 광업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광업투자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광산의 매장량 및 품질조사와 함께 광물이동을 위한 도로, 발전소 건설 등 기반시설 확대도 함께 고려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래 판매처까지도 사전에 확보한다면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진출하여 성공하기는 여의치 않은 점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 유명기업과의 합작 또는 기 생산 광구의 지분인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유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광구 탐사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부문의 사업기회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분야의 투자기회를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의 상류부문활동 뿐만 아니라 하류부문활동에도 참여하여 투자·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한다는 취지에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개발권을 둘러싼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석유·가스·석탄 등 국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내수 위주의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원분야의 투자환경은 다소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더불어 석유·가스를 제외한 각종 광물들의 개발관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면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상실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 등은 향후 투자에 있어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광물·석유·가스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법제도 및 현지 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의 장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67년 외국인 투자법과 1968년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 전반에 대한 골격을 재정비한 인도네시아의 新투자법은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정들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정부가 단계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포함하는 新투자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가공 처리되지 않은 원자재의 수출금지 및 금속 원광에 대한 20%의 수출세 부과, 광업 및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 등의 경제민족주의와 국내산업 보호주의에 기초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최근의 대외경제 불안정성의 확대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對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인도네시아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원자재 개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원칙에 기초한 협력모델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경제통상정책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정책, 현지 진출기업의 이해관계자 공생경영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¹²⁶⁾ 인도네시아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민관협력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등이 협력모델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¹²⁷⁾을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對인도네시아 투자 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중국에는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원 확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부는 자원외교, ODA, 정책금융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원개발기업은 글로벌 경쟁력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금력의 한계, 단기 전략 중심의 운영 등으로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원개발 사업

126) 인도네시아는 오랜 식민지배 기간부터 외국기업의 자원수탈과 환경파괴 등의 폐해를 경험하여 2007년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활동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들도 함께 불거져 왔다. 즉, 임금체불, 종업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업주의 야반도주, 환경오염 등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CSR 이행에 문제가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FTA를 통해 더욱 늘어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127) 脚註47 참조.

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자금조달 여부가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개발사업은 특성상 초기 투자비와 위험성이 높은 반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금융의 투자결정을 끌어내는데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민간의 거액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xxonMobile이나 Shell과 같은 메이저급에 견줄 만한 경쟁력 있는 대형 기업의 육성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대형화¹²⁸⁾와 함께 내부경영체질강화와 관련 인력 및 기술의 제고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국내기업 M&A를 통한 대형화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8) 정부의 공기업 대형화 육성정책에 힘입어 석유공사 등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메이저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생산규모나 기술력, 사업추진 경험 등에서 여전히 열세에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2010년을 기준으로 석유공사는 54개의 해외 생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생산량이 16.8만b/d를 기록한 바 있어 2003년의 3.3만 b/d와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Repsol(스페인), Statoil(노르웨이) 등 해외 중견기업 1개사의 생산규모가 100만b/d이고, ExxonMobile 등 메이저급 기업의 생산규모는 250만b/d로 석유공사 생산량 17만b/d와 큰 격차가 있다. 미국 석유산업 주간정보지 PIW(Petroleum Intelligence Wkely) 순위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순위는 95위권(2009년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해외 주요 메이저 기업들의 자원개발 탐사성공률이 20~30%에 달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의 성공률은 10%에 머무르고 있는 등 기술력 또한 선진국 대비 4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과거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부분 단순지분참여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업권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한 사업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 최근 M&A 등으로 급격하게 커진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환 · 백유진 · 강대창,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연구보고서 11-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12)
- 민혁기, “한 ·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 방안,” KIET 산업경제, 한국산업연구원 (2011.11)
- 배성중 · 박상우, “유가 변동요인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2012.7)
- 이진면 · 김바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KIET 산업경제, 한국산업연구원 (2011.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대(對)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원인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12.5)
- 삼성경제연구원(이종규), 2012년 신흥국 리스크 점검, CEO Information (2012.2)
- 수은해외경제(서은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증, 해외경제 · 투자정보 (2012.8)
- 지식경제부 · KOTRA, 2011 주요국가 해외투자 편람, KOTRA자료 10-093 (2011.1)
- 지식경제부 · KOTRA, 2011년도 주요 8개국 해외 투자 상담사례집(중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필리핀 · 인도 · 러시아 · 폴란드), KOTRA자료 11-067 (2011.12)

참고문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국별보고서 (2011.1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원가격 및 해외자원개발 동향 및 전망, 산업리스크 보고서 (2011.12)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인도네시아 경제교류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지역이슈분석 2011-14 (2011.11)
- 한국은행, ‘CIVETS(시베츠)’ 경제의 부상 배경과 리스크 요인, 국제경제정보 (2011.11)
- KOTRA, 2012 글로벌 마켓 동향 및 진출전략, KOTRA자료 12-003 (2012.1)
- KOTRA, 2012 세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인도-인도네시아 포럼, 설명회 자료 12-004 (2012.1)
- KOTRA 투자조사연구팀,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투자유치조직(IPA), 중점투자유치분야, 인센티브- (2010.6)
- KOTRA·한국산업연구원, 2010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Grand Survey-, KOTRA자료 10-095 (2010.12)
- LG경제연구원(홍석빈),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신흥국 영향력 커지고 있다, Weekly 포커스, LG Business Insight (2012.9)
- POSCO 경영연구소,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및 리스크 분석, POSRI 보고서 (2012.8)

외국문헌

- Asian Development Bank, Asia Economic Monitor (2011.12)
- Christian Teo & Associates, The January 2009 Indonesian Mining Law (2009.1)

- Deloitte, Asia Pacific Economic Outlook-Australia, China, India, Indonesia, Thailand (2012.3)
- Norton Rose, Indonesian Energy Report (2010.8)
- Oentoeng Suria & Partners · Blake Dawson, Indonesia's Oil and Gas Laws-A Legal Introduction (2011.8)
- Oentoeng Suria & Partners · Blake Dawson, Investing in Indonesia-An Introduction for Investors (2011.8)
- Price Waterhouse Coopers, Oil and Gas in Indonesai-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2010.8)
- Price Waterhouse Coopers, Mining in Indonesia-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2011.5)
- Robert E. Lipsey · Fredrik Sjöholm, “South-South FDI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Asian Development Review Vol. 28 No. 2, ADB (2011)
- World Bank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Doing Business 2012-Indonesia (2012)

인터넷 웹사이트

- 신흥개도국 지식정보 포털 www.emerics.org
-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포털사이트 www.indonesia.go.id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www.bkpm.go.id
- 인도네시아 산업부 www.kemenperin.go.id
- 인도네시아 보건자원부 www.depkes.go.id

참 고 문 헌

인도네시아 무역부 www.kemendag.go.id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www.bi.go.id

인도네시아 의회 www.mpr.go.id

인도네시아 수출촉진위원회 www.nafed.go.id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www.bps.go.id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www.kores.net>

해외자원개발협회 www.emrd.or.kr

해외자원개발 정보시스템 www.ikoredis.or.kr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http://www.ois.go.kr/portal>